

발 간 등 록 번 호
11-1610100-000007-13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 심의·의결례집

제5집

國家清廉委員會
審議·議決例集



국가청렴위원회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 심의·의결례집

제5집



국가청렴위원회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發 刊 辭 —



이번에 발간하는 국가청렴위원회
심의·의결례집 제5집은 2006년에
우리 위원회가 부패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의결한 전원회의
의결사항과 분과회의 의결사항,
그리고 보고사항을 수록한 자료집
입니다.

지난 해에는 통상적인 부패신고사건과 강화된 법에 따른 보호·
보상사건 이외에도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실시에 따른 새로운
의결사항이 있었으며, 예술행정분야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 등 몇가지 주목할만한 제도개선 노력도 꾸준히
추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는 연고주의·온정주의 등 부패
친화적 문화개선과 사회전반의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한 「클린
웨이브」운동이 시작되었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반부패국내규범

종합개선 대책도 추진되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반부패정책에 관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으로써 반부패정책성공국으로서의 위치를 국제적으로 평가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사항 중 중요내용은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수록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유관국가기관이나 연구단체, 시민
단체 등의 학술연구자료로 활용되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 까지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 자료집 발간을 위하여 적극적
으로 참여해 준 담당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1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 성진

일 려 두 기

- ① 『심의 · 의결례집』은 국가청렴위원회 업무처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과 전원회의에 보고된 보고 사항 및 그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 자료집입니다.
- ②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상정순서에 따라 수록하되, 신고사건, 제도 개선 권고안 등 분야별로 구분 하였습니다.
 - 의결사항은 의안개요, 의결이유 또는 심의내용, 의결결과, 감사원 · 대검찰청 등 조사기관의 처리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수록하였으며, 2003년 제2집, 2004년 제3집 및 2005년 제4집 발간시 처리중이었던 신고사건에 대한 결과도 정리하여 추록 하였습니다.
 - 보고사항은 목차만 수록하였습니다.
- ③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을 가급적 배제하고 심의 · 의결 및 보고 사항을 모두 수록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 ④ 이 자료집은 매년 국가청렴위원회 출범기념일(‘02. 1. 25.)에 맞추어 발간하고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第1章 議決事項

第1節 全員會議 議決事項

I. 申告事件

1.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재조사 요구 • 14

【追録】

- [2003~2005년도 전원회의 신고사건 추록] • 16

II. 申告者 保護

1. 「○○소방서 관계자의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재요구 • 37

2.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등」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구 • 38

3.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 • 39

4. 「공직자 주차장 이용대금 횡령」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 40

5. 「○○DB구축사업 예산낭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 41



6. 「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패」건 관련 신분조장조치요구	• 42
7. 「○○여자고등학교장의 횡령 등 부패행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 43
8. 「전 · 현직 공군장교 방수공사 관련 뇌물수수 등 의혹」건 관련 신변보호조치요구	• 44
9.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신고자 보호규정위반건 처리	• 45
10. 「학교법인○○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	• 46
11. 「군장병 인사청탁 등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 47
12.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 48
13.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 49
14. 「출장비 횡령 관련 비리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 50
15. 「출장비 횡령 관련 비리 신고」건 관련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	• 51
16. 「국책사업수행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 과태료 부과	• 52
17. 「군수의 건설입찰 및 승진인사 관련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 53
18.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	• 54



III. 申告者 補償

1. 「○○청 직원의 탈세신고 처리지연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56
2. 「경찰공무원의 국고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57
3. 「퇴작공무원에 대한 급여 부당지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 58
4. 「공립 보육시설 원장의 정부보조금 횡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 59
5. 「직위를 이용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60
6. 「○○신경외과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등 부정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61
7. 「○○의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등 부정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62
8. 「관급공사 레미콘납품 관련 예산낭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 • 63
9. 「도로구조 개선공사 관련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 64
1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Ⅰ)」건
관련 보상금 지급 • 65
11.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지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 66
12. 「상수도사업소 검침용역원 비리 및 국고금 손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 67
13. 「무기도입 절충교역 계약 불이행 관련 국고손실」건
관련 보상금 지급 • 68



14. 「직위를 이용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건	
관련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69
15.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 70
16. 「국립병원 납품 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71
17.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 72
18. 「방위산업체의 납품원가 조작 국고손실」건 관련 보상금 지급	• 73
19. 「군부대 입찰 및 납품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	• 74
20. 「초등학교의 보수공사 예산낭비 의혹 등」건 관련 포상금 지급	• 75
21.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76
22. 「과적차량 단속 공무원의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 77
23.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지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 78
24.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 79
25. 「생활폐기물 대행업 수의계약 관련 금품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 80
26. 「신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 재산손실」건 관련 포상금 지급	• 81

IV. 制度改善 · 腐敗影響評價

1.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83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관련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89
3. 계약·납품 관련 부파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97



4.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개선 권고안	• 100
5. 초 · 중등 교원 인사분야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105
6.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112
7. 게임물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개선 권고안	• 119
8. 각종 심의 · 의결위원회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127
9. 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130
10.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령개선 권고안	• 135
11. 사회복지시설 · 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141
12. 주택 재개발 · 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149
13. 도로점용 · 연결허가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 권고안	• 153

V. 法令 · 例規, 其他

1.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장 임명에 관한 건	• 162
2.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중 개정안	• 163
3.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중 개정안	• 165
4. 신고사무 처리지침 중 개정안	• 167
5. 상근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 169
6.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등 일부 개정예규(안)	• 170

7. 국가청렴위원회 법령업무 처리 규정 등 일부 개정훈령(안)	• 171
8.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 등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종 개정(안)	• 172
9.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안)	• 173
10.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안)	• 175
11.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 · 개정 지침(안)	• 176
12. 상근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 178
13.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 179
14. 분과위원장 임면과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건	• 180
15. 행동강령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안	• 181
16. 분과위원회 위원 임면에 관한 건	• 182
17.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안)	• 183
18. 2007년도 국가청렴위원회 세출예산요구(안)	• 184
19. 보상심의위원회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에 관한 건	• 185
20.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안)	• 186
21.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 188
22.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 제정(안)	• 189
23.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건	• 192
24. 제3기 부패방지 정책자문단 위원 선정	• 193
25.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 194
26.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	• 195
27.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임	• 196
28.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전부 개정(안)	• 197
29. 상근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 199



第2節 分科委員會 議決事項

I . 申告事件

1. 검찰공무원 금품수수 비리 등
 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202
2.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 • 203
3. 공직유관단체 간부의 금품수수 • 204
4. 구청 보상금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 의혹 건의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205
5. 국립대학교 교수의 비리 의혹 • 206
6. 국립병원 납품 관련 비리 의혹 • 207
7. 국가위탁사업 관련 국고손실 의혹 등 • 208
8. 보건소장의 금품수수 의혹 • 209
9. 공동주택용지 공급계약 체결 부당 • 210
10. 주민등록등본 허위발급 등 비리 • 211
11. 체육단체 공금횡령 의혹 • 212
12. 산업재해장해보상연금 등
 부당수령 의혹 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213
13. 지방의료원 출장비 과다청구로 국고손실 • 214
14.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의혹 • 215
15. 정부투자기관 납품 관련 비리 의혹 • 216
16.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 • 217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 비리 의혹 • 218
18.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횡령 • 219

19. 지방산업단지 공사관련 비리	• 220
20. 배수펌프장 밸브설치 예산낭비 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221
21. 구립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의혹	• 222
22. 지방 소방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	• 223
23. 前 행정대학원장의 공금횡령 의혹	• 224
24. 방송사 영화수입 관련 예산낭비 및 금품수수 의혹	• 225
25. 지방자치단체 용역사업관련 국고손실 의혹	• 226
26. 도서관 관리과장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취득	• 227
27. 문화예술진흥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 228
28.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 229
29.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	• 230
30. 기초자치단체장 등 행동강령 위반 신고	• 231
31. ○○시장 행동강령 위반 신고	• 232
32. 복지시설 위탁운영자 선정비리 의혹	• 233
33. 군청 공무원 등의 온천업체 비호 의혹	• 234
34. 국가기술자격검정 관련 감독비용 부당청구 등	• 235
35. 청소년 수련단체의 보조금 등 횡령	• 236
36. 시장 내 도로 불법 점용허가 등 관련 비리	• 237
37. 부적격 혈액유통과 관련된 부조리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238
38. 인·허가 관련 향응 등 접대 의혹	• 239
39. 시 소속 태권도부 코치의 공금횡령 의혹	• 240
40. 복지시설 위탁운영자선정 비리의혹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241
41. 보조금 부당 집행	• 242
42. 국·공유지 관리 소홀	• 243
43.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의혹	• 244
44.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의혹	• 245



45. ○○공사 탑승교 및 승강설비공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	• 246
50.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금 횡령 의혹	• 247
51. ○○소방본부장의 인사 및 예산 관련 부조리	• 248
52. 경찰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및 직권남용 행위	• 249

【追 錄】

[2005년도 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추록]	• 251
------------------------	-------

II. 申告者 保護

1. 「지방공기업 직원의 주차장 이용대금 횡령」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 278
2. 「○○여자고등학교장의 횡령 등 부패 행위」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 279
3. 「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패」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 280
4. 「○○여자고등학교장의 횡령 등 부패행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 281
5.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	• 282
6. 「○○시 사회복지과 관련자의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 283
7.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 284

8.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 285
9. 「철도고압선 주변 전화잡음방지 대책비 과다청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 286
10. 「군장병 인사청탁 등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 287
11. 「철도고압선 주변 전화잡음방지 대책비 과다청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 288

第 2 章 報 告 事 項

報告目錄	• 291
------	-------

【附 錄】

1. 부패방지법	• 300
2. 부패방지법 시행령	• 319
3. 공무원행동강령	• 350
4. 전원회의 ·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363
5.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명단	• 365
6.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366



第1章

議決事項

第1節 全員會議 議決事項

- I . 申告事件
- II . 申告者 保護
- III . 申告者 捧償
- IV . 制度改善 · 腐敗影響評價
- V . 法令 · 例規, 其他

第2節 分科委員會 議決事項

- I . 申告事件
- II . 申告者 保護

第1節

全員會議 議決事項

I. 申告事件

II. 申告者 保護

III. 申告者 補償

IV. 制度改善・腐敗影響評價

V. 法令・例規, 其他

I. 申告事件

제93차 전원회의(2006. 3. 6.)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대검찰청으로부터 분과2005-92호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과통보된 건에 대하여 조사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조사 요구
 - ※ 신고사건 개요
 - 2004년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등을 지급치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부패행위를 한 것임
 - ※ 조사결과 및 재조사이유
 - 조사결과 : 피신고자는 일부 연구원의 형사사건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고, 또한 인건비를 초기 연구비용에 우선 충당하기로 사전에 협약 등을 받았고 이후 인건비를 정산해 주었다고 변명하고 관련 진술 등도 이에 부합한다고 하여 혐의없음
 - 재조사이유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청렴위원회에서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로부터 듣고 연구과제 사업이 완료된 후 1년이 지난 2005년에 갑자기 연구원들의 계좌에 미지급한 인건비를 송금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인건비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고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를 요구함이 상당함

2 의결이유

- 조사결과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되므로 조사기관의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에 재조사 요구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변경할 혐의사실 발견되지 않음)

※ 통보일자 : 2006. 7. 18.

위원회 검토의견 – 재조사결과 수용

5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5-92호(2005. 11. 21.)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2003~2005年度

全員會議 申告事件 追錄

2003~2005년도 전원회의 심의·의결례집 처리결과 추록 일람표

순번	의안번호	의 안 명	추록내용	4집 면수
1	제2003-153호	군사법원 재판 관련 향응수수 비리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72
2	제2005- 9호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관련 비리 의혹	”	20
3	제2005- 10호	방위산업체 납품원가 조작 국고 손실	”	21
4	제2005- 31호	재활용업체 선정 관련 비리	”	27
5	제2005- 54호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관련 비리	”	37
6	제2005- 84호	공공재단 연구장려금 부당 지급	”	47
7	제2005- 90호	학군단 일직비 부당 지급	”	48
8	제2005-103호	군 장성의 부패행위	”	50

순번	의안번호	의 안 명	추록내용	4집 면수
9	제2005-104호	국립대학교 교수의 향응수수 비리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51
10	제2005-106호	의료급여 비용 부당 청구 비리 등	"	53
11	제2005-108호	산업재해 장해보상연금 등 부당 수령 의혹	"	55
12	제2005-112호	공기업의 검침용역 관련 비리 의혹	"	57
13	제2005-113호	상수도사업소 검침용역원 비리 및 국고금 손실 등	"	58
14	제2005-121호	군부대 입찰 및 납품 비리	"	59
15	제2005-123호	분뇨처리장 약품대금 부당 지급	"	61
16	제2005-124호	주차장 대부료 부당징수	"	62
17	제2005-125호	국립대학교 교수임용 등 비리	"	63
18	제2005-135호	방위산업체의 국고손실 의혹	"	64



제2003-153호 군사법원 재판 관련 향응수수 비리

제43차 전원회의(2003. 11. 1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사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 2002. 12. 경부터 2003. 2. 경까지 사이에 심리중인 사건의 변호사들 4명으로부터 선처 청탁과 함께 수회에 걸쳐 룸싸롱 향응 등 시가 합계금 수천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동종 언론 보도 기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수사절차가 국방부 검찰단에 계류중인 점을 고려하여 병합수사가 가능하도록 이첩함

3 의결결과

- 국방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 통보일자 : 2006. 8.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69차 전원회의(2005. 2. 15.)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공유재산관리담당 공무원들인 바,
 - 2003. 4. 경 관내 토지 약 600평을 가압류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국유재산법상 취득이 금지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공용청사 부지로 취득하였고, 또한 위 토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10억 45백만 원 상당의 예산이 손실될 우려가 있는 등 부패행위를 한 것임.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신고대상 토지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취득토지의 경매사건 검색표 등의 기재사실 등을 종합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피신고자 1명은 징역 10월(뇌물수수 혐의 인정), 집행유예2년, 추징금 386만 원
 – 다른 피신고자 1명은 기소(횡령 혐의 인정)
 ※ 통보일자 : 2006. 2.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10호 방위산업체 납품원가 조작 국고 손실

제69차 전원회의(2005. 2. 1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사장비 부품을 납품하는 방산업체인 바,
 - 2002. 경 국방부에 납품한 장비에 대해 원가정산을 함에 있어, 하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단가가 부풀려진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국방부에 제출하여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을 부당 청구하여 수령하는 수법으로 국가예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부폐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구체적인 진술, 해당 행정기관의 원가정산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의 국가예산 부당 수령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당지급액과 가산금 1,000,614,856원 환수 결정(국방부 조달본부에 원가자료 재검토 결과 500,307,428원 부당 지급 사실 확인)

※ 통보일자 : 2006. 1. 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31호 재활용업체 선정 관련 비리

제72차 전원회의(2005. 3. 21.)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재활용품 계약 담당공무원인 바
- 2003. 12. 29. 경 특정 재활용품 수거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활용품 선별·판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업체는 2003. 11. 13.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여 계약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약 상대방인 '을' 명의자인 '동업체 대표자'란에 동 업체 대표자의 형인 A의 인장을 찍어 계약함으로써 동 업체의 A에게 연간 약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주었으며,
- 또한 재활용품 선별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사실은 계량 양의 1%미만인데도 계약상 20%까지 인정하여 준 점을 이용하여 불법 산업폐기물을 마치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당해 기초자치단체에 인계함으로써 위 자치단체에서 2004. 경 선별 과정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억 3천여만 원을 추가로 낭비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한 것임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재활용품 선별 판매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부패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증거자료 부족 등)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54호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관련 비리

제75차 전원회의(2005. 5. 9.)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인 ○○구 공무원들인 바,
 - 2004. 경 ○○구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함에도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사업을 예산으로 추진하면서, 동 사업부지의 주택이 철거될 경우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아파트특별공급 및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지급되는 것을 기화로 세대수를 늘려 건축허가(용도변경, 지분나누기)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허가제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아파트 입주권이 과다 지급되어 약 30여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법령 등을 위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특혜제공, 예산낭비 및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5명 기소의견으로 송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인정)

※ 통보일자 : 2006. 5.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84호 공공재단 연구장려금 부당 지급

제78차 전원회의(2005. 7. 4.)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재단으로부터 연구장려금을 지급받은 인사들인 바,
 - ○○재단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연구장려금이 적법하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 피신고자들은 동 사업의 연구장려금을 지급받던 중 연구장려금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약 1억 3천여 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상근직 정기보수자에게 지원된 연구장려금 회수

-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요령(재단내부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토록 하고 전문경력인사가 특정기관에서 상근직으로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통보
- ※ 통보일자 : 2006. 3.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90호 학군단 일직비 부당 지급

제79차 전원회의(2005. 7. 25.)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학군단의 현역 장교들인 바,
 - 학군단에서 일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직근무 수당이 지급 될 수 없음에도 전국 ○○개 대학의 학군단간부들이 대학으로부터 일직수당 조로 합계 약 14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국방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각 대학교에서 학군단후보생들의 복지차원에서 3억 5천만원이 지원된 사실 확인, 교육사령부에 제도개선 권고하도록 통보

※ 통보일자 : 2006. 1.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103호 군 장성의 부패행위

제81차 전원회의(2005. 8. 22.)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령부에 근무하는 군 장성인 바,
 - ○○부대장으로 재직시 시행한 초소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로부터 약 3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여군장교 장기복무 알선 및 병사 보직 변경 대가로 향응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국방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불구속입건, 기소유예처분(뇌물수수 등 혐의 인정)

※ 통보일자 : 2006. 2.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104호 국립대학교 교수의 향응수수 비리

제81차 전원회의(2005. 8. 2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대학원의 교수들인 바,
 -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대학원생들에게 학점관리 등 편의제공의 대가로 자신들의 룸싸롱 술값 등 백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주관조사기관) 및 교육인적자원부(해당기관)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 혐의없음(대가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교육인적자원부 : 경고처분(품위유지 의무위반 및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 통보일자 : 경찰청 2005. 11. 17., 교육인적자원부 2006. 1. 11.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106호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비리 등

제81차 전원회의(2005. 8. 2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바,
 - 2004. 1. 경부터 2005. 5. 경까지 1일 투여용량을 고시용량보다 적게 투여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실사용량을 부풀려 의료급여비용 약 5백여만 원을 부당청구하고, 약침술 관련 시술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약 4백여만 원을 부당 청구하였으며, 수진자가 일부 날짜에는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받은 것으로 진료일수를 늘려 진찰료, 투약료, 시술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 약 12백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공공 기관에 동액 상당의 예산상 손실을 가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요양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무정지 40일 행정처분 결과통보(8,761,420원 진료비 혀위청구 및 의약품 중량청구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부당이득금 8,761,420원 환수 및 행정처분 통보 조치

※ 통보일자 : 2006. 1. 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81차 전원회의(2005. 8. 2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에 거주하는 장해보상연금 수령자인 바,
 - 1986. 경 건설 사업장에서 상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척추마비를 이유로 1급 장해판정을 받아 월 4백여만 원을 수령하여 지금까지 총 5억여 원의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으나,
 - 1992. 경 부터 당초의 1급 장해판정(거동불능)의 내용과 달리 투망 등 낚시행위를 하는 등 정상인과 같은 활동능력을 보이고 있어 장해보상연금 지급이 중단되어야 함에도 계속 수령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노동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2005. 11월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제1급에서 제7급으로 변경하여 지금(2005. 11.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장해상태가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 통보일자 : 2006. 1.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이유없음으로 기각처리

5 비 고

관련의안 – 분과 2006-24호(2006. 2. 20.) 「산업재해 장해보상연금 등 부당 수령 의혹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005-112호 공기업의 검침용역 관련 비리 의혹

제82차 전원회의(2005. 9. 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기업의 검침용역 담당자 및 ○○회 검침사업 본부 관계자들인 바,
- ○○공기업 검침용역 담당자는 전체 검침용역의 30% 가량을 위 검침사업본부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리베이트조로 약 3억 원 상당을 수수하고,
- 전체 검침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통상의 수의계약 평균 낙찰가인 93%보다 6% 높게 99%로 낙찰함으로써 약 580억 원 상당의 용역비를 낭비하고,
- ○○회 검침사업본부 관계자들은 친인척을 연구위원 등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공기업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증거부족 등)

※ 통보일자 : 2006. 7.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113호 상수도사업소 검침용역원 비리 및 국고금 손실 등

제82차 전원회의(2005. 9. 5.)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사업소의 요금검침 대행관리소의 수도검침 용역원인 바,
 - 지역내 수도검침 및 고지서 전달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할 구역내 업체 관계자로부터 2005. 1.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수도요금 6백만 원을 20만 원으로 낮게 부과하여 그 차액 상당의 예산 손실을 유발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 및 감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주관기관) 및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명 구속(배임수재 혐의), 5명 불구속 기소(배임 증재 혐의), 업체당 매월 30~50만 원 씩 총 1,830만 원의 금품 수수 혐의 인정

※ 통보일자 : 2006. 2.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121호 군부대 입찰 및 납품 비리

제83차 전원회의(2005. 9. 2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부대 군인과 군무원 및 동 부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등을 납품한 업체의 대표 등인 바,
- 업체의 대표는 수의계약체결 등 특혜를 받기 위해 현역 군인 등에게 약 6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납품가격을 부풀려 약 1억여 원의 국고를 편취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하였고,
- 군인과 군무원 ○○명은 납품과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거나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물품 및 금품 향응 등 약 6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입찰정보 유출 등 약 1억여 원의 국고를 낭비하였으며, 부대물품을 반출하여 약 1억여 원을 횡령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 및 감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국방부, 대검찰청(주관기관) 및 국세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국세청 : 피신고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5,935,000원 추징

국방부합동조사단 : 피신고자 공군 중령등 2명 구속기소 의견 송치, 대령 등 12명 뇌물수수·업무상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중령 등 6명 공군본부 사실통보

해당 지방검찰청 : 피신고자를 사기, 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

※ 통보일자 : 2005. 12. 15.(국세청), 2006. 1. 6.(국방부 합동조사단), 2006. 9. 5.(대검찰청)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123호 분뇨처리장 약품대금 부당 지급

제83차 전원회의(2005. 9. 2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사업소에서 약품구매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동 약품을 납품한 업체의 실제 대표자인 바,
 - 동 사업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매하면서 납품을 하지 않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것을 정상적으로 전량 납품한 것으로 하여 약 6백여 만 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전라남도(감독기관)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증거자료 부족 등)

※ 통보일자 : 2006. 1.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124호 주차장 대부료 부당 징수

제83차 전원회의(2005. 9. 2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구인바,
 - 관내 소재 하상 주차장을 대부하면서 인근 주차장 통상임대료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천 점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약 3억여 원의 특혜를 주고 공공기관에는 그에 상당하는 세수 부족을 야기하는 등의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감사 기관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위법, 부당성 없음)

※ 통보일자 : 2005. 12.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125호 국립대학교 교수임용 등 비리

제83차 전원회의(2005. 9. 2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의 학과장 및 채용된 교수인 바,
 - 위 학과장은 교원공채와 관련하여 동 대학교 규정상 심사위원은 관련 모집대상 학과를 전공한 자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과의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고, 모집공고와 달리 연구 경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였으며,
 - 위 채용된 교수는 자기표절 논문을 신규논문으로 제출하거나 기재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의 부폐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감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의 임용취소 방안 및 징계처분 지시(위법행위 확인)

- 관련자 주의처분

※ 통보일자 : 2006. 7.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135호 방위산업체의 국고 손실 의혹

제85차 전원회의(2005. 10. 17.)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방위산업체의 대표 및 국방조달업무 담당 공무원 들인 바,
 - 위업체대표는 군수물자 조달과 관련하여 조달업무 담당부서와 군수물자 부품 교체계약을 하면서 노무량을 실제보다 수배이상을 부풀려 계약하거나 감가상각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약 2백여 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 위 조달업무 담당자들은 원가계산서, 노무량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직무를 유기하여 위업체에 약 2백여 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감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들 및 방위산업체에 대한 공소제기(방위사업법 위반, 사기, 횡령 혐의)

※ 통보일자 : 2006. 11.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II. 申告者 保護

제2005-164호

『○○ 소방서 관계자의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재요구(2005-12)

제92차 전원회의(2006. 2. 2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소방서 관계자의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위원회의 신분 보장조치 요구에 대해 ○○도지사가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신분 보장조치 재요구에 대한 인용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해임”에서 “정직 3월”로 변경함에 따라 요구자의 공무원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점, 조직 기강문란 · 금품수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요구자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건의 심의를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건에 대해 심의 · 종결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139호('05. 10. 17.) 「○○소방서 관계자의 부패 행위 신고 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제2006-20호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등』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구(2005-20)

제92차 전원회의(2006. 2. 2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5-26호「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등」건 관련
요구자가 채용계약이 해지된 이후 이는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직조치 등의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요구자는 위원회·청와대·감사원에 신고 또는 진정 등을 하였
으나, 이는 채용계약해지를 당한 이후이며, 요구자가 ○○청의
인사비리를 인지한 후 ○○시 감사관실 직원에게 인사관련 비리
내용을 제보하였다고는 하나, 신고한 사실과 ○○시장으로부터
채용계약 해지를 당한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요구자에 대한 채용계약의 해지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부패방지법
제32조 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기각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26호('05. 3. 7.)「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등」



제2006-32호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9,10,11)

제93차 전원회의(2006. 3.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감독기관에 접수된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 건에 관련된 요구자들이 ○○학원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것이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요구 취소 등의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요구자들이 ○○시 교육청에서 지원한 급식비를 ○○학원이 부당하게 적립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동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동 교육청이 이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을 환수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할지 여부와 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 관련 의안 – 분과2005-69호('05. 10. 17.)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신고 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 분과2005-96호('05. 12. 19.)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신고 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제2006-34호

『공직자 주차장 이용대금 횡령』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16)

제94차 전원회의(2006. 3. 2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공직자 주차장 이용대금 횡령」건 관련 요구자가 정년퇴직 당시 자신을 ○○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촉탁근무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촉탁근무자로 채용 등의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요구자가 촉탁근무를 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 후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시 시설관리공단이나 노동조합 등에 이의제기 한 사실이 없고,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시점까지 요구자에게 “촉탁근무 희망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또한, 정년퇴직하는 주차관리원이 촉탁근무 의사를 밝히면 예외 없이 촉탁직으로 임용했다는 공단소속 관련자들의 진술과 공단 측이 요구자가 퇴직할 즈음 24시간 근무부서로 이동시켜 임금과 퇴직금의 상향조정을 꾀하는 등의 배려를 해 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요구자의 촉탁근무 희망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이 촉탁근무를 배제하려한 정황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요구자의 신분보장조치요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기각

4 비 고



제2006-44호

『○○DB구축사업 예산낭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1)

제95차 전원회의(2006. 4. 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DB구축사업 예산낭비」건 관련 요구자가 ○○연구원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조치를 받은 이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취소 등의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요구자는 위원회에 신고한 이후로 ○○연구원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원회 조사결과 신고 이전에 이미 요구자 외 다른 연구원들은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요구자만이 탈락하였음
- 2005. 10. 경 ○○연구원 인사위원회에서 1년간 재임용 후 교육 훈련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하였고, 2005. 11. 경 동 내용을 요구자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재임용 후 6개월간 교육을 수료토록 한 ○○연구원 인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은 것이므로 요구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부패방지법 제32조 규정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기각

4 비 고

제2006-66호

『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패』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5-19)

제97차 전원회의(2006. 5. 1.)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분과2005-88호 「부적격 혈액 유통과 관련된 부조리」건 관련 요구자가 혈액원장으로부터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이의신청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서 '감봉 6월'로 감경되었으나, 이는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며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2004년부터 혈액검사 오류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는 점, 2004년 이후 같은 혈액원에서 유사한 검사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요구자가 오류를 발견하고 즉각 후속조치를 취하고, 반성하는 사실 등을 인정하여 감봉 6월의 징계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요구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부패방지법 제32조 규정의 위반)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기각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5-88호 ('05. 11. 18.)「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패」



제2006-106호

『○○여자고등학교장의 횡령 등 부패행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5-18)

제101차 전원회의(2006. 7. 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여자고등학교장의 횡령 등 부패행위」건에 관련된 요구자가 ○○학원 측으로부터 해임 당한 이후 이는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며 해임처분의 취소 등의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요구자가 피신고인의 비리행위를 외부기관에 제보하고, 이와 관련한 감사 및 수사에도 적극 조력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된 국가예산의 환수, 비위 관련자의 구속 등 사학재단의 부패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사실 등을 인정되나, 학교법인 ○○학원 측의 요구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패방지법상 보호규정위반에 해당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기각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6-40호('06. 4. 17.)「○○여자고등학교장의 횡령 등 부패행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제2006-107호

『전·현직 공군장교 방수공사 관련 뇌물수수 등 의혹』건
관련 신변보호조치요구(2006-1)

제101차 전원회의(2006. 7. 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분과2006-60호「전·현직 공군장교 방수공사관련 뇌물수수 등 의혹」건 관련 조사에 조력한 협조자가 피신고자에게 신분이 알려져 자신과 자신의 딸을 신체적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요구자는 신고와 관련된 위원회의 조사확인과정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였으며, 피신고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당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당사자간 고소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신고자에 의한 협박 등으로 인해 정기적인 진료 및 의사 상담이 요구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패방지법 제33조(신변보호 등), 같은 법 제34조(협조자 보호) 등의 규정에 따라 신변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변보호조치요구 인용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6-60호('06. 6. 5.)「전·현직 공군장교 방수공사 관련 뇌물수수 등 의혹」



제2006-112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건 처리(2005-12)

제102차 전원회의(2006. 7. 24.)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소방서 관계자의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를 신고한 소속 직원에게 신고를 이유로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 지와 부패방지법 제32조 제10항,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위원회에서 신분보장조치 요구 후 ○○도지사가 신고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직3월로 감경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점, 신고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등 신고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신고자가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징계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를 한 이유로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가하거나 징계관련 조사 및 해임처분 과정에서 신고자보호규정위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본 건을 심의 · 종결함

3 의결결과

- 심의 · 종결

4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5-164호('06. 2. 20.)「○○소방서 관계자의 부패행위 신고 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쟁요구」
– 제2005-139호('05. 10. 17.)「○○소방서 관계자의 부패행위 신고 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제2006-141호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9,10,11)

제106차 전원회의(2006. 10.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감독기관에 접수된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 건에 관련된 요구자들이 ○○학원측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 파면처분을 받은 것이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파면처분 취소 등의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요구자들이 사학재단의 비리를 감독하는 관할 교육청에 진정한 것은 법 제25조에 규정한 ‘이 법에 의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제34조(협조자 보호)에 의한 법 제32조 등의 보호규정 준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법 제35조의2(소속기관 등에 대한 신고자의 보호) 규정의 준용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비공직자의 경우에도 동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학원 측의 요구자들에 대한 파면처분 이후 2006. 7. 14. 요구자들의 신분보장조치 변경요구가 있어 파면처분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협조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6-77호(‘06. 7. 24.)「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신고 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제2006-142호

『군장병 인사청탁 등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7)

제106차 전원회의(2006. 10.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군장병 인사청탁 등 신고」건 관련 요구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이는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그 인용 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요구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소속부대에 대한 감찰조사 및 특별 감찰을 받은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것이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측 관련자의 주장과 위원회가 조사한 사항 등을 종합할 때, 소속기관의 징계처분은 요구자에 대한 민원 사항의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신고로 인한 불이익(부패 방지법 제32조 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기각

4 비 고

제2006-154호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5)

제107차 전원회의(2006. 11.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분과2006-57호「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요구자(신고협조자)가 회사로부터 해고예고 및 징계의결요구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자 이는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그 인용 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요구자가 회사로부터 처음 해고예고 및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력서 미제출, 근무태도 등의 사유로 신고 이전부터 수차례 사직을 권고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고나 징계 처분이 실제 이루어진 바가 없어 부패방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신분상 불이익으로 볼 정황이 충분치 않음
- 이후 요구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시 총회의 해산결정에 따른 조치로써 요구자뿐 아니라 전 직원에게 해고통보서가 함께 발송되었으며, 소속 회사의 해산결정으로 인해 요구자의 신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분보장조치요구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건은 심의 · 종결하고, 요구자의 재취업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6-57호('06. 5. 18.) 「국책사업수행연구소의 예산
낭비」



제2006-155호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10)

제107차 전원회의(2006. 11.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분과2006-57호「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요구자(신고자)가 소속 회사로부터 임금의 차별지급 등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은 이후 이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그 인용 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요구자는 소속회사 노조지부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임금의 지급은 노조와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요구자가 주장하는 임금차별 지급은 신고자뿐만 아니라 소속회사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에 해당된 사항임
- 2006. 9월 경 노사간 임금인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요구자를 포함한 노조원 전원에게 10% 인상된 임금이 소급하여 지급되었음
-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속회사에서 요구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등 근무조건상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신분보장조치 요구 건에 대해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기각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6-86호(‘06. 8. 21.)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제2006-156호

『출장비 횡령관련 비리 신고』 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9)

제107차 전원회의(2006. 11.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소속 기관에 「출장비 횡령관련 비리 신고」건과 관련 요구자가 신고 이후 근무부서 변경조치, 집단따돌림 등의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그 인용 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요구자에 대한 근무부서 변경조치는 요구자 자신의 고충상담으로 인해 소속 부서에 대한 특별감사 등의 후속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득이한 조치였고,
- 요구자에 대한 집단따돌림은 요구자가 신고 이후의 심리적 요인으로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다고는 하나, 신고 이전부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사항으로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발생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확보 등이 곤란함
- 또한, 요구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소속기관에서 퇴사하여 원상회복, 시정 등의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분보장조치 요구 건은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기각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6-128호('06. 11. 7.)「출장비 횡령 관련 비리 의혹」



제2006-157호

『출장비 횡령관련 비리 신고』 건 관련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2006-1)

제107차 전원회의(2006. 11.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소속 기관에 「출장비 횡령관련 비리 신고」건과 관련 요구자가 소속 기관의 자체 감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었다고 주장하며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를 함에 따라 그 인용 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소속기관 검사역이 시행한 문서에서 요구자의 고충처리를 위해 고충인의 성명, 감사이유 및 내용 등을 언급한 것은 신고자 비밀 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임
- 다만, 검사역의 문서시행 이전부터 요구자의 고충상담 및 처리 과정에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알려질 수밖에 없었고, 요구자의 고충상담에 따른 후속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부패 행위 신고사항으로 보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춰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됨
- 소속 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신분비밀보장의 보호조치가 요구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은 검사역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소속기관의 책임이 보다 크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소속 기관에 “주의 촉구” 통보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6-128호(‘06. 11. 7.)「출장비 횡령 관련 비리 의혹」



제2006-176호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제109차 전원회의(2006. 12. 4.)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분과2006-57호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소속회사 이사장이 부패행위 신고에 조력한 소속 직원에게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가하는 등의 협조자 보호관련 준용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심의 · 의결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소속회사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에 소속 직원이 조력한 사실을 인지한 후 사무실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열쇠를 지급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무실 출입과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토록 함으로써 부패방지법 제32조제1항, 제34조의 협조자 보호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53조제1항1호 및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이 상당함
- 다만, 소속회사 이사장은 신고된 부패행위와 무관하나 언론보도로 인해 지역업체의 운영자로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점, 조합 운영비 부족으로 다른 직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사무실이 휴업 중에도 불구하고 요구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의 일부를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 150만원 부과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6-57호 ('06. 5. 18.)「국책사업수행연구소의 예산 낭비」

– 제2006-154호 및 2006-155호 ('06. 11. 6.)「국책사업 수행연구소의 예산낭비 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제2006-177호

『군수의 건설입찰 및 승진인사 관련 뇌물수수 등
비리의혹』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12)

제109차 전원회의(2006. 12. 4.)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5-7호「기초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등 비리」건 관련 요구자가 부패행위 신고에 조력한 후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그 인용 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요구자에게 부패행위와 관련한 범죄행위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원회의 조사 시 소속 기관장, 전 행정계장 등에게 인사청탁 등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별도의 진술서까지 제출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있다는 점, 자신과 관련된 부패행위에 대해 양심적으로 진술하여 조직 내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 부패행위 신고에 조력한 협조자의 경우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해 기관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요구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권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분보장조치 요구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책임의 감면을 권고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7호('05. 2. 1.)「기초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등 비리」



제2006-186호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9,10,11)

제110차 전원회의(2006. 12. 18.)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감독기관에 접수된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 건에 관련된 요구자들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한 인용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2005-9호 신분보장조치 요구 건은 요구자가 사학재단의 비리를 감독기관인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것은 부폐방지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이 법에 의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5조의 2(소속기관 등에 대한 신고자의 보호) 규정의 준용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점, 요구자에 대한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재심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 요구자에 대한 과면처분이 부폐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05-10호 및 2005-11호 신분보장조치 요구 건은 요구자들이 원직에 복귀하여 신분상 원상회복 등이 이루어져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취하함에 따라 심의 · 종결함

3 의결결과

- 제2005-9호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제2005-10 및 2005-11호의 신분보장조치요구는 심의 · 종결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141호(2006. 10. 16.) 「학교법인 ○○ 학원에 관한 부폐행위신고 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 조치요구(2005-9,10,11)」



III. 申告者 補償

제2006-33호

『○○청 직원의 탈세신고 처리지연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93차 전원회의(2006. 3.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가 「○○청 직원의 탈세신고 처리지연 비리」 건을 신고한 후 체납된 세금 111,732,000원이 징수되었고,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 결정한 바,
 - 신청인은 위 기각결정은 증거채택을 잘못함으로써 판단유탈, 사실오인, 심리미진에 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의신청함

2 심의내용

- 가사 신청인 주장과 같이 암류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부패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것이 아니므로 위 암류와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체납처분의 경우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해방공탁금과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신청인이 본 위원회에 관련사실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서에 위 부동산을 암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동산 공매대금과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따라서 본 위원회의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함

3 의결결과

-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167호(2005. 12. 19.) 「○○청 직원의 탈세신고 처리지연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



제2006-55호

『경찰공무원의 국고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1)

제96차 전원회의(2006. 4. 1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4. 10. 경 「경찰공무원의 국고금 횡령」건을 신고함으로써 2006. 3. 경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횡령한 182,459,980원이 환수됨에 따라 「구 부패방지법」(2005. 7. 21. 법률 제7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경찰서 차량압류등록, 해제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납부고지 영수증을 위조하여 국고금을 횡령한 행위 즉, 법령(「회계 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 「형법」 제33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로서 법 제2조제3호 가목의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횡령한 금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졌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15,772,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137호(2004. 12. 6.) 「경찰공무원의 국고금 횡령 등」



제2006-56호

『퇴직공직자에 대한 급여 부당지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2)

제96차 전원회의(2006. 4. 1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4. 8. 경 「퇴직공직자에 대한 급여 부당지급」건을 신고 함으로써 2006. 3. 경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부당 지급된 급여 11,348,060원이 환수됨에 따라 「구 부패 방지법」(2005. 7. 21. 법률 제7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사무처는 2004. 2. 경 수석부의장이 퇴직 하였음에도 법령 등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관행(후임자가 부임할 때까지 전임자의 개인운전기사로 근무상태 유지)이라는 이유로 별정직 공무원을 위 사무처에서 퇴직한 수석부의장의 개인운전기사로 계속 근무하게 하고, 실제로 사무처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6개월분의 보수 11,348,060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5. 5. 경 부당 지급된 급여에 대한 수입처리(국고여입)를 통해 11,348,060원을 환수하였음
- 신청인은 국고를 낭비한 행위,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예산사용에 있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하였고, 사무처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동안 지급된 금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졌는바, 보상금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1,134,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102호(2004. 9. 20.) 「퇴직공무원에 대한 급여 부당 지급」



제2006-57호

『공립보육시설 원장의 정부보조금 횡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3)

제96차 전원회의(2006. 4. 1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4. 1. 경 「공립보육시설 원장의 정부보조금 횡령 등」건을 신고함으로써 2006. 3. 경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32,238,366원이 환수됨에 따라 「구 부패방지법」(2005. 7. 21. 법률 제7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실제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5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3인 및 보육원생 학부모 1인 등 4명을 당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2003. 3.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보조금 총 31,279,061원을 편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급여수령 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구청은 32,238,366원(이자959,305원)을 환수하였음
- 신청인은 보육시설원장이 소속 보육교사 인건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횡령하고, 보육교사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허위 청구하여 편취한 행위, 즉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편취한 금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졌는바, 보상금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3,223,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30호(2004. 3. 8.) 「공립보육시설 원장의 정부보조금 횡령 등」



제2006-58호

『직위를 이용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4)

제96차 전원회의(2006. 4. 1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3. 3. 경 및 같은 해 5. 경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신고 (진정, 탄원 등)를 한 후 2006. 3. 경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함에 따라
- 「구 부패방지법」(2005. 7. 21. 법률 제7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이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주된 내용은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대한태권도협회장, 국기원장 등의 직위를 가진 자와 관련된 태권도
계의 부정, 비리 등에 관한 것인바,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등은 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고,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대한태권도협회장, 국기원장 등은 법 제2조제2호가
규정하는 “공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신고내용이 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한편, 피신고자에 대한 형사재판결과 추징이 선고되고 그 형이 집행된
사실은 있으나 위 추징의 원인이 된 배임수재 등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 추징이
시행령 제35조가 규정하는 부과 및 환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그렇다면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신청은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함

3 의결결과

-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4 비 고



제2006-59호

『○○신경외과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5)

제96차 전원회의(2006. 4. 1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4. 5. 경 「○○신경외과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 청구」건을 신고한 후 2006. 3. 경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22,163,940원이 환수됨에 따라 「구 부패방지법」(2005. 7. 21. 법률 제7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패방지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물리치료사의 휴무일에 무자격자(물리치료실 보조인력)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에 산입하여 청구한 사실과, 상근 물리치료사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고 물리치료사 1인당 치료인원상한(1일 30명)을 초과하여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위 신경외과의원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26,531,860원(본인부담금 4,367,920원 이 포함된 금액임)을 환수 조치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고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행위 즉,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졌는바, 보상금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2,216,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제2006-60호

『○○의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등
부정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6)

제96차 전원회의(2006. 4. 1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3. 8. 경 「○○의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등 부정청구」 건을 신고하여 2005. 4. 경 보상금을 부분지급 받은 후, 2006. 3. 경 추가로 환수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 23,597,810원이 추가 환수됨에 따라 「구 부폐방지법」(2005. 7. 21. 법률 제7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폐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 하여 요양급여비용 102,245,216원, 의료급여비용 32,849,955원, 합계 135,095,171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 바, 당시 요양급여비용 관련 부당금액은 피신고의원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과 상계처리하여 환수 되었고, 의료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이학요법료를 부당금액에서 제외하여 환수대상금액 23,838,400원 중 23,597,810원을 추가 환수되었음
-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회의는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대한 보상금 지급결정 당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고, 보상금 지급제한사유, 감액사유 및 공제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의료급여비용”의 환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위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1,661,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44호(2005. 4. 18.)「○○의원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부정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06-93호

『관급공사 레미콘 납품 관련 예산낭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7)

제100차 전원회의(2006. 6.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들은 2004. 8. 경 「관급공사 레미콘 납품 관련 예산낭비」건을 신고한 후 2006. 5. 경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94,171,572원이 환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위 신고와 관련하여 2006. 5. 경 피신고자가 공탁한 공탁금 수령을 통해 94,171,572원(이자 51,572원 포함)을 환수 조치함
- 신청인들은 관급공사 업체 대표이사가 시공회사들과 공모하여 레미콘물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편취한 행위 등 즉, 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법령(「형법」제347조)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3호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편취한 금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졌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법 제36조제2항, 구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별표1)

3 의결결과

- 금 9,417,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117호(2004. 10. 18.) 「관급공사 레미콘 납품 관련 예산낭비」



제2006-94호

『도로구조 개선공사 관련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8)

제100차 전원회의(2006. 6.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4. 9. 경 「도로구조 개선공사 관련 뇌물수수」건을 신고한 후 2006. 5. 경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의 뇌물수수 금원 및 허위 영업손실 보상금 43,500,000원이 환수됨에 따라 「부폐방지법」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폐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위 신고와 관련하여 피신고자가 업주들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총 금 원 33,500,000원 전액이 추징되었고, ○○구청에 업체에 부정지급 된 영업휴직보상금 74,739,000원 중 10,000,000원이 환수됨.
- 신청인은 공무원이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뇌물수수하고,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행위 등 즉, 공직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폐행위(법 제 2조제3호가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뇌물수수한 금원 및 과다 지급한 보상금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졌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 재한다고 판단됨 (법 제36조제2항, 구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별표1)

3 의결결과

- 금 4,35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126호(2004. 11. 8.)「도로구조 개선공사 관련 뇌물 수수」



제2006-9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Ⅰ)』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9)

제100차 전원회의(2006. 6.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3. 8. 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Ⅰ)」건을 신고한 후 2006. 5. 경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 9,243,840원이 환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내원일수 증일 청구, 검사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방사선 필름 대체 및 중량청구로 인한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되어, ○○의원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과 상계(2006. 3.~4.)하는 방법으로 신고관련 부당금액 9,243,840원을 환수 조치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고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행위 즉,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폐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졌는바, 보상금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924,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3-138호(2003. 10. 20.)「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 청구(Ⅰ)」



제2006-96호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지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10)

제100차 전원회의(2006. 6.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5. 8. 경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지급」건을 신고한 후 2006. 5. 경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81,900,000원이 환수됨에 따라 「부패 방지법」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위 신고와 관련하여 태풍피해복구사업비 보조금 명목으로 금 81,900,000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피신고자로부터 2006. 1. 경 81,900,000원을 자진 반납 받는 형식으로 환수 조치함
- 신청인은 태풍관련 피해어민들이 피해정도를 실제보다 부풀려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 즉, 법령(「형법」 제347조제1항 및 제40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0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부폐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횡령한 금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중대가 이루어졌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8,19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5-78호(2005. 11. 7.)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지급」



제2006-97호

『상수도사업소 검침용역원 비리 및 국고금 손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11)

제100차 전원회의(2006. 6.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5. 6. 경 「상수도사업소 검찰용역원 비리 및 국고금 손실 등」건을 신고한 후 2005. 6. 경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 위 신고로 인하여 수도요금 및 계량기 변상금 합계 35,088,960원이 환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수도요금을 낮추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도 사용량을 낮추어 허위로 보고하고 18,300,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 ○○시는 수도요금을 부정 감면받은 위 업체들로부터 2006. 3. 경 징수를 면한 요금과 과태료, 계량기 변상금으로 35,088,960원을 환수 조치함
- 신청인은 수도검침원이 수도사용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고 계량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수도요금이 적게 나오게 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법제2조제3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수도요금을 부정 감면받은 업체들로부터 환수가 이루어져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중대가 이루어 졌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3,50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113호(2005. 9. 5.)「상수도사업소 검침용역원 비리 및 국고금 손실 등」



제2006-98호

『무기도입 절충교역 계약 불이행 관련
국고손실』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12)

제100차 전원회의(2006. 6.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3. 10. 경 「무기도입 절충교역 계약 불이행 관련 국고 손실」 건을 신고한 후 2006. 4. 경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 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06. 6. 경 심의 · 의결한 내용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위 신고와 관련하여 간접 절충교역 이행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본부는 감사처분요구에 따라 '05. 3. 경 해당 업체와 이행금액 증액 및 기간연장 수정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음
- 신청인의 신고로 인하여 간접절충교역에 관한 수정계약이 체결되어 그 중 일부가 이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간접절충교역은 외국의 수출업체가 국내 민간업체로부터 수입을 하는 것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간접절충교역이 향후 불이행으로 확정되어 이행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등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간접절충교역에 관한 수정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간접절충 교역이 이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보상금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1호('04. 1. 12.) 「무기도입 절충교역 계약 불이행 관련 국고손실」



제2006-108호

『직위를 이용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건 관련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01차 전원회의(2006. 7. 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3. 3. 경 및 같은 해 5. 경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세계○○○연맹총재, 대한○○○협회장, ○○원장 등의 직위를 가진 피신고인과 관련된 ○○○계의 부정, 비리 등에 관한 신고(진정, 탄원 등)를 한 후 2006. 3. 경 본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위원회는 2006. 4. 경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기각한 바 있음
 - 신청인은 2006. 5. 경 위 기각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바, 이에 대해 심의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가 이 법에 의한 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신청인의 보상금지급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이의신청 기각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6-58호(2006. 4. 17.) 「직위를 이용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06-158호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14)

제107차 전원회의(2006. 11. 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2. 6. 경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등」건을 신고한 후 2006. 10. 경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추징금 51,954,480원이 환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 1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2005. 6. 경 환수액으로 373,207,540원이 납부되어 2005. 7. 25. 자로 보상금 29,124,000원을 부분 지급한 바 있으며, 2006. 8. 경 현재 추가로 51,954,480원이 납부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검토함
- 본건의 기 환수 금액에 대한 1차 보상금 지급당시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회의는 본건이 보상금 지급결정 당시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존재하고, 보상금 지급제한사유, 감액사유 및 공제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환수된 금액에 대하여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바,
 - 금번 환수금액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위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3,637,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2-114호('02. 9. 16.)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등」



제2006-159호

『국립병원 납품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15)

제107차 전원회의(2006. 11. 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5. 11. 경 「국립병원 납품관련 비리」건을 신고한 후 2006. 10. 경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로부터 납품시 누락된 물품(평가금액 16,995,000원)이 환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법령(형법 제347조)을 위반하여 물품을 누락시켜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법 제2조제3호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시에 누락된 물품(온도기록계)이 납품됨으로써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졌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1,699,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6-6호('06. 1. 16.) 「국립병원 납품관련 비리 의혹」



제2006-160호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16)

제107차 전원회의(2006. 11. 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4. 12. 경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건을 신고한 후 2006. 10. 19.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의 뇌물수수 금원 3,000,000원이 환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에 의거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발주업체인 ○○공사 직원이 하청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행위 등 즉, 공직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형법」제129조제1항,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제18조)을 위반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즉 법 제2조제3호가목의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뇌물수수한 금원이 추징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졌으며, 위 추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3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40호('05. 4. 18.)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제2006-161호

『방위산업체의 납품원가 조작 국고손실』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17)

제107차 전원회의(2006. 11. 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4. 11. 경 「방위산업체의 납품원가 조작 국고손실」 건을 신고한 후, 2006. 10. 경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허위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300,000,000원이 환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제3항, 구 「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부풀린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국가예산을 지급받은 행위 즉,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법 제2조제3호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업체가 환수결정된 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졌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16,8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10호(‘05. 2. 15.) 「방위산업체 납품원가 조작 국고 손실」



제2006-162호

『군부대 입찰 및 납품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2006-19)

제108차 전원회의(2006. 11. 20.)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인은 2005. 8. 경 「군부대 입찰 및 관련 비리」건을 신고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부패행위자들에 대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고, 군차원의 물품구매와 관련된 지침이 개선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제1항, 「부패방지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군부대 납품과 관련하여 단가조작, 입찰정보 사전유출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납품이 시행되어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음
 - 이는 군납품업체 대표가 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 공여하였고, 비교견적서 위조, 고가견적서 제출 등의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관련 법령(「형법」제347조)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즉 법 제2조3호나목의 부패행위와 아울러, 공직자(군인 및 군무원)가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형법」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즉 법 제2조제3호가목의 부폐행위에 해당함. 신고로 인하여 공직자들 12명이 형사처분 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5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군 차원의 물품구매관련지침(기지 조달절차, 소액계약운영방법)이 개정되는 등 현저히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점이 인정되므로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2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121호('05. 9. 26.) 「군부대 입찰 및 납품 비리」



제2006-163호

『초등학교의 보수공사 예산낭비 의혹 등』건 관련
포상금 지급(2006-13)

제108차 전원회의(2006. 11. 20.)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인은 2005. 9. 경 「초등학교 보수공사 예산 낭비 의혹 등」건을 신고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부패행위자들에 대해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고, 학교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공사비가 회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제1항, 「부패방지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학교장이 교내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실장에게 전문공사업 면허가 없는 특정업체에서 시공하도록 지시하여 부실공사 초래하였으며,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신고하였음
 -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에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함. 신고로 인하여 부패행위자에 대한 공소제기 · 기소유예, 징계처분 등의 사실이 있으므로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5-84호(2005. 11. 7.) 「초등학교의 보수공사 예산낭비 의혹 등」



제2006-187호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20)

제110차 전원회의(2006. 12.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의혹」건을 신고한 후 2006. 11. 경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부당지급액 1,613,810원에 대하여 환수 조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제2항, 제3항, 「부패방지법시행령」 제35조의2, 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공무원들이 허위로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작성하여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행위 등 즉, 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지침(「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3호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금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졌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322,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6-92호(2006. 9. 6.)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의혹」



제2006-188호

『과적차량 단속 공무원의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21)

제110차 전원회의(2006. 12.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과적차량단속 공무원의 뇌물수수」건을 신고한 후 2006. 11.경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3,110,000원이 환수 조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제36조제2항, 제3항, 구「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인 과적차량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즉, 공직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형법」제129조제1항, 131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3호가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들이 뇌물수수한 금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 졌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311,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제2006-189호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 지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22)

제110차 전원회의(2006. 12.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 지급」건을 신고한 후 2006. 11. 경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복구사업 보조금 60,684,930원에 대하여 환수 조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태풍피해 어민의 복구사업 보조금 편취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복구사업 보조금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졌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4,79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5-78호(2005. 11. 7.)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지급」



제2006-190호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23)

제110차 전원회의(2006. 12.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뇌물수수」건을 신고한 후 2006. 11. 경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뇌물로 수수한 금원 59,000,000원에 대하여 환수 조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제36조제2항, 제3항, 구 「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뇌물수수 당시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부패행위 (법 제2조제3호가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 신고자들로부터 추징금이 환수됨으로써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5,9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3-38호(2003. 4. 7.)「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뇌물수수」



제2006-191호

『생활폐기물 대행업 수의계약 관련 금품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6-24)

제110차 전원회의(2006. 12.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2. 2. 경 「생활폐기물대행업 수의계약관련 금품수수」건을 신고한 후 2006. 11.경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놔물수수한 5,000,000원이 추징됨에 따라 「부패방지법」제36조제2항, 제3항, 구「부패방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가 ○○시장에게 부탁하여 ○○시 청소업무가 민간위탁되어 자신의 회사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목적의 놔물을 제공한 사실 즉, '공직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형법」제132조)을 위반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 제2조제3호가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추징금 중 일부를 납부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졌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5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2-46호(2002. 5. 6.)「생활폐기물대행업 수의계약 관련 금품수수」



제2006-192호

『신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국고손실
의혹 등』건 관련 포상금 지급(2006-25)

제110차 전원회의(2006. 12.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신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국고손실 의혹 등」건을 신고하였는 바,
 -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 제36조제1항, 「부패방지법 시행령」제35조에 의거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시수도사업소 등 3개 기관의 담당공무원들이 노후 상수도관 간생공사와 관련하여 신기술 제354호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모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일반경쟁입찰 계약의 경우에 비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신고하였음
 - 이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지방공무원법」제4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즉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부폐행위에 해당함
 - 신고로 인하여 3개기관의 담당자 8명에 대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위원회 제도개선권고안 마련의 단초를 제공한 점,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어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관련 의안 – 분과2005-87호(‘05. 11. 21.) 「신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국고손실 의혹 등」
 - 제2006-152호(‘06. 11. 6.) 「건설신기술 관련 비리 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IV. 制度改善・腐敗影響評價

제2006-21호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제92차 전원회의(2006. 2. 20.)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박사학위는 학문분야의 최고 지성을 상징하고 학위과정의 운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의·치·한의학과 박사학위 부정수여, 최근에 발생한 논문조작·논문대필 문제 등으로 고급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는 학문활동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제기됨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비리소지 제거, 학문활동 및 박사학위에 대한 신뢰도 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2 심의내용

- 박사학위과정의 비리소지 제거를 위하여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특성을 감안한 이수과정의 이원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적발 시스템 확립, 대학별 자율 운영에 따른 책임성 확립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 논의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 직장인 학위 이수과정의 합리적 조정
- ▶ 부정행위 심사기준의 구체화·명확화
- ▶ 논문 종합 DB 구축
- ▶ 논문 부정행위 제보·조사시스템 구축
- ▶ 학위논문 부정방지교육 강화

※ 별첨 :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

4 권고결과

-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교육인적자원부

권고
번호

제도06-2-1

박사학위는 각 학문분야의 최고 지성을 상징하고 국가 및 전체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의·치·한의학과 박사학위 부정수여, 논문조작 문제 등으로 고급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는 학문활동에 대한 사회적 불신 제기

이러한 학술연구에 대한 불신은 최고 지성의 상징인 박사학위의 자원을 넘어 자율성에 기초를 둔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박사학위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비리소지를 제거, 학문활동 및 박사학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대학원의 학문연구와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신뢰 기반 구축 필요

1

직장인 학위 이수과정의 합리적 조정

■ 학위과정 구분 운영

- 직장인 등 학생의 학업여건을 감안 학위과정(course work)을 부분제 및 전일제로 구분 운영

〈예시〉

- 전일제(full-time) 과정 : 학기당 9학점 이상
부분제(part-time) 과정 : 학기당 최대 6학점
 - 전일제·부분제의 등록대상 구분은 학생의 구체적인 학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후 결정
- ⇒ 대학학칙에 규정



■ 이수과정의 차이에 따른 등록금 조정

- 부분제와 전일제 과정이 학기당 이수학점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 등록금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 검토 추진
⇒ 대학학칙에 규정

2

부정행위 심사기준의 구체화 · 명확화

- 박사학위 논문 심사시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 객관적 학위논문심사기준을 학칙에 마련
 - 특히, 논문표절, 논문대필, 실험대행 등에 대해서는 정의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반적 지침을 시달하고, 각 대학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학칙 또는 별도의 규정에 반영

3

학위 · 학술지논문 종합DB 구축

- 박사학위 논문표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및 학위논문에 대한 비교 · 분석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DB시스템 구축
 - 종합 DB에는 년도, 분야, 제목, 주요내용 등에 대한 검색기능 포함
 - 특히, 관련분야 및 제목 등이 유사한 논문간 비교 · 분석이 용이하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
- ⇒ 교육인적자원부가 종합적 DB시스템 구축



■ 부정행위 접수창구 개설

- 박사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등과 관련하여 표절 · 대필, 실험대행 등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내부자 및 이해관계인의 제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대학별 「연구 부정 행위 접수창구」 개설

■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기구 설치

- 박사학위논문 등 관련 제보사항에 대하여 객관적 ·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기구(가칭 : 연구 진실성위원회) 설치
 - 조사대상이 되는 논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함

■ 제보자 보호제도 도입

- 부정행위를 제보한 내부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보내용의 보안유지와 신분상 · 학업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금지

■ 부정행위 제보활성화

- 부정행위 제보활성화를 위해 대학별 홈페이지에 부정 행위접수 및 제보자 보호내용을 홍보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자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검토

⇒ 대학학칙 또는 별도규정에 반영

※ 중 · 장기적으로 법령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추진



5

학위논문 부정방지 교육 강화

■ 학생에 대한 교육

- 논문표절 등 부정행위에 심사기준, 부정행위시 내부제보 및 처리 시스템 안내, 논문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대학원 정규과정에 반영하여 교육

⇒ 대학학칙 또는 별도규정에 반영

■ 교직원에 대한 교육

-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직장내 교육 등을 통해 숙지도록 조치

⇒ 대학학칙 또는 별도규정에 반영

-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학 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6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가. 학위과정 개선에 대한 평가 · 점검기능 강화

■ 학위과정 개선 노력을 대학종합평가에 반영

- 박사학위과정 개선을 위한 자율적 노력도를 대학종합평가에 반영,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종합평가 반영 등



■ 행·재정 제재에 반영

- 박사학위수여 부정·비리에 관련된 대학에 대하여는 재정지원평가시 감점 및 대학원 정원 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행·재정제재에 반영

나.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 제재 강화

■ 학위취소 및 학위수여 제한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박사학위는 반드시 취소토록 하며, 해당 학생은 일정기간 학위수여 제한
 - 박사학위 취소요건을 실험대행, 논문대필·표절 및 논문심사위원에게 금품제공 등 구체적으로 명시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 개정

■ 부정행위 관련 교수의 논문지도 및 심사위원 배제

- 박사학위 부정수여 관련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일정기간 논문지도 및 심사위원 배제
- ⇒ 대학학칙 또는 별도규정에 반영



제2006-22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제92차 전원회의(2006. 2. 2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중소기업은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자금의 속성상 금리 및 지원조건이 시중자금에 비해 유리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각종 부패발생 가능성 상존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어 자금의 효율적 배분 등 자금지원 과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함

2 심의내용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지원과정에서의 객관성 및 투명성 향상,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및 위탁기관 통제기능 강화, 정책 자금 부실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 강화,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 사안 논의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 지원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 지원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장치 강화
- ▶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 ▶ 자금지원 위탁기관에 대한 점검·확인 기능 강화
- ▶ 정책자금 부실에 대한 책임성 강화
- ▶ 정책자금 지원관련 총괄·조정기능 강화

※ 별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권고

4 권고결과

-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관련 부폐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중소기업청 등 관련 13개 부처

권고
번호

제도 06-3-1

중소기업은 신용도 및 담보력이 취약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자금의 속성상 금리 및 지원조건이 시중자금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폐행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고, 시장 친화적 수단에 의한 자금지원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이 강화되며, 정책자금 관리에 대한 책임이 더욱 엄격해 지기 위하여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임

1. 지원업체 선정의 객관성 · 투명성 제고

기

지원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 지원업체 선정기준의 구체화 및 공개

- 지원업체선정을 위한 심사 · 평가기준이 세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기관에서는 이를 마련하여 운용

* 세부평가기준 : 기업평가표, 평가항목별 기준 및 평가등급산정기준 등
(단, 정책자금을 기한내에 상환하지 않았거나 부당지원업체로 적발된 업체는 일정기간 지원신청자격에서 배제)

- 자금지원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세부 심사 · 평가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



- 자금지원을 신청한 후 해당 지원신청업체가 심사진행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원신청업체의 기술수준, 성장전망 등 비재무평가를 확대하되, 평가 항목을 세분화·객관화하여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 여지 최소화

■ 지원결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단독 결정의 경우 결정권자의 지원금액 범위(전결권한)를 지원자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
- 지원업체 심사·평가시 이해관계자 배제규정 명문화
 -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범위 : 지원업체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직계 존비속 등
 - 이해관계 배제 방법 : 당사자의 기피신청
 - 이해관계자에 의한 부당지원 발견시 가중책임 부과 등

■ 지원업체 심의기구의 구성·운영의 실효성 확보

- 이상의 규모가 큰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체제 확립
- 심의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되거나, 의사결정의 책임성이 모호 해지지 않도록 보완책 강구
 -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원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부당지원결정에 개입·관여하거나 비리를 행한 경우 공직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민간인인 경우에는 심의위원 위촉제한 및 형사고발 조치 등 책임추궁 방안 강구
 - 부당지원결정에 책임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심의위원들로부터 제출받음)



- *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한 관련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문책
-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에 참가한 위원들의 의견개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보관
- 위탁기관 심의위원회 구성시 원칙적으로 소관부처 공무원을 배제하여 지원업체 선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청업체의 불필요한 접촉대상을 최소화
- * 자금집행의 성격상 소관부처 공무원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여 공무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

나

지원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활성화

■ 지원선정업체 명단 공개

- 지원신청업체로부터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받아 주기적으로(월 또는 분기별) 사업부문별 지원업체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중소기업간 상호 견제·감시기능 활성화

* 설문조사 결과 지원업체 공개에 대하여 67.1% 찬성의견

■ 지원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구제제도 활성화

- 지원탈락업체에 대하여는 탈락 사유를 통보
- 탈락사유 통보시 일정기간내(예: 1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절차를 안내
-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기구에서 재심사



2. 지원업체 사후관리 및 위탁기관 통제기능 강화

기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체제 구축

-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일정비율(예 : 5%)의 임의 표본을 추출, 자금사용 실적조사를 의무화하고, 자금의 용도와 사용 등 부당행위 발견 시 자금 회수조치 강구
 - 운전자금의 속성상 그 사용내역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해당업체로 하여금 그 사용내역을 사후적으로 제출하도록 조치
 - 일정금액이상 지원업체로 하여금 매년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조기 회수조치 등 강구

■ 지원업체의 외부 회계감사 활성화 유도

- 중소기업 재무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업체 평가시 기산점 부여, 대출금리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나

위탁기관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강화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 주무기관에서 적어도 격년 단위로 직접 감사 실시
 - * 위법 · 부당사항 유형별로 세부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 위탁기관의 내부 통제기능 강화

- 지원대상업체 실태조사 및 심사 · 평가업무 담당직원들에 대한 주기적 감찰활동 실시로 지원업체와의 유착관계 예방 및 근절에 주력



* 내부감사 관련규정에 주기적 감찰활동을 실시토록 명시

- 지원 신청업체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후 수시로 평가대상업체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만사항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 문제점 발견시 감사 실시 의무화

3. 정책자금 부실에 대한 책임성 강화

■ 부실채권 원인분석 및 감축방안 강구(중진공)

- 부실채권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매년 실적 점검을 강화, 실적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고발생 감축방안 강구

* 과거 부실채권 발생율 등을 참고하여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대비 실적, 원인분석 및 대응책 등을 이사회에 보고

■ 대출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강화(중진공)

- 직접지원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시 당초 부당지원 여부, 사후관리 및 채권보전조치 미이행 등 관련직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

* 관련직원의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신분상 제재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부과방안 강구

■ 기술개발 출연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강화(중앙부처)

- 기술개발 출연사업의 실패에 대하여 ‘성실실패’와 ‘불성실실패’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성실실패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원업체 제재기준을 마련

* 제재기준 : 지원자금 회수조치, 지원참가제한, 형사고발 등



4.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기

정책자금 지원관련 총괄 · 조정기능 강화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관련 총괄 · 조정기능 강화

● 총괄 · 조정기능

- 정책자금 지원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정책자금 지원시책의 이행상황 점검 · 관리
- 정책자금 지원관련 유사 · 중복 사업 협의 · 조정
- 정책자금 지원 통합 D/B 구축

● 추진방안

- 중기청이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의사결정은 중기특위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수행
- 중 · 장기적으로 중기청과 중기특위를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 정보공유체제 구축 및 중복 · 편중지원 최소화

● 중기청 주관으로 정책자금 지원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한 종합 정보망을 구축

● 다양한 지원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업체별 지원한도 총액을 설정 · 운용하는 방안 강구

* 단기적으로 중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 · 시행하고, 중 · 장기적으로 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 정책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구체적 성과분석 실시

- 일정금액이상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하여 지원주체별·지원형태별·지원용도별로 2년마다 성과분석을 실시, 이에 근거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수립
 - * 당초 구체적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분석시 그 지원목적 달성을여부, 지원업체의 생산성 분석 등 실시
 - *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사후 기술개발 활용도도 성과분석에 포함

■ 지원금리 차등화 및 지원기간의 탄력적 적용

- 중소기업의 신용도 및 지원기간별로 일정한 범위에서 지원금리를 차등화하여 부실 중소기업 퇴출지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
- 자금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기간을 지원업체의 특성, 시장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 * 지원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차기 지원신청시 지원조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기간도 연장가능 토록함

제2006-35호

계약 · 납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제95차 전원회의(2006. 4. 3.)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공정거래 · 건설 · 의료분야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불명확, 단속 체계 미비 등 부패통제장치 미흡으로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패소지를 제거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2 심의내용

- 민간분야 중에서도 공공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공정거래, 하도급, 건설, 의료분야의 관련 법령에 엄격한 부패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처벌의 실효성 강화, 거래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 공정거래 분야 처벌의 실효성 제고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고발기준 마련
- ▶ 건설공사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뇌물수수 업체 영업정지 실효성 제고
 - 건설부파 DB 및 유관기관 협조시스템 구축
- ▶ 의료분야 리베이트 수수행위 처벌기준 강화
 - 리베이트 관련 규정 정비
 - 행정제재 대상의 확대 및 처벌 강화
- ▶ 대 · 중소기업간 거래과정의 투명성 제고

※ 별첨 : 계약 · 납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

4 권고결과

-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전반적으로 행정분야의 부패는 상당수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분야의 부폐가 상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국가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특히, 공정거래·건설·의료분야의 경쟁 심화, 중소기업의 대형기업에 대한 납품비중 증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대가수수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민간분야의 부패통제와 관련하여 현행 관련법규의 리베이트 금지규정의 실효성 미흡, 소극적 행정제재 등으로 음성적인 부폐 통제에 한계

민간분야 중에서도 공공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공정거래, 하도급, 건설, 의료 관련 법령에 엄격한 부폐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

■ 건설공사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건설교통부)

● 뇌물수수 업체 영업정지 실효성 제고

- 부정한 이익취득 및 공여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감경기준 적용 배제
- 영업정지 제재를 사안화정 즉시 시행

● 건설부패 DB 및 유관기관 협조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은 건설업자의 리베이트 수수금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건교부와 등록기관에 통보, 영업정지 등 요구
- 건설교통부는 행정제재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 행정제재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과 공유

■ 의료분야 리베이트 수수행위 처벌기준 강화(보건복지부)

- 리베이트 관련 규정 정비

- 약국 · 의료기관과 의약품 제조 · 판매업자간 리베이트 수수시 취득자 및 제공자 처벌 규정 신설

- 행정제재 대상의 확대 및 처벌 강화

- 약국 · 의료기관과 의약품 제조 · 판매업자간 리베이트 수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신설

■ 공정거래 분야 처벌의 실효성 제고(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기업납품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있을 경우 ‘부당 고객유인’ 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구성요건을 각각 적용하여 양쪽 당사자 처벌

-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고발기준 마련

- 부패행위적 성격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구체화

■ 대 · 중소기업간 거래과정의 투명성 제고(산업자원부)

- 대 · 중소기업간 협력지수 평가시 투명성 관련항목 추가

제2006-43호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안

제95차 전원회의(2006. 4. 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정실인사 및 선거출서기등 인사와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함

2 심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부조리 사전예방과 행정의 대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위법한 인사운영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논의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기능 강화
 - ▶ 인사기준 준수의 실효성 제고
 - ▶ 균무성적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 ▶ 특별임용 절차 강화
 - ▶ 위법한 인사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 ▶ 지방인사행정 지도·점검·평가시스템 강화
- ※ 별첨 :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에 권고

4 권고결과

-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행정자치부

권고
번호

제도06-2-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배경은

- 자치단체에 대한 내·외부의 견제장치 미비로 인하여 자치단체에서 금품 수수·인사권 남용 등의 인사관련 비리가 빈발
- 특히 인사부조리는 인사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전반의 청렴분위기를 오염시키고 부패유발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소지
- 지방행정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국민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의 부패는 정부 전체의 대국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

이에 따라 지방행정 전반의 투명성·공정성 및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빈발하였던 인사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권고

1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기능 강화

●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강화 및 위촉절차 개선

- 인사위원회의 대표성·중립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공무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확대방안 검토
- 추천 주체별(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공무원단체) 외부위원이 가급적 2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위원수 확대

⇒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개정



● 인사위원회의 사무기능을 인사집행부서에서 분리운영

-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사무직원은 인사부서 이외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기능 보좌

⇒ 지방공무원법 제11조 개정

2

인사기준 준수의 실효성 제고

● 인사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이행강화

-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의결한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임용기준 등 인사기준의 준수여부를 인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인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 인사위원회에 “인사기준 이행요구”에 대하여 72.6%가 찬성
(‘05.10~11월 자치인력개발원 지방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지방공무원법 제8조 개정

3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균평결과를 공개하여 피평정자의 자기계발 기회로 활용하고, 근무평정의 투명성 강화



● 성과면담 실시

- 균평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 균평 관련 불만요인 해소

● 이의신청 절차 마련

- 균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 오해와 불신 소지 제거

※ 국가공무원은 '06.1월부터 균평결과 공개, 성과면담 실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시행(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자부령) 개정

4

특별임용 절차 강화

● 특별임용시 특별임용 사유, 자격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8조 개정

5

위법한 인사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 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대한 지도 · 감독 ·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위법한 인사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승진취소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위법한 승진의 취소방안에 대하여 78.7%가 찬성('05.10 ~ 11월 자체 인력개발원 지방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지방공무원법 제81조 개정

6

지방인시행정 지도 · 점검 · 평가시스템 강화

● 인사운영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평가 실시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인사 운영 가이드 라인(운영지침)을 수립 · 시달하고 이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평가

● 행정자치부의 지방인사 전담인력 보강방안 검토

- ※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인사 관련 전담인력(5명)으로는 지방인사 운영 실태점검 · 평가와 제도개선 등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



제2006-54호

초·중등 교원 인사분야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제96차 전원회의(2006. 4. 1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교원인사 관련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국민들의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교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을 권고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교육계의 자체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관행적인 교원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아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인사권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인사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교원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심의기능 강화
- ▶ 교장임용 심사절차의 강화
- ▶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 및 기준 객관화
- ▶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 위법한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 ▶ 위법한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 별첨 : 초·중등교원 인사분야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

4 권고결과

-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초·중등교원 인사분야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교육인적자원부

권고
번호

제도06-2-3

교육은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도덕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성이 강조

그동안 교육계의 자체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관행적인 교원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아 교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들의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교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원인사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

1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심의기능 강화

가. 위원 구성의 독립성 · 투명성 강화

● 외부위원 참여확대 및 위촉절차 개선

- 현재 7~9인 중 2~3인으로 구성되는 외부위원수를 1/2 이상 점진적 확대 검토
- 외부위원 중 일정수는 교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위촉

〈예시〉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추천 1인), 교원(교직단체 추천 2인)

● 외부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마련

- 현재 관행상 1년인 외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신있는 심의 유도
- 인사위원회 위원장 관련 규정 마련



- 외부위원의 자격 · 배제요건 구체적 명시
 -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배제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자격요건<예시>

- ▶ 법관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 법률학 ·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 ▶ 초 · 중등학교 1급 정교사, 교장
- ▶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 ▶ 초 · 중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 자격요건<예시>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위원
- ▶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 ▶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 ▶ 공무원임용 결격자

나. 인사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심의사항 중 승진 · 전보기준을 정한 「인사규정」 등 구속력이 필요한 사항은 의결사항으로 규정
- 인사위원회에 승진 및 전보기준을 정한 인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이행요구 기능부여 방안 향후 도입 검토

다. 인사위원회 관련규정(교육부 훈령)의 법제화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교육공무원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조치사항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훈령)」 : 인사위원회 관련규정 개정 및 법령화



가. 교장 중임심사 강화

- 교장중임의 결격사유를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
- 현재 교육부훈령(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으로 규정된 교장중임 심사 법적근거 등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

◆ 조치사항

☞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 교장중임 심사 법적근거, 결격사유 규정

나. 초빙교장 평가 및 임용규정 강화

- 초빙교장에 대해 2년마다 평가하여 재임용시 반영
 - 평가요소에 개인의 청렴성 및 학교 경영의 투명성 포함
- ※ 예시 :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모금, 교육기자재 계약의 투명성
- 초빙교장 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토록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

◆ 조치사항

☞ 「교육공무원법」개정 : 학교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른 초빙교장 재임용 근거 규정 마련

☞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 초빙교장 평가방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등

☞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지침)」개정 : 평가요소 규정 등



● 교사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 및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 전보인사와 관련된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지역만기자 · 학교만기자 · 퇴직자 현황 등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 지역별 · 학교별 · 과목별 · 소요 예상인원 등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개
- 전보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보내신, 전보순위명부 작성, 전보인사관리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선호 · 비선호 지역 등을 반영하는 전보인사기준 설정(서울, 대구, 광주)
- 타 시 · 도 전입자에 대한 배치기준 마련

● 교장 · 교감의 전보인사기준 마련

- 직무수행능력, 학교평가, 장학지도 실적, 경력,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인사기준 설정

◆ 조치사항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및 「시 · 도 교육청 인사관리기준 (원칙)」에 반영



가. 근무성적평정 방법의 개선

- 평정자와 피평정자와의 성과면담, 균평결과 본인통보, 이의신청 절차 마련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제와 균평제도를 근본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 국가공무원은 '06.1.부터 균평결과공개, 성과면담, 이의신청 제도 시행

나. 중·고교 교감의 균평확인자를 합리적으로 조정

- 중학교 교감의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지도 감독권자인 교육장으로 함
 - 다만, 지역교육청별 학교수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고등학교 교감의 근무성적평정 확인은 교육행정직 보다는 교직분야의 사정에 밝은 교육전문직(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음

◆ 조치사항 :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개정 검토



5

위법한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 위법한 인사에 대한 징계 및 시정조치 병과 규정 개선
 - 위법한 승진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차원의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징계 및 시정조치 병과 규정 명확화

◆ 조치사항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감사규칙」개정

6

중·장기 검토과제

■ 교사직과 학교관리직의 양성과정 이원화(二元化) 방안 검토

- 교사직과 관리직을 구분, 관리직의 경우는 교사와 다른 양성과정을 통한 임용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교사와는 차별화된 교장 양성과정을 마련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음

■ 교육장 공모제의 공정성 확보 및 점진적 확대 시행

- 교육장 공모제의 공정성 확보 장치를 강구하고 결원 발생지역 교육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 조치사항 :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개정



제2006-67호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제97차 전원회의(2006. 5. 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최근 영상물 등급심의 과정의 금품수수, 각종 경연대회 및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비리 등 문예진흥분야에서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도록 권고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예술문화분야는 국민정서 함양, 문화상품 수출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이지만 특수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통제의 영향력이 미약하여 영상물 등급심의 및 각종 경연대회 등과 관련된 비리가 빈발 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각종 경연대회 운영의 일관성 및 공정성 제고,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부문의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예술문화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적 방안을 심의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 위원회 구성 · 운영의 투명성 강화
- ▶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 ▶ 영등위에 대한 청렴도 측정
- ▶ 경연대회 포상 관련 일관성 · 예측가능성 제고
- ▶ 심사기준의 명확화와 운영의 공정성 제고
- ▶ 미술장식품 계약과정의 견제장치 도입
- ▶ 심의위원 등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 제고
- ▶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의 객관화

※ 별첨 :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문화관광부에 권고

4 권고결과

-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중

5 비 고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문화관광부

권고
번호

제도06-제도기획-2

예술행정분야는 국민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문화상품 수출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중대 추세이나, 전문성·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적·사회적 통제가 미약하여 비리가 빈발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되어 왔음

- 최근 게임물등에 대한 등급심의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 발생
- 각종 예술단체는 경연대회 입상을 위해 비리 구조 상존
-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과정에서 브로커를 끊은 리베이트 관행화

이러한 예술행정분야의 비리소지를 제거하여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였음

1. 영상물 등급심의 관련

■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

- 소위원회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및 필수참여 전문분야를 명시하고, 부적격자의 위원 선임 제한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제외 명문화
- 소위원회 임기를 2년(종전 1년)으로 연장하여 영등위로부터 소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예심위원을 계약직 등 신분을 보다 안정화·전문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직 내·외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 예심위원(17명) : 1년단위 위촉직(2~3년 연장), 월 180만원(심의연 구비, 참석수당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및 소위원회 규정』개정(문광부, 영등위)

※ 법률 제정으로 신설되는 “게임물 심의기구”에도 관련 내용 반영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고 책임있는 의사표시가 이루어 지도록 기명식 비밀투표제로 전환

※ 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교육청) : 1인 1표 비밀투표 방식

- 의사결정 과정 및 심의결과의 공개

- 심의절차, 심의항목 등을 매뉴얼화하여 외부에 공개
- 부득이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
- 등급신청 접수부터 결정까지의 모든 진행상황을 인터넷에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OPEN 시스템’ 도입

-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거나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부득이한 심의지연도 신청자에게 사유 공지 의무화

- 구체적인 ‘출장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부패발생 요인 사전 제거

-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시 사행성 판단 심의기준을 엄격 적용하여 이용가, 이용불가 만으로 판정(심의기간 준수)

⇒『영상물등급위원회 · 소위원회 · 심의절차 규정, 분야별 심의기준』 등 개정(문광부, 영등위)

※ 법률 제정으로 신설되는 “게임물 심의기구”에도 관련 내용 반영



■ 영등위에 대한 청렴도 측정

⇒ 문광부와 협의하여 영등위 관련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 (문광부, 영등위)

2. 경연대회 운영 관련

■ 경연대회 포상 관련 일관성 · 예측가능성 제고

- 경연대회 지원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미등록 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배제 등 포함
 - 예술단체가 경연대회와 관련 비리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등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지원제한 등 제재조치 강화
 - 비리발생 경연대회 수상실적이나 미등록 단체의 수상실적 등은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경연대회 비리발생시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의무적 통보
- ⇒ 『경연대회 후원 · 포상 및 대회운영 · 심사규정』 마련 (문광부)

■ 심사기준의 명확화와 운영의 공정성 제고

- 정부 · 지자체의 지원대회는 주최단체 이외의 예술단체에도 일정비율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을 공개모집
 - 경연대회 심사위원 자격요건 · 구성 및 선정기준 등 마련
 - 비리연루자 배제 등 규정
 - 심사기준 사전공개 및 심사결과의 공개
- ⇒ 『경연대회 포상 · 후원 및 대회운영 · 심사규정』 마련 (문광부)

■ 경연대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대회운영 · 지원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경연대회 종합관리시스템』구축 (문화부)

3.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관련

■ 미술장식품 계약과정의 견제장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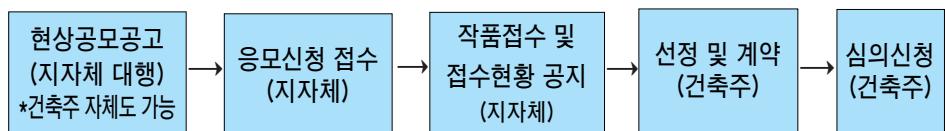
- 공모제 도입

- 건축주가 공모에 의해 작품을 선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시 가점(약 10점) 등 인센티브 부여
- 건축주 신청시 지자체가 공모 · 심의 등 일괄 대행도 가능

* 가부제, 점수제 등 다양한 심의기준을 점수제로 통일

* 서울시 : 점수제(100점중 70점이상 승인)로 운영, 공모작품은 심의시 가점 10점

- 처리절차



* 현재 진행중인 미술장식 DB구축과 연계하여 시도별 공모시스템 구축

*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 건축주의 공공미술기금 출연의무제(1%이상) 도입, 민간 건축주 기금 출연이 가능토록 규정하여 향후 공모시스템 구축 필요

⇒『문화예술진흥법령(규정 · 지침 제정 포함)』개정 (문화부)



● 청렴도 측정 실시

- 미술장식 설치 관련 심의 및 관리업무를 시·도별 청렴도 측정 업무에 포함(관련 업무 시·도 이관후 실시)

⇒『지방자치단체(시·도)에 대한 청렴도 측정』실시

■ 심의위원 등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 제고

● 심의위원의 관내 출품 금지

- 위원회의 심의위원에 대한 관내 작품 출품 제한 규정 마련

● 비리연루 작가의 출품 금지

- 리베이트 제공, 표절 등 불법행위 작가에 대한 일정기간 출품 금지규정 마련

● 미술장식 표석 설치 의무화

- 미술장식에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석 설치를 의무화하여 저작품 설치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근절

⇒『문화예술진흥법령(규정·지침 제정 포함)』개정 (문화부)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 심의위원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기준,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심의위원에 비리행위 관련자·지방의원·이해관계자 등 제외, 공무원 참여비율 제한, 공무원의 위원장 겸직 금지 등 규정

●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심의기준·절차·심의결과 공개 등의 사항에 관한 일반적·통일적 기준(지침) 마련



- 점수제, 심의방식 등 심의관련 사항 포함
- 심의위원 위촉 관련 지역단위 유착방지를 위해 전국·권역별 심의 위원 Pool을 형성하고, 지자체는 이중에서 심의위원 위촉
⇒『운영 관련 지침 또는 기준』마련(문광부)

■ 중·장기적 검토 과제

- 제도개선 방안 시행후 청렴도가 낮거나 부패 재발 등 개선이 미진할 경우 “미술장식 의무설치제 폐지” 또는 “설치비용 제한을 작품성 제한으로 개편” 등 근본적 개선대책 추가 검토

<미술장식 의무설치제 폐지>

- 건축주가 건축물의 가치상승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예술작품을 설치중이므로 미술장식 의무설치제 폐지
- 건축물 신축으로 증가되는 지방세 수입의 일부를 미술장식에 사용
- 미술장식 자율 설치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미술장식 제도 개편>

- 미술장식 설치비용(표준건축비 1%이내) 제한을 최소한의 작품성을 지닌 작품 설치 체제로 개편
 - * 예술성 등 불명확한 심의사항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건축주와 작가간의 비리 고리를 차단하고, 건축주에게 자율성을 부여
- 심의위원회는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심사



제2006-144호

게임물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령개선권고안

제106차 전원회의(2006. 10. 16.)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사행성게임으로 인한 청소년·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급심사, 상품권 인정·지정, 지도·단속과 관련한 비리, 성인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부불신에 까지 이르고 있는 바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한 법령개선 방안을 마련

2 실의내용

- 게임은 오락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법 사행성게임이 전국적으로 유통·이용됨으로써 도박중독 피해와 등급심사, 지도단속 등 관련 부패사례가 연일 보도되는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 2006. 7월 말경부터 '아케이드게임장' 비리에 대한 집중적인 언론 조명을 통하여 전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쟁점화됨에 따라
- 부패영향평가 의뢰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법령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부정·비리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

《법령개선방안 주요내용》

- ▶ 사행성게임물 '등급분류' 폐지를 통한 게임산업의 건전화
 -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 ▶ 각종 협회 및 단체 등 업무 위탁, 지정업무의 구체성·투명성 제고
 - ▶ 기술심의·직권 재등급분류 등 규제 관련 업무의 명확화를 통한 권리남용 방지
 - ▶ 신고포상제 및 업체자율심사 등 도입
- * 별첨 : 게임물 부패 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문화관광부에 권고

4 권고결과

-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게임은 오락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법 시행성 게임이 전국적으로 유통·이용·제공됨에 따라 도박중독 피해와 등급심사, 지도단속, 상품권 자정 등 관련 부패 사례가 종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사례의 수집·분석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토대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의한 경품지급 폐지, 각종 협회·단체 등에 대한 업무 위탁·지정의 구체성·투명성 제고, 게임물 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구성·운영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문화관광부에 권고등위) 구성·운영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문화관광부에 권고

개선권고 내용

1.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를 통한 게임산업의 건전화

- 사행성 등급분류를 위한 문화관광부령의 사행성 기준 및 방법 폐지
- 형법 및 사특법상 규제 또는 처벌되는 것은 게임법상의 게임물에서 제외

2. 경품지급 관련 규정의 폐지

-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행성 기준과 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사항’ 및 ‘경품취급기준’ 폐지

3. 협동개발 및 연구의 구체성·객관성 확보

- 지원대상 협동·연구연구개발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선정기준, 선정 심사방법과 절차,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방법, 그 결과물에 대한 권한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4. 게임기 등 표준화 업무의 구체화

- 표준화 지정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선정기준, 선정 심사방법과 절차,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방법, 그 결과물에 대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

5. E-스포츠 관련 협회 등 예산지원의 투명화

- E-스포츠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성격, 규모, 사업실적 등 자격과 지원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

6. 게임물 등급위원회 구성 · 운영 투명화

- 부패통제를 위하여 게동위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법령에 규정
- 부패행위 전력자, 이해관계자 등을 배제하고,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자에 대한 해촉기준을 법령에 명시
- 위원의 임기, 대우, 신분보장,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을 법령에 명시

7.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 · 단체 등 권한 위임 · 위탁업무의 구체화

- 위탁 권한의 종류 · 범위 및 위탁업무 수행 절차 · 방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 협회 및 단체의 개념 모호로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기관”으로 구체화 하도록 개선

8.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 중요 제보자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고 · 확인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조기 차단

9. 게임산업 분야 창업 및 제작지원 관련 특혜 방지

- 국제규모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규모 또는 명칭을 예시하고 경제적 부가가치의 측정방법과 판단기준을 구체화



10. 게임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격의 구체화

- 양성기관 지정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인 전문강사 등 인력과 시설, 기자재 등에 대한 기준, 출결 등 교육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특혜발생 소지를 제거

11. 게임기기 관련 표준화 대상의 구체화

- ‘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등 표준화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재량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케이드 게임기에 한정하는 등 구체화

12. 게임문화 기반조성관련 규정의 구체화

- 과몰입 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보급 등 기반조성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기관”으로 구체화

13. 게임물 기술심의 대상, 심의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

- 기술심의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리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처리기한, 이의신청 규정 등을 마련

14. 게임물의 운영정보 표시장치 지정업무 수행자격의 구체화

-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의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선정시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자격과 지정 절차를 규정

15. 서면통지 예외 조항의 구체화

- 서면 통보 예외사항을 ‘범죄행위에 제공·이용 또는 증거인멸 등 사유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16. 자치단체 및 협회, 단체에 대한 위임 · 위탁업무의 구체화

- 자치단체에 포괄적 업무위탁으로 재량이 과다하므로 위탁 권한의 종류,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개선

17. 우수게임 심사위원의 자격 구체화

- 우수게임상품 심사와 관련한 관계전문가의 전문분야, 자격요건을 법령에 명시

18. 모범게임제공업소 지정업무의 투명화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기준이 상이하고 기준변경이 용이하므로 최소한의 평가기준, 지정절차 · 방법을 마련하여 위임

19. 게임물 등급변경 및 직권재등급 분류의 기준 마련

- 등급변경 및 직권재등급 분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 또는 사례의 예시 · 열거를 통한 구체화
- ‘직권 재등급분류’의 객관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 재량권 남용을 방지

20. 사후관리(지도 · 단속) 체계화

-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반은 소수의 인원 및 공권력 부재로 조사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고 자체 부패통제장치 미비하므로
 - 정통부의 사례를 참조하여 “공직유관단체”에 단속업무를 위임하여 아케이드 및 온라인 등을 총체적,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시민단체 등과 주기적인 합동 단속, 단속공무원 실명제, 책임제 등 방안도 검토

21. 게임물등급위원회 내부인사 검증 및 취업제한

- 전문위원 등의 등급신청 검토 등과 관련한 부패방지를 위하여 사전 인사검증 및 취업실태 등 관리 철저
 - 위촉전 이력서 서면검토 및 실사를 통해 이해관자자에 대한 심의 제한 및 회피제 등 적극 활용
 - 게임개발업체, 제조사 등 겸업, 동업, 주식취득 등 제한
 - 업체유착 등 방지를 위하여 관련업체 퇴직 후 1년 이상자 위촉 및 퇴직 후 일정기간 관련업체 취업 제한

22. 게임물 등급위원회 직원 외부접촉 차단 및 보호

-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은 내·외부, 직·간접적 불법로비, 협박에 노출되므로 심사자 인적사항 사전유출 통제 및 민원인과 비공식적 대면접촉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각계의 불법로비, 외압, 협박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 담당부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복무규정을 강화
- 상급자, 동료 등 내부청탁 등과 관련하여 자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및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

23. 업체자율심사제도 도입

- 게임물심의위원회의 업무 과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체자율심의 제도의 조기 시행·정착 필요
 - 업체의 자율심의를 위한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메뉴얼화
 - 자율심의를 통한 능률성과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한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조기 시행
 - 업체자율심사 평가결과 충실히 작성된 건에 대해서는 간이심사절차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24. 행정처분 적시성 및 형평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이 상이하고 법령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및 부적정한 처분이 빈발하므로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비



25. 게임물 등급위원회 규정, 심사기준, 각종 세부규정 개정

- 게임물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 규정의 재량과다,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 규정 및 심사기준은 본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 각종 세부규정 중 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의 주요사항이 반영된 경우에는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할 필요

26. 청렴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조기 이행

- '06. 5월 국가청렴위원회가 문화관광부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중 현재 추진사항은 년도 중 이행완료 및 인력·예산의 수반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기 이행

<참 고>

◆ 제도개선 권고 사항 추진상황

1. 소위원회 자격요건 구체화(소위원회 폐지-이행)
2. 소위원 임기 연장(소위원회 폐지-이행)
3. 예심위원 독립성 확보(전문위원으로 격상 임기연장-이행)
4. 심의식 기명식 비밀투표제(10월 법개정과 동시 이행 예정)
5. 심의절차 등 매뉴얼화 및 공개(추진중)
6. 회의록 공개(이행완료-홈페이지)
7. 등급심의 전과정에 대한 'OPEN시스템' 도입(추진중 예산 수반 필요)
8. 등급심의 지연사유 공개(이행 : 홈페이지)
9. 구체적 '출장심의기준' 마련(추진중)
10. 사행성 판단기준의 엄격한 적용(추진중)



개 선 사 항

의 안 번 호	조치사항
【 법 률 】	
1. 사행성 결정 및 사행성 기준 · 방법 폐지	'07. 6월
2. 경품 지급관련 규정 폐지	"
3. 협동연구 선정기준 및 방법, 결과물 권한 명확화	"
4. 표준화 지정기관 인력, 시설기준 결과물 권한 명확화	"
5. 이스포츠 관련 협회등 단체의 성격, 규모 등 명확화	"
6. 등급위원회 구성 · 운영의 주요내용을 규정하여 독립성, 객관성 확보	"
7. 권한 위임의 구체성 확보	"
8.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07. 12월
【 시 행 령 】	
1. 창업 및 제작지원 특혜방지를 위한 개념의 구체화	'07. 6월
2. 전문인력 양성 지정기관 선정과 관련한 자격의 구체화	"
3. 표준화 대상의 구체화	"
4. 게임문화 기반조성과 관련한 업무 위탁기관의 자격 구체화	"
5. 기술심의 대상, 심의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	"
6.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 지정업무 위탁 기관의 자격구체화	"
7. 서면통지 예외 사유의 구체화	"
8. 자치단체 및 협회, 단체에 대한 위임 · 위탁 업무의 구체화	"
【 시행규칙 】	
1. 우수게임상품 심사위원 자격의 구체화	'07. 6월
2. 모범게임업소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의 구체화	"
3. 등급변경 사유 및 직권 재등급 분류기준의 명확화	"
【 기 타 】	
1. 사후관리(지도 · 단속) 체계화	'07. 6월
2. '제등위' 내부인사 겸종 및 취업제한	"
3. '제등위' 직원 외부접촉 차단 및 보호장치 마련	"
4. 업체 자율심사제도 도입	"
5. 행정처분의 적시성 확보	'07. 6월
6.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정, 심사기준, 각종 세부규정 개정	"
7. 청렴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조기 이행	"



제2006-143호

각종 심의 · 의결위원회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안

제107차 전원회의(2006. 11. 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각종 심의 · 의결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 문제와 각종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참여 위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운영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2 심의내용

- 위원회 참여 위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

《제도개선권고안 주요내용》

- ▶ 위원 위촉시 청렴성 · 윤리성을 확인하는 장치 강구
- ▶ 위원 공개모집으로 우수인력 참여확대 및 투명성 제고
- ▶ 위원회 회의록 작성률 의무화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
- ▶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위원회 참여를 배제
- ▶ 제척 · 기피 · 회피 장치를 제도화하여 이해충돌 방지
- ▶ 산하기관의 위원회 구성시 감독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

※ 별첨 : 각종 심의 · 의결위원회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안

3 의결결과

- 각급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 도교육청)에 권고

4 권고결과

-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각종 심의 · 의결위원회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각급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 도교육청)

권고
번호

제도06-제도기획-3

위원회 제도는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거버넌스(governance)의 관점에서 민간참여를 보장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각종 심의 · 의결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특히, 윤리성 ·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이 위촉되어 사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정착 등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 행사하는 위원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 문제 제기,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회피하거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따라서 외부참여 위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운영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 위원의 윤리성 검증 및 책임성 확보

- 위원 위촉 · 해촉기준을 관련규정의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민간 위원의 부패전력을 확인하여 위원위촉시 반영
- 별도의 ‘윤리규범’ 마련 및 윤리준수서약서 작성
- 인허가, 중요한 정책결정 등 심의 · 의결과 관련하여 금품수수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

■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제고

- 위원 공개모집으로 우수인력 참여기회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위원회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외보안이 필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비공개 모집 가능



- 장기간 연임 및 과다한 중복위촉 제한, 내부위원 및 공무원 비율 상한선 설정(예 : 임기 2년, 위촉 3회, 중복위촉 5개)
-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소관상임위 관련 위원회 참여 배제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제척 · 기피 · 회피장치를 제도화하여 위원회 심의 · 운영과정상에서 발생가능한 이해충돌 방지
- 당해기관이 발주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용역 · 공사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 금지
- 대면심의 ·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등에 의한 직무위임자 이외는 대리참석을 금지
- 위원의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
- 상설위원회 위원명단은 공개하고 특정안건 심사를 위하여 Pool에서 수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명단은 사전공개 금지

■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 위원회 기능 · 비리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문제점 있는 위원회 합리적 정비
- 법적 근거 없이 조건을 부과하거나 권한외적인 사항을 심의하지 못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규정
- 심의기한을 명시하고, 심의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온라인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 분과위원회 · 소위원회의 기능 · 운영사항 등을 관계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

■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영향력 제한

- 각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소위원회 등 구성시 인 · 허가, 심사 등 대민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 참여 배제
- 감독기관 공무원의 산하기관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제2006-152호

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제107차 전원회의(2006. 11.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건설신기술로 인증될 경우 각종 혜택이 주어져 심사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심사위원 상대 로비 빈발하고 현장 적용시 수의계약 및 지나친 경쟁제한으로 예산낭비, 계약관련 공무원 뇌물수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 심의내용

-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1989년 도입된 제도로
- 신기술로 인증될 경우 수의계약, 제한경쟁, 기술사용료, 관급공사 우선적용, 입찰자격사전심사 가점부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므로 인증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심사위원 상대로 한 로비가 빈발하고 신기술 현장 적용시 수의계약 및 지나친 경쟁제한으로 예산낭비, 계약관련 공무원 수뢰, 신기술로 공사 수주 후 실제로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작용 발생하고 있어
- 건설신기술 인증과정의 공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사후 활용단계에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대책을 심의

《제도개선권고 주요내용》

- ▶ 심사위원 구성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 ▶ 인증심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 ▶ 신기술 관련 사후관리 강화
- ▶ 계약상 특혜소지 제거

* 별첨 : 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건설교통부에 권고

4 권고결과

-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건설교통부

권고
번호

제도06-제도기획-4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술 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89년 도입

신기술로 인증될 경우 수의계약, 제한경쟁, 기술사용료, 관급공사 우선적용, 입찰자격사전심사 가점부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져

- 인증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심사위원 상대 로비 빈발
- 신기술 현장 적용 시 수의계약 및 지나친 경쟁제한으로 예산낭비, 계약관련 공무원 수뢰, 신기술로 공시 수주 후 실제로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작용 발생

건설신기술 인증 과정의 공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사후 활용 단계에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 수립

건설교통부

(1) 심사위원 구성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성 검증 강화

- 인력풀 구축시 개인 동의를 전제로 위원들에 대한 신원조회절차를 의무화하여 부패전력 등 윤리·청렴성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
- 심사위원 인력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업체에 위촉·근무 또는 용역수행자 등 이해관계자 배제



■ 심사위원 전문성 제고

- 신기술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시 관련분야 자격증, 학위 소지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강화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로 선발
- 인증심사에 임하는 위원 개인에 대한 성실도, 전문지식 소유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부적격자 퇴출
- 신기술 보유자(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들의 경우 동종 기술 심사시 심의위원 위촉을 원칙적으로 금지

■ 심사위원 활동의 공정성 확보

- 심사위원 대상 사전로비 차단을 위해 위원명단의 사전공개 금지
-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제를 도입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 제고

■ 인력풀에서 심사위원 선정과정 개선

- 심의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는 인력풀에 포함시켜 기존 심의위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 관리
- 인력풀로부터 위원후보 전산 추출시 순번을 부여하여 상위 순번대로 위촉하고, 후순위자 위촉시 사유 기재 의무화

(2) 인증심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 인증심사과정의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도입

- 평가원 홈페이지에 심의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심의지연 사유 제시 의무화

■ 인증불허사유 구체적 통지 의무화

- 인증신청자에게 불허결정 통지시 사유를 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 토록 하고 주심위원이 결정문을 쓰는 방안 병행 검토

■ 관계기관 의견수렴 강화

- 신청기술과 관련 있는 연구기관이나 관급공사 발주처 등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강화하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적극 반영
-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관계기관 의견과 명백히 상반되었을 시 해당 이유를 평가서에 정확히 명시도록 의무화

■ 평가원 인증심사 관계부서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배제

- 서류 접수 · 심의 · 민원처리 등 전 과정에서 평가원 담당자의 영향력 행사 및 규정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피 · 시정요구 등 보완책 마련
- 평가원 심사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제정 등 윤리의식 강화

(3) 신기술 관련 사후관리 강화

■ 신기술 현장적용 감시시스템 강화

- 신기술이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제외될 경우 투명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기구를 통한 심사 의무화
- 건교부 주관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실태에 대해 주기적 점검

■ 활용실적 관리의 내실화

- 신기술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신기술에 대한 평가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D/B구축, 정보공유 및 사후관리 활용
-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신기술 세부 활용실적과 평가내용을 상세히 공개, 부실신기술의 자동퇴출 유도



(4) 계약상 특혜소지 제거

■ 수의계약 남발 방지대책 마련

- 건설신기술 발주공사의 수의계약사유를 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적극 검토
- 발주청(지자체 포함)별로 설치된 ‘신기술설계자문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구를 통해 신기술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등 계약방법 심의

■ 신기술협약제한에 따른 입찰참가 형평성 문제 최소화

- 신기술사용과 관련한 ‘기술협약세부체결기준’ 마련
- 기술사용료와 관련하여 과도한 사용료 지불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 신기술보유자의 부당한 기술제공 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 신기술 제공을 거부한 공법에 대해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타공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신기술 적용 배제
- 신기술 제공거부 횟수 등을 기준으로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불허 또는 연장기간 축소
- 신기술 제공거부 횟수 및 내용 등을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



제2006-153호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령개선 권고안

제107차 전원회의(2006. 11. 6.)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우리나라의 공유수면은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고, 미래의 국가 성장산업인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됨에도 일제 시대의 자료를 아직도 사용하는 등 현황파악이 미흡, 이로 인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가 빈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에서는 이를 방지하는 사례가 있어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매립공사비 산정방법 개선, 원상회복에 대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2 심의내용

-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과다한 특혜 및 재량행위, 공유수면 매립을 둘러싼 부조리 빈발 등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비리 문제 및 체계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대책 심의

《법령개선권고 주요내용》

- ▶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 ▶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절차 개선
- ▶ 공유수면 매립 총사업비 산정시 특혜유발요인 제거를 통한 투명성 강화
- ▶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 실효성 확보를 통한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
- ▶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와 포락지 조사기관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 별첨 :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령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해양수산부에 권고

4 권고결과

-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조치기한 : 2006. 6. 30. 단, 법령개정 사항 및 용역이 수반되는 사항은 2006. 12. 31. 까지)

5 비 고



공유수면 매립·관리에 관한 법령 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해양수산부

권고
번호

법령분석기획06-2

공유수면에 대한 현황관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서해안 개발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으로 불법매립 행위, 매립지 부당 취득, 공유수면의 무단 점·사용 등 위법행위가 빈발하고, 관할 관청이 이를 방지하는 시례가 다수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실시

- 공유수면에 관한 전반적인 부패실태의 수집·분석, 시민단체 등 관계자,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 등과의 면담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에 관한 8개 법령”에 대해 “공유수면매립 면허자에 대한 특혜 제거” 등을 포함한 32개의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고

개선권고 내용

1.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 법률, 시행령 및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등에 공유수면 실태 파악을 위한 “공유수면 총조사 실시근거”, “포락지에 대한 지적공부에서 말소 및 보상 불가 근거” 마련
-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을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 마련
- 개인 소유의 토지가 포락될 위험에 처할 경우 대처방안 마련
- 지적공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공부상 등록된 내용의 잘못된 점을 제공하도록 요구



2.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절차 개선

- 해양수산부 본부와 지방해양수산청 구분을 없애고 지방청에서 일괄 처리 하되 본부와 협의해야 할 중요 사항을 규정
 - 기간연장, 면적축소, 기간단축 및 점·사용 폐지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협의
- 법률에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조장·방치하거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인·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제재방안 마련, 관련 규정 신설

3. 공유수면 매립 총사업비 산정시 특혜유발요인 제거

- 매립공사의 순공사비 산정기준에 실적공사비를 적용
 - 매립비용에 포함되지도 않은 비용을 반영하여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매립지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
- 총사업비 산정 적정여부를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제31조·제32조에 의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매립사업 총 공사비에 대한 검증 강화
 - 시행령 제20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개정

4.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 실효성 확보를 통한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법 공통)

-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
 - 원상회복명령 반복횟수, 이행기간, 원상회복 판단기준 및 확인의무의 규정으로 재량규정을 구체화·명확히 함으로써 부실한 원상회복 방지

< 예시>

관리정이 원상회복을 명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2회에 한하여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반횟수, 위반면적,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등을 반영한 사법기관 고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발대상을 명확히 규정

< 예시 >

2회에 걸쳐 부과한 원상회복명령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 고발조치 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수차례의 원상회복명령, 고발조치에도 불법 매립지나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례 방지<법률 제35조(원상회복) 개정>

● 공유수면 불법 매립 자 뿐만 아니라 악의의 불법매립지 양수 자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규정 신설

- 불법매립행위자 및 이를 알고서도 매수한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부과
- 공유수면 관련법령 위반 토지 및 건축물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

< 예시 >

토지매매 등을 위한 지적측량시 포락지로 측량되는 토지,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된 토지 · 건축물을 매수한 자, 공유수면 관련 법령위반 토지 · 건축물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 토지 · 건축물을 매수한 자 등 악의의 제3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5.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와 포락지 조사기관의 책임 강화

-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서 제출전 어업피해정도 등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 마련하여 허위 또는 부실평가 방지
-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피해영향조사기관 및 관계자의 성실의무 규정 마련
 - 어업피해영양조사 업무수행자의 회피제도 마련
 - 용역 수수료외 금품수수 금지규정 마련
 -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규정 마련

⇒ 수산법 제81조(보상) 개정, 시행령 제62조(손실액의 산출), 어업면 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2(손실액 조사기관의 지정 등) 개정

6.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요건 구체화를 통한 재량의 명확성 확보

- 준공인가 전 한시적 매립지 사용하는 경우 명확한 허가기준의 미비로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목적을 구체화하여 부폐유발요인 제거

7. 잔여매립지 및 매립목적 변경에 따른 재평가매립지 매수 청구 승인 기준 명확화를 통한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확보

- 매립자의 잔여매립지 및 재평가 매립지 매수 청구시 그 승인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화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량권 남용을 방지

8.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하여 매립목적 변경절차의 투명성 확보

-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재량의 자의적 행사 여지가 있으므로 매립목적의 변경사유를 구체화·명료화 할 필요

9. 매립면허 취소사유 명료화

- 매립면허 취소사유에 대한 재량규정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부족
- 불확정 개념을 예시를 통하여 재량규정 명료화
- 위반사유별 제재조항을 구체화·명료화

10. 기타의견

-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 과태료, 벌금,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처벌 강화
-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 및 연안관리 업무는 상호 분리될 수 없는 일련의 업무로 법을 각각 제정·운용할 실익이 미약함으로 공유수면 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연안관리법을 효율적으로 통합 제정할 필요
-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및 자치단체로서의 특성상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실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등 감안하여 별도의 행정 대집행 기구설치 필요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관련법령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위원회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 필요



제2006-169호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제108차 전원회의(2006. 11. 20.)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횡령, 기본재산 임의처분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 심의내용

-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은 사회적 약자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법인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련 분야의 예산낭비는 물론
-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문화 등 국민 참여의식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함에 따라
-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심의

《제도개선권고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보조금·후원금 집행 투명성 평가 반영
- 기능보강사업 집행체계 개선
- 관리감독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 감사의 실질적 기능 강화
- 외부회계검사 등 검증장치 마련
- 기본재산의 엄격한 관리, 임원의 책임성 제고

* 별첨 :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 권고

4 권고결과

-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사회 복지시설 · 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해당
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권고
번호

제도06-2-4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 법인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법인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련 분야의 예산 낭비는 물론

-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문화 등 국민 참여의식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 법인 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시설운영 관련

1.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운영위원회의 역할 확대

-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시설장의 보고사항을 신설

〈심의사항 확대 및 보고사항 신설〉

현행	확대(예시)	보고사항 추가(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계획의 수립 · 평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거주자 생활환경개선 및 고충처리•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원금 조성 및 집행 (후원물품 포함) 관련 사항• 시설회계 예산 및 결산 ·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비신청 · 집행관련 사항• 시설운영에 관련된 이사회 의결사항 등



⇒ 심의사항 확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반영
보고사항 신설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등에 반영

■ 운영위원 위촉의 대표성 제고

- 운영위원 위촉시 복지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일정비율(예 : 30%) 이상 포함하여 위촉

※ 사회복지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시 · 도(시 · 군 · 구) 사회복지 계획 심의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각종 복지사업 수행

※ 시설운영위원 구성 및 임명(현행)

- 위원임명 :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5~10명 임명
- 위원구성 : ① 시설거주자 또는 보호자 대표 ② 지역주민 ③ 후원자대표
④ 관계공무원 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개정

2. 보조금 · 후원금 집행 투명성 평가 반영

- 복지시설 평가시 보조금, 후원금 관리 및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 활용 등 회계관리 투명성 관련 부분을 평가항목에 반영
-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기능보강사업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지급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강구

- 시·군·구 복지종합평가시 복지시설 보조금 신청·집행 등 회계 관리 투명성 관련 분야를 평가에 반영, 지자체의 관리 강화 유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평가) 및 관련 지침에 반영

3. 기능보강사업 집행체계 개선

■ 대상사업 선정의 투명성 제고

-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지원하는 기능보강 대상사업 모집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집

- 기능보강 사업 신청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에 필요한 적정기간(예: 1개월)을 부여

※ 현행 : 신축의 경우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능보강사업 신청 접수를 2주 이내로 부여하는 등 촉박하게 마감하는 사례 빈번

- 기능보강 대상시설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개축 지원대상 결정기준을 구체화

〈예시〉

- 신축 : 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 등 인·허가 가능성, 기본재산출연 등
- 증·개축 : 시설안전, 입소·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 등

- 지원대상 결정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 심의시 지역사회복지 등의 심의를 위한 지역복지위원회(시도 :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 참여 또는 별도기구 마련 등

⇒ 시설종류별 기능보강사업 관련 지침에 반영

■ 시설공사 발주방법 개선

-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시설보강공사의 편법계약 방지와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일정규모(예 : 2억원) 이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조달시스템을 이용토록 의무화
 -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직접 이용하거나,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토록 규정하고
- ※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조달청고시(제2005-9호)에 의거 조달청에 조달요청 가능
 - 사회복지시설 계약업무 매뉴얼 제작 · 배포 및 「전자조달시스템」이용 관련 복지시설 관계자 교육 실시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2조(계약의방법) 개정

4. 관리감독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 보조금 및 인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현재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보조금 신청 · 정산, 종사원 · 생활인 인적사항 관리 등 주요사항을 회계시스템의 전산처리 기능에 포함되도록 구축 · 운영
- 통합회계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담당자 및 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시행



■ 지도점검의 내실화 및 전문성 보완

●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등) 등 취약업무와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점검 내용을 보완·강화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시설종류별 관련지침에 반영

5. 감사의 실질적 기능 강화

- 감사의 업무범위를 기본재산 관리, 기능보강사업비·운영비 등 보조금 관리, 후원금 분야 중심으로 구체화

- 감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주무관청에도 제출

※ 현행 : 법인의 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2조 개정

6. 외부 회계검사 등 검증장치 마련

- 회계부정 방지 및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 회계검사제를 도입

※ 예시) 연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

- 외부회계검사에 따른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토록 하고, 회계법인은 주무관청이 선정토록하여 회계검사의 객관성을 제고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2조 개정

7. 기본재산의 엄격한 관리

■ 기본재산 관리체계 구축

- 사회복지 시설법인 설립허가 관련 현금성 기본재산 출연근거 규정 및 기준을 마련
- 금융재산, 부동산 등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감독기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시스템을 주무부처 주관으로 구축
 -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거래내역, 잔고 등에 대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조치
 - 부동산은 관리대장을 DB로 구축하여 중감내역을 전산화된 방법으로 관리하고, 주기적 점검으로 저당설정 등 임의처분 행위를 방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현금성 기본재산 출연근거, 기준을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 등 근거규정 마련

■ 기본재산 처분허가 기준제정 및 허가내용 공개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본재산 관리의 투명성 · 공정성 확보
 - 〈예시〉
처분 및 장기차입의 목적, 규모, 상한액, 목적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포함
-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허가근거, 처분목적, 처분재산 내역 등 허가내용 개요를 허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 처분), 제15조(장기 차입금 허가) 개정

8. 법인 임원 책임성 제고

■ 임시이사 파견제 도입

- 법인의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해임명령)에 해당되어 해임되는 등 정상적인 법인 관리가 곤란한 경우, 주무관청은 임시이사를 파견(예 : 1년)하여 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개정

■ 특별관계 임원 해임사유 규정

- 임원(이사 및 감사) 중 출연자 또는 이사 상호간 특별한 관계(단, 이사는 1/5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주무관청이 해임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임원의 해임사유) 개정

■ 개방형 이사제 도입

- 국가 · 지자체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검토 · 추진
 - 개방형 이사제 도입범위, 이사의 자격요건 및 추천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개정

제2006-184호

주택 재개발·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제110차 전원회의(2006. 12. 18.)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조합 임원과 업체간 유착에 따른 금품수수,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 위법행위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2 심의내용

-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는 현행 법령의 불명확성, 각종 절차·기준 미비, 건설회사 선정시기 및 방식 수시 변경 등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
-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시공사, 철거, 정비업체 등에서 추진위·조합에 음성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조합 임원 등이 각종 이권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감독 공무원의 부패행위도 빈발
-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패실태 및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주체간 금품수수,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심의

《제도개선권고 주요내용》

- ▶ 자치단체 정비계획수립 기능의 적극적 수행
- ▶ 사업 초기비용 확보방안 마련
- ▶ 참여업체 선정시기·기준·절차 등 명확화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사업능력 강화
- ▶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성 강화
- ▶ 추진위,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별첨 : 주택 재개발·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건설교통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권고

4 권고결과

-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주택 재개발 · 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건설교통부, 광역자치단체

권고
번호

제도06-1-1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 도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 개발정책 등으로 주택 재개발 · 재건축 사업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법령의 불명확성과 각종 절차 기준 미비로 인해 사업 참여주체간 갈등과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과 부패로 인한 추가비용이 일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궁극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귀결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사업시행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 필요

1. 자치단체 정비계획수립 기능의 적극적 수행

- 정비계획수립 주체로서 자치단체 역할 및 기능 활성화
 -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계획 공개
 - 자치단체가 기금을 이용하여 정비구역 지정까지 행정업무 전담
-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기회 제공 및 자율적 사업 추진
 - 주민들은 호응도 조사시 의향서 제출 및 정비계획 수립과정에 의견 제시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후 주민들이 구체적 사업추진

2. 사업 초기비용 확보방안 마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확행
 - 법률에 명시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속히 기금 적립 운영
 - 도(道) 단위 자치단체 기금 적립근거 마련



- 정비기금을 통한 주민지원 방식 세분화
 - 법률에 명시된 정비기금의 사용 용도 구체화
 - 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 재원 활용 및 주민제안 소요비용 지원
 - 주민이 부담해야 할 필수 소요자금 용자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 개발 · 보급 확대

3. 참여업체 선정시기 · 기준 · 절차 등 명확화

- 건설회사(시공사 · 공동시행자) 선정관련 기준 등의 구체화
 - 법률상 시기와 다르게 시공사 ‘참여’를 허용한 유권해석 폐지
 - 재개발 공동시행자 선정시 경쟁입찰방법, 낙찰방식 등 구체화
-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관련 특혜소지 차단방안 강구
 - 주민대표회의에서 시공사 추천시 2개이상 복수추천
 - 공공시행자와 추천된 시공사와의 계약방식 경쟁계약으로 개선
- 감정평가업체(재건축) 주민총회 선정 또는 감독관청 위탁
 - 주민총회에서 경쟁방식으로 감정평가업체 선정
 - 재개발과 같이 주민총회 의결을 통하여 감독관청 추천 위탁
- 기타 업체 선정절차의 명확성 제고
 - 각종 업체 선정시 경쟁방식, 수의계약 절차 등에 국가계약법 준용
 - 주민총회 결의를 통해 입찰업무를 감독관청에 대행 의뢰방안 검토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사업능력 강화

- 정비업체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등록기준 강화
 -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과의 업무협약 제도 폐지
 - 부실 정비업자 시장 진입 차단을 위해 최소 시설 확보기준 마련
 - 등록기준 준수여부 관리시스템 구축
 - 도정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시 등록제한 기간 연장
- 시공사관련 업무영역 범위의 명확화
 - 추진위원회와 계약된 정비사업체만 시공사 선정업무 지원

5.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성 강화

- 조합임원 자격요건(결격사유) 및 지도감독 강화
 - 도정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시 장기간 사업 재참여 배제
 - 직무관련 기소된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근거 표준정관에 마련
-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 대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조합 임원의 독단적 의사결정 방지
 - 일반 조합원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조합 운영 견제
 - 조합운영 관련 중요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공개 의무화
- 조합운영관련 분쟁 최소화 방안
 - 조합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표준정관 및 참여업체별 표준계약서 이행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6. 추진위,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사업추진 단계별 교육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이 교육을 담당하며, 조합 임원 등의 교육 참여도 향상방안 강구
 - 교육 희망자 필요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로 교육체계 마련
- 전문교육 외에 부패방지 및 윤리교육도 강화
 -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 중점 교육
 - 참여주체별 특성에 부합되는 각종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7.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각종 참여업체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직무관련 금품수수 처벌시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 확대
 -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공무원 의제 적용
- 주민동의서 매수행위에 대한 치별규정 신설
-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 신설



제2006-185호

도로점용·연결허가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 평가결과 개선 권고안

제110차 전원회의(2006.12.1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도로점용·연결허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분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불명확한 허가기준·복잡한 허가절차로 인한 재량권 남용, 측량설계업자 등 대행업소를 연결고리로 하는 부조리, 부당한 부담금 부과, 사후 관리·감독 소홀 등 허가과정에서의 부패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

2 심의내용

- 도로점용·연결허가도로 관련 재량권 남용사례 및 부패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위원회에서는 측량설계업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허가기준·절차 명확화,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 기준 법제화, 점용료 부과·징수방법 개선, 부당한 부담금 부과 금지, 불법점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

《법령개선권고방안 주요내용》

- ▶ 도로점용·연결허가 기준 및 절차 명확화
- ▶ 기·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기준 마련
- ▶ 신설도로 공사구간내 연결허가 기준 마련
- ▶ 시설물훼손비 등 부당한 부담금 부과금지
- ▶ 점용료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 두명화
- ▶ 불법점용에 대한 부패통제시스템 강화 등 총 25건

* 별첨 : 도로점용·연결허가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 평가결과 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건설교통부에 권고

4 권고결과

-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조치기한 : 2006. 6. 30. 단, 법령개정사항 및 용역이 수반되는 사항은 2006. 12. 31.까지)

5 비 고



도로점용·연결허가에 관한 법령 부폐영 향평가결과 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건설교통부

권고
번호

법령분석관리06-1

도로점용·연결허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분야로 부폐영향평가 실시결과 불명확한 허가기준, 복잡한 허가절차, 점용료 부과·징수의 투명성 결여 등으로 인한 재량권남용 및 부폐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관련법령 및 제도 운영에 대한 부폐영향평가를 실시

- 허가기준·절차 명확화,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 기준 법제화, 신설도로 공사 구간내 연결허가기준 마련, 점용료 부과·징수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하는 것임

개선권고 내용

1. 도로점용·연결허가 절차 명확화

- 「도로법 제54조의6에 의한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처리 조항 신설

<예시>

제2항에 의한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도로점용기간 및 연장절차 구체화



-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주택 진입로 및 공익목적의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기간을 영구로 개선하거나, 기간만료시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허가기간이 자동연장 되도록 개선
- 도로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 마련
 - 연장허가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시기 및 처리기간 등

3. 도로점용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 점용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부지 및 본선 길어깨 부분을 점용면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

4. 기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기준 마련

-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공동사용에 대한 허가기준, 점용료 분담방법 등
 - 동일한 점용구간을 2인 이상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
-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 의무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 현행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의무에 관한 규정을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

5. 부폐통제시스템 강화

- 불법점용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에 대한 절차 및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6. 도로연결허가 및 보완·반려 기준 구체화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 연결허가 금지 구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예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도시 계획사업이 시행중에 있는 도로

-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교차로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 연결허가규칙 제6조 제3항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 도로연결허가에 대한 기술검토서식 및 보완요청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

– 기술검토서식, 보완요청서식, 보완기간, 보완서 제출서식 등

- 건설교통부에서 옹벽·배수공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표준도 개발·보급

- 측량설계사무소 등 업무대행자 실명제 도입 등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 점용허가 신청시 측량·설계 등 업무대행자 및 대행수수료 기재 의무화 등



7. 지방자치단체 도로연결조례 현실화

- 도로연결허가에 따른 변속차로 최소 설치길이를 도시지역과 지방 지역을 구분, 도로의 설계속도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8. 연결로의 설치방법 현실화

-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규칙” [별표2] 연결로 등의 설치 방법 도면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
 - 사업부지 끝에서 진·출입하도록 된 것을 사업부지 중간 지점에서 진·출입하는 것으로 표기
 - 진·출입로의 최소폭에 대한 기준 및 최소 이격거리를 현실에 맞추어 개선

9. 신설도로공사 구간내 연결허가기준 마련

-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도로점용·연결허가 기준 마련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대하여 배수로, 비탈면보호공, 포장공 등 마감 공사 시행전 일정공정에 도달(토공완료시점)했을 때부터 준공시까지 도로점용허가 신청기간을 정하여 인터넷 등에 게재

10.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공사비 정산 철저

-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시설공사비 검토 의무화 규정 마련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시 현재의 시공현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마련(검토서식 등)
 - 도로관리청은 점용허가 신청서류 검토시 시공완료부분에 대하여는 준공조서와 같은 시공완료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미시공 물량에



대하여는 미시공 물량조서를 작성한 후 추후 설계변경시 감액하겠다는 문서를 작성 계약담당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도록 규정(서식) 마련

11. 시설물훼손비 등 부담금 부과기준 구체화

- 도로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에 대한 판단기준을 하위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
- 부담금부과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시설물훼손비 등) 부과 금지

12. 점용료 징수방법 개선

- 도로점용료 일시납입제도 도입
 - 피허가자자로 하여금 도로점용기간의 점용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선
 - 일시납입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점용료 상승분 미반영

<예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부과는 점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 · 징수한다.

13. 점용료 부과 · 통지 절차 투명화

- 도로법 제26조의4 점용료조정에 있어서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규정



- 점용료 부과 통지시 점용료 산정대상 지번, 공시지가, 조정요율 등 산정근거를 함께 통지토록 개선

14.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 도로점용지의 공동사용에 대한 점용료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15. 점용료 면제 및 감면기준 구체화

- 도로점용료 감면여부를 기속행위로 규정

<예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한다.

16. 신설도로 구간의 점용료 징수방법 개선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제3항 제3호에 따른 재해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절차(건설교통부령) 마련
-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점용료 부과 및 감면규정 개선
 - 신설도로 구간의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본 도로공사 준공시까지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 마련



실조사결과 통보사항

- 실태조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 4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해당기관에 통보

① 점용구간의 부당한 공사비 정산 사례(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부당하게 집행한 공사비 78.6백만원에 대하여 환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

② 점용구간의 부당한 공사비 정산 사례(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부당하게 집행한 공사비 3백만원에 대하여 환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

☞ 도로점용구간의 미시공 공사비 17.6백만원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

③ 연결허가 검토 불철저(천안시)

☞ 천안시장에게 향후 도로연결허가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



IV. 法令・例規, 其他

제90차 전원회의(2006. 1. 16.)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2005. 12. 30일자로 제3분과위원장인 김갑배 위원의 사임에 따라 제3분과위원회의 구성요건(3인)을 충족하기 위하여 제3분과위원 1인을 임명하고 공석인 제3분과위원장은 임명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인 김성호 위원을 제3분과위원회 위원에 임명하고, 성해용 상임위원을 제3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함

3 의결결과

- 제3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4 비 고



제2006-10호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중 개정안

제91차 전원회의(2006. 2.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구체화하고, 보호 보상단 설치 등의 실제개정에 따라 단장 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동안 보호사무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반영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주요 골자

- 가. 신분보장조치 요구인이 그 요구사항을 취소하더라도 명백히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위원장에게 결재를 받아 처리하도록 조정(안 제6조)
- 나. 불이익처분 조사와 관련하여 요구인 등의 출석편의를 위하여 요구인·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시 7일전까지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안 제8조)
- 다. 보복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보장조치 요구인 등으로부터 진술서 또는 확인조사 등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 진술청취 보고서를 작성·보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 라. 신고자 보호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요구자의 신청범위를 법령개정사항에 맞추어 구체화(안 제13조)
- 마. 신분보장조치 등의 요구가 타당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던 것을 위원장에게



2 심의내용

- 보고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13조제6항)
- 바. 신분보장조치요구의 불이행시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분보장조치 재요구서를 송부하도록 하던 것을 조치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행촉구로 변경조정(안 제15조)
 - 사. 공직자인 신고자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기관간의 인사교류 이외에도 동일기관의 다른 근무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안 제16조)
 - 아. 신분보장조치 요구관련 조사와 관련한 불응자 및 조치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등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 자. 신고자의 신분공개 및 보도 등과 관련하여 조사확인 및 징계 요청·형사고발 등의 절차 마련(안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
 - 차.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조치 요구시에 보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심사본부장이 반려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23조)
 - 카. 위원회의 직제개정에 의한 보호보상단과 보호팀 설치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각종 별지 서식을 합리적으로 정리(28개 서식 ⇒ 9개 서식)

3 의결결과

-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개정

5 비 고

제91차 전원회의(2006. 2.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가 신설되고, 보상금 신청요건과 지급한도액 및 지급률이 확대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구체화하고, 보호 보상단 설치 등의 직제개정에 따라 단장 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동안 보상사무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반영하고자 함

2 심의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및 지급기준 신설

- (1) 포상금 지급제도 신설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와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의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 (2) 조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유 해당여부, 감액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구제절차 진행여부 등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의3 신설)
- (3) 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한 단계별 한도액 구분과 그와 관련된 지급 유형을 규정하는 등 합리적 지급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의4 및 별표 1 신설)
- (4) 조사기관 등의 추천사유, 조사·확인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포상금 지급관련 의안상정 등의 규정을 둠(안 제6조의 5 신설)



2 심의내용

나.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지급금액 산정 기준을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 (1)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진료·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2) 전직, 전·출입, 과견근무 등으로 인하여 신고자가 거주지 등을 옮기는데 소요된 이사비용
- (3)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
- (4) 실직으로부터 원상회복 또는 취업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요되는 생활비(실직 전 1년 평균급여 기준, 지급기간 3년 이하)

다. 위원회의 직제개정으로 인한 보호보상단과 보상팀 설치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각종 별지 서식을 합리적으로 정리(14개 서식 ⇒ 7개 서식)

3 의결결과

- 신고자 보상 및 포상사무 운영지침 개정

5 비 고



제2006-12호 신고사무 처리지침 종 개정안

제91차 전원회의(2006. 2. 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위원회의 사실 확인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고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번 부패방지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가. 심사관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2조 신설)
- 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목적 · 일시 ·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 다만, 실태조사의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다.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고자 ·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 라. 심사본부장은 신고사항이 영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공공기관 송부”로 분류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토록 함(안 제17조)



2 심의내용

- 마. 심사본부장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에서 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하도록 함(안 제24조)
- 바. 공공기관 송부처리된 신고사항에 대해 부패행위가 확인되어 해당 공공 기관에서 그 결과를 통보해 온 경우에도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31조의 2 신설)
- 사. 신고자 등이 신고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그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48조제2항을 삭제토록 함(안 제48조제2항 삭제)
※ 법제처에서 「신고사무처리지침」의 동조동항이 상위법령(정보 공개법)의 근거없이 부당하게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삭제의견을 제시('05. 8.)한 바 있으며
 -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고사무처리지침 제49조(열람·등사의 제한)를 근거로 열람·신청의 거부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삭제키로 수용하였음 ('05. 9.)
- 아. 신고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고접수·처리 관련 서식증 일부를 보완함(안 제6조, 제41조, 제44조, 제47조, 제50조, 제51조)

3 의결결과

- 신고사무 처리지침 개정

4 비 고



제2006-14호 상근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제92차 전원회의(2006. 2. 20.)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정책개발·제도개선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채용공고에 의한 응시자 중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신원조회를 통하여 선발한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함

2 심의내용

- 2006년도 상근 전문위원 2인을 다음과 같이 위촉함
 - ▶ 정책분야 (위촉기간 2006. 3월 ~ 12월)
 - 이정주(서울 시립대 행정학박사) : 정책총괄팀
 - * ‘온정주의 문화 전문 연구지원’
 - ▶ 제도개선 분야 (위촉기간 2006. 3월 ~ 12월)
 - 윤효석(명지대 토목공학박사) : 제도2팀
 - * ‘건설 · 건축분야 전문 연구지원’

3 의결결과

- 상근 전문위원 위촉

4 비 고



제2006-28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등 일부 개정예규(안)

제93차 전원회의(2006. 3. 6.)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개정(법률 제7612호, 2005. 7. 21. 공포)에 따라 신설된 부패행위를 소관 예규에 반영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며, 국가청렴위원회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9340호, 2006. 2. 10. 공포)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 소관 예규 중 사무처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을 개정된 직제에 맞게 변경함

2 심의내용

- 다음의 위원회 소관 예규 중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의 내용 반영, 사무처 하부조직 명칭 변경 등 정비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 국가청렴위원회 운영세칙

3 의결결과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등 일부개정 예규안 의결

4 비 고



제2006-29호

국가청렴위원회 법령업무 처리규정 등 일부 개정훈령(안)

제93차 전원회의(2006. 3. 6.)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국가청렴위원회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9340호, 2006.2.10 공포)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 소관 훈령 중 사무처에 두는 하부 조직의 명칭을 개정된 직제에 맞게 변경하며, 「국가청렴위원회 파견공무원증 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그 내용은 「국가청렴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심의내용

- 다음의 위원회 소관 훈령 중의 사무처 하부조직 명칭 변경 및 정비
 - 국가청렴위원회 법령업무 처리규정
 - 국가청렴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국가청렴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규정
 - 국가청렴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 국가청렴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 국가청렴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국가청렴위원회 감사규정
 -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에 관한 지침

3 의결결과

- 국가청렴위원회 법령업무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안 의결

4 비 고



제2006-30호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 등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중 개정(안)

제93차 전원회의(2006. 3. 6.)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제11조제10호의 신설과 공무원행동강령 및 위원회
직제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심의내용

● 주요골자

- 가.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 등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 등 행동강령”으로 명칭을 변경
- 나. 제2조(정의) 제1호 본문 내용 중 “각호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변경(안 제2조)
- 다. 제5조 제3항 본문내용 중 “공무원행동강령”을 “공무원행동
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공무원행동
강령에 추가된 상급자의 부당한 반복지시에 대한 징계근거
반영(안 제5조 제5항 후단 신설)
- 라. 알선 · 청탁 금지대상 직무관련자에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공직자를 추가(안 제15조)
- 마.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을 간명화 (안 제20조)
- 바. 제28조 제1항 본문내용 중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
강령”이라 한다)”을 “행동강령”으로 변경(안 제28조)
- 사.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등의 반환 대상을 확대
(안 제34조)
- 아.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에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 조사처리
기능을 추가(안 제36조)
- 자. 위원회의 직제개정으로 “신고심사국장”을 “심사본부장”으로
(안 제31조), “법무감사담당관”을 “법무감사팀장”으로
(안 제36조) 변경

3 의결결과

-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 등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

5 비 고



제2006-31호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안)

제93차 전원회의(2006. 3. 6.)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개정(2005. 7. 21. 공포 · 시행)으로 동법 제11조 제8호 및 제20조의2 “법령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업무가 우리 위원회의 기능으로 신설되고,
- 「부패방지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이 신설(2005. 12. 30. 공포 · 시행)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심의내용

가.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 국가청렴위원회가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법령등의 제 · 개정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작성 · 제출

나. 평가 대상

- 부패영향평가는 법령(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행정 규칙(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등), 자치법규(조례 · 규칙)를 대상으로 하되
- 대국민적 효과가 있는 업무 · 제도,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업무 · 제도 등은 중점평가

다. 평가절차

-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 소관기관은 법령의 제 · 개정시 그 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중점평가 대상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를 작성 · 제출
 - 청렴위는 관계기관협의 · 입법예고단계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



2 심의내용

● 기존 법령에 대한 평가

- 각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관별 평가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수립
 - 각 기관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청렴위는 이를 토대로 평가하여 개선 추진
- ※ 행정규칙은 당분간 별도로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삼지 않고 법령등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 등을 연계하여 일괄 평가할 예정

● 조례·규칙에 대한 평가

- 각 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렴위에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청렴위는 자치단체가 요청한 사항 및 현행 자치법규에 대해 직접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라. 기초자료 작성 일반지침

-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재량의 적정성(공급), 준수의 용이성(수요), 행정절차의 투명성(절차) 등으로 구분, 9개 평가항목에 따라 작성
- 제·개정 법령은 평가항목별로 제·개정 내용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현행 법령은 평가대상 법령뿐만 아니라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행정규칙을 연계하여 일괄 작성

3 의결결과

●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제정

5 비 고



제2006-42호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안)

제94차 전원회의(2006. 3. 20.)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골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공직윤리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의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

2 심의내용

-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5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근거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으로 권고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고,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 보고하도록 함
- 직무관련자와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를 금지

3 의결결과

-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의결

4 비 고



제95차 전원회의(2006. 4. 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중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법령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기관으로 추가되는 공직유관단체가 원활하게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제정형식**

이사회 등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관·단체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침 등으로 제정·시행

● 필수요소 25개항 반영

‘알선·청탁 금지’ 등 『필수요소 25개항』을 반드시 반영

● 제명 및 목적 변경

명칭을 『○○○임직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윤리강령)』에서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간결하게 변경하고, 제1조(목적)에 부패방지법 제8조가 근거규정임을 명시



2 심의내용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징계 근거 추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반복하여 내린 상급자에 대한 임의적 징계 근거 마련

● 알선·청탁 금지 대상 확대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추가

● 위반행위 신고 접수 기관 확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기관으로『국가청렴위원회』를 추가

● 금품등의 반환 및 처리절차 세부기준 마련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도 금품등의 신고대상에 추가하고, 신고 금품등의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등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제시

3 의결결과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개정 지침」의결

4 비 고



제2006-47호 상근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제95차 전원회의(2006. 4. 3.)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교육·홍보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채용공고에 의한 응시자 중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신원 조회를 통하여 선발한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함

2 심의내용

- 2006년도 상근 전문위원 1인을 다음과 같이 위촉함
 - ▶ 교육·홍보분야 (위촉기간 9개월 : 2006. 4월 ~ 12월)
 - 홍금희(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교육홍보팀
 - *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3 의결결과

- 상근 전문위원 위촉

4 비 고



제96차 전원회의(2006. 4. 17.)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위촉 요청한 전문가를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함

2 심의내용

- 다음과 같이 6개 분야 총 17명을 전문으로 위촉함
 - ▶ 제도개선분야(11명) : 6개월 ('06. 4월~9월)
 - 윤홍근(서울산업대), 유재원(한양대), 전연규(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김종보(중앙대), 김태일(고려대), 설광언(한국개발연구원), 여영현(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원희(환경대), 김준기(서울대), 최진우(고려대), 김완희(경원대)
 - ▶ 교육홍보분야(1명) : 9개월 ('06. 4월~12월)
 - 조은경(건교부 청렴도향상기획단)
 - ▶ 민간협력분야(2명) : 9개월 ('06. 4월~12월)
 - 박준식(한림대) 송인경(에코프론티어)
 - ▶ 국제협력팀(1명) : 9개월 ('06. 4월~12월)
 - 김대우(산업연구원)
 - ▶ 신고심사분야(2명) : 9개월 ('06. 4월~12월)
 - 윤종설(한국행정연구원), 이지문(한국부패학회)

3 의결결과

- 전문위원 위촉

4 비 고



제2006-53호

분과위원장 임면과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건

제96차 전원회의(2006. 4. 17.)

운영지원팀

1 의안개요

- 2006. 3. 2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조수정 (전)위원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2006. 4. 11.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박선영 위원에 대하여 소속 분과위원회를 정하고,
- 2005. 12. 30. 제3분과위원장인 김갑배 위원의 사임에 따라 제3분과 위원회 위원인 성해용 위원이 제3분과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바, 상임위원은 분과위원장직을 수행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제3분과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면하기 위한 것임

2 심의내용

- 전문성의 원칙과 위원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 ▶ 제2분과위원회(사회·문화분야)
 - 위원장: 박인제 위원
 - 위원: 성해용 위원, 박선영 위원
 - ▶ 제3분과위원회(경제분야)
 - 위원장: 소순무 위원
 - 위원: 김성호 사무처장, 성해용 위원
- ※ 김성호 사무처장은 국회추천 위원 위촉시까지 겸임

3 의결결과

-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4 비 고



제2006-13호 행동강령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안

제97차 전원회의(2006. 5. 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의 개정(2005. 7. 21.)으로 “공직자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업무가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에 추가되고,
- 「부패방지법 시행령」의 개정(2005. 12. 30.)으로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접수·처리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신고 등의 접수
 - 신고서식, 접수절차, 신고기록 관리, 출장신고 접수 방법 등
-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 주심위원 지정, 신고의 취소 및 보완, 자료·출석 및 진술 요구 절차 등
 - 확인 조사 후 처리의견 제시 기준
 - 위원회 상정 대상
 - 신고자 신분보호,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등
- 신고기록의 보존
 - 보존기간, 보존절차 등
- 신고기록의 열람·등사 등
 - 열람·등사 신청 절차, 열람·등사의 제한, 열람·등사의 방법 등

3 의결결과

- 「행동강령 신고사무 처리지침」의결

4 비 고



제2006-73호 분과위원회 위원 임면에 관한 건

제98차 전원회의(2006. 5. 15.)

운영지원팀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인 김성호 위원을 제3분과위원회 위원직에서 면하고 신광영 위원을 제3분과위원회 위원에 임명함

2 심의내용

- 2005. 12. 30. 김갑배 위원의 사임에 따라 제3분과위원회의 구성요건(3인)을 충족하기 위하여 제1분과위원회 위원인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김성호 위원이 제3분과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바,
- 2006. 5. 9. 신임 신광영 위원이 위촉되었으므로 사무처장의 업무 등을 감안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김성호 위원을 제3분과위원회 위원의 직에서 면하고,

신임 신광영 위원을 제3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임

3 의결결과

- 제3분과위원회 위원 임면

4 비 고



제2006-80호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안)

제98차 전원회의(2006. 5. 15.)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2006. 4. 3.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시행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의결 '06. 3. 20)에 따라 우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지침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주요골자

- 가. 공무원인 위원회 소속직원과 파견직원에게 적용(안 제2조)
- 나. 위원회 소속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를 직무관련자로 정의(안 제3조)
- 다. 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 수행 이외에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 신고(안 제4조)
- 라. 위원회 소속직원의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금지(안 제5조)
- 마. 이 지침의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 제29조, 제33조를 준용(안 제6조)

3 의결결과

-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4 비 고



제99차 전원회의(2006. 6. 5.)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한 국가청렴위원회의 2007년도 사업수행 소요 예산을 국가청렴위원회운영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심의 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국가청렴위원회의 2007년도 예산요구(안)은 총 228억 원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제시한 인건비,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작성
 - 인건비 10,266백만원, 기본사업비 6,463백만원, 주요사업비 6,110백 만원임

3 의결결과

- 2007년도 국가청렴위원회 예산요구(안) 의결

4 비 고



제99차 전원회의(2006. 6. 5.)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국가청렴위원회에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해당 위원을 재위촉 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보상심의위원회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1인)
 - 동 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여 보여준 열의와 업무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향후 원활한 보상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임.(위촉기간 : '04. 5. 17. ~ '06. 5. 16.)

▶ 재위촉 대상자
 - 김범두(55세) : 감정평가사(한국감정원)

3 의결결과

- 보상심의위원회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

4 비 고

제2006-114호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안)

제102차 전원회의(2006. 7. 24.)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공공기관별 부패실태 및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각 기관의 자율적인 업무 및 제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부패방지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자 함

2 심의내용

<주요 골자>

가. 대민·대관업무 청렴도 측정

■ 측정대상기관 : 304개 기관

- 대 국민·대 기관 업무 비중이 높은 행정기관 : 264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는 대민업무 비중·성격, 조직·예산 규모, 부패 사례 등을 참고 하여 '05년도 대비 5개 기관 추가 : 40개 기관

■ 측정대상 업무

- 측정업무 : 공공기관의 대 국민·대 기관 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를 선정
- 측정제외 업무
 - 단순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업무상담, 단순 질의회신, 증명서 발급 등)
 - 이의신청 등 단순 고충 민원업무
 - 단순한 요식행위에 의해서 종료되거나, 민원인과의 업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전자공시, 인터넷 민원업무 등)
 - 기타 처리건수가 적어 전화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
- 조사표본을 감안하여 기관별 10개 이내로 제한



2 심의내용

■ 측정모형

- 평가항목 :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측정을 위한 11개 항목으로 구성
 - 체감청렴도 : 금품 · 향응 제공 빈도 · 규모, 부패인식(3개)
 - 잠재청렴도 : 정보공개, 관행화, 이의제기 용이성 등(8개)
- 평가항목별 가중치
 - 산출방식 : 멜파이, AHP, 고정총합척도법 등 적용

나. 내부업무 청렴도 측정

■ 측정대상기관 : 93개 기관

- 부패방지법 제2조상의 공공기관을 측정대상기관으로 하되,
- 시행 초년도인 금년은 기용예산을 고려하여, 부패방지시책 평가 대상기관(93개)에 한해서만 실시

■ 측정대상 업무

-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인사, 예산집행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 승진 · 전보 등 소속직원 인사 관련 부패
 - 부서(과) 운영비 · 여비 ·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부당사용
 - 상급자가 부당이득 도모를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행위,
 - 골프장 · 콘도 예약 등 개인 이익 · 편의를 위한 청탁 · 압력 지시행위 등

■ 측정모형

- 대민 · 대관업무 청렴도 측정모형을 준용하되, 가중치는 등 비중으로 실시
 - 체감청렴도 : 금품 · 향응 제공빈도 · 규모, 부패인식(3개)
 - 잠재청렴도 : 정보공개, 관행화, 이의제기 용이성 등(8개)

3 의결결과

● 청렴도 측정계획안 확정

4 비 고



제2006-115호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제102차 전원회의(2006. 7. 24.)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위촉 요청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함

2 심의내용

- 1개 분야 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함
 - ▶ 교육·홍보분야(1인)
 - 이상수(39세) :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겸임교수(행정학 박사)

3 의결결과

- 전문위원 위촉

4 비 고



제2006-124호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 제정(안)

제103차 전원회의(2006. 8. 21.)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2005. 7. 21. 법률 제7612호) 및 「부패방지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의 개정으로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가 우리 위원회의 기능으로 신설됨에 따라 동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평가를 위한 일련의 실무절차 및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규정안은 이미 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간 시행해 온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의 내용을 조문화하는 것임

2 심의내용

〈주요 골자〉

- 가. 부패영향평가의 정의, 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부패방지법령 등에 기초하여 실무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내지 제4조)
- 나. 부패영향평가의 업무처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
 -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 가) 소관기관에서 평가를 의뢰하면 팀별로 담당 문서를 접수하고, 소관기관을 전담하는 직원이 해당 법령안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나) 평가담당자는 제출자료가 누락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소관기관에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검토한 후에는 세부평가서 및 조문별 기초평가서를 작성하며, 평가는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마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2 심의내용

- 다) 전문적 · 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자문 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고, 개선의견 통보시 소관기관과 협의를 거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 라) 개선의견 등을 통보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되,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개선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중요사항인 경우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 및 통보를 위한 결재절차를 정함(안 제10조)
- 마) 소관기관이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검토고려사항, 평가의 공정성을 위한 담당자 재선정, 결재절차 등을 정함(안 제11조)

(2)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 가) 위원회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를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하는 등 일련의 계획수립절차를 마련함(안 제12조)
- 나) 평가담당자는 현행 법령을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평가에 관련된 자료 ·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또한 자료 · 서류에 대한 문현조사 등의 예비 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다) 개선권고안 초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를 거치되, 중요 사항인 경우 공청회 ·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기관과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2 심의내용

(3)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 가)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매년 반기별로 당해 반기에 발령한 행정규칙을 당해 반기 종료후 14일 이내에 제출받아 검토한 후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등 필요한 경우 평가를 실시 하되, 현행법령의 평가방식에 의하도록 함(안 제18조)
- 나) 위원회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요청이 있는 경우 제·개정 법령안 또는 현행법령의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 평가업무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사항

- (1) 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자 중에서 관련기관·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기구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20조)
- (2)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에 의하도록 하고, 의견을 통보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자문방식 및 자문수당에 대하여 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3) 평가관련문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 평가업무에의 활용을 위한 부패실태자료의 수집·관리 및 부패영향평가 종합자료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내지 제27조)

3 의결결과

●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 제정

4 비 고



제2006-137호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건

제106차 전원회의(2006. 10. 16.)

운영지원팀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과위원회에 장태평 위원을 제1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임

2 심의내용

- 2006. 10. 2. 국가청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고 동일자로 사무처장으로 지명된 장태평 위원에 대하여 헌법기관과 정치·일반행정분야(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를 포함)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제1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의결함

3 의결결과

- 제1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4 비 고



제2006-138호 제3기 부패방지 정책자문단 위원 선정

제106차 전원회의(2006. 10. 16.)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어 온 제2기 정책자문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정책자문단을 새로이 구성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다음과 같이 14명을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함
 - 강석진 : CEO컨설팅그룹회장, 전 GE회장
 - 김상근 : 한국투명성기구회장, 전 대한기독교서회 사장
 - 김상훈 : 한국 CFO협회회장, 전 국민은행장
 - 김일수 : 고려대 법대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회장
 - 서생현 : 전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 신연숙 : 한국 여기자협회 회장, 서울신문 논설위원
 - 신인령 : 삼성 고른기회장학재단이사장, 전 이화여대 총장
 - 이병훈 : 용인대 연극영화과 교수,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이주향 : 수원대 철학과 교수, 한국영상문화학회 회원
 - 이진강 :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인요한 : 연대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 장명국 : 내일신문 대표이사, 전 YTN 대표이사 사장
 - 정귀호 : 변호사, 전 대법원 대법관
 - 조건호 : 전경련 상근 부회장, 전 과기부 차관

3 의결결과

- 전문위원 위촉

4 비 고



제2006-139호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제106차 전원회의(2006. 10. 16.)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위촉 요청한 전문가를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함

2 심의내용

- 2006년도 전문위원으로 기 위촉한 바 있는 아래 3인에 대하여 제도개선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위촉 하고자 함
 - ▶ 정치 및 행정분야(1인)
 - 윤홍근(49세,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 ▶ 지방·지역 개발(2인)
 - 전연규(52세, 한국도시개발연구 포럼 공동대표)
 - 김종보(42세, 중앙대 법학과 교수)
- 전문위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위촉기간은 다음과 같음
 - 위촉기간 : '06. 10. 16. ~ 12. 31.

3 의결결과

- 전문위원 위촉

4 비 고



제2006-140호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

제106차 전원회의(2006. 10. 16.)

보호보상단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두는 보상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태평 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것임

2 심의내용

- 부패방지법 제37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두는 보상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겸임하였던 김성호 前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이 2006. 8. 22.자로 직을 면함에 따라 공석이 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장태평 위원을 임명하기로 의결함

3 의결결과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임명

4 비 고



제2006-170호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임

제108차 전원회의(2006. 11. 20.)

보호보상단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어 활동중인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4인중 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의 임기가 2006. 12. 4.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로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임

2 심의내용

- 아래 3인을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 ▶ 법률전문가
 - 이선숙 (40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 회계전문가
 - 이기화 (47세, 다산회계법인 대표이사)
- ▶ 비영리단체 추천
 - 권해수 (47세,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위촉직 위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위촉기간은 다음과 같음
 - 위촉기간 : '06. 12. 5. ~ '08. 12. 4.

3 의결결과

-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임

4 비 고



제110차 전원회의(2006. 12. 18.)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2003. 2. 18. 「공무원행동강령」이 제정 · 공포된 이후 행동강령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시달한 각종 지침과 권고사항을 통합하여 조문식으로 정리하고,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제시하는 등 행동강령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예규로 정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주요골자

- 가.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시 중앙행정기관은 부령 또는 훈령, 지방자치 단체는 규칙, 교육자치단체는 교육규칙, 공직유관단체는 사규로 제정 하여야 함.(안 제4조)
- 나.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행동강령」 또는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안 제7조)
- 다.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함.(안 제10조)
- 라.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또는 「공직유관단체 행동 강령 표준안」 제15조에서 규정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허용되는 금전 · 부동산 · 선물 또는 향응의 범위를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공직자가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요건이 충족된 시점에 해당 월의 외부강의등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고, 예측이 가능한 경우 사전에 일괄신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바. 공공기관의 장은 경조사 관련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2 심의내용

-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안 제14조)
- 사.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되,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항)
- 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된 금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처분, 세입조치, 공익 단체 등에 기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 자.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 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
- 차.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21조)
- 카. 공공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토록 함.(안 제22조)
- 타. 공공기관의 장은 상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7월말까지, 하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4조)
- 파.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함.(안 제25조)

3 의결결과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전부 개정(안)

4 비 고



제2006-200호 상근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제110차 전원회의(2006. 12. 18.)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정책개발·제도개선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2006년 상근 전문위원으로 기위촉한 전문가를 소관부서에서 계속 활용하고자 재위촉하기로 함

2 심의내용

- 2006년도 상근 전문위원으로 기위촉한 바 있는 아래 2인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교육홍분야의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위촉 하고자 함
 - ▶ 제도개선분야(1인)
 - 윤효석(39세, 대림대학 토목환경과 겸임교수)
 - ▶ 교육홍보분야(1인)
 - 홍금희(28세, 주 크레듀 주임)
- 전문위원은 상근으로 근무하며 위촉기간은 다음과 같음
 - 위촉기간 : '07. 1. 31. ~ 12. 31.

3 의결결과

- 상근전문위원 위촉

4 비 고



第2節

分科委員會 議決事項

I. 申告事件

II. 申告者 保護

I. 申告事件

분과2006-1호

검찰공무원 금품수수 비리 등 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분과위원회(2006. 1. 5.)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이의신청인은 제2005-111호「검찰공무원 금품수수 비리 등」건의 신고자인 바,
 - 위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 이의신청 내용은 일부 금품수수 부분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입건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건은 검찰직원의 사건청탁 뇌물수수이므로 실체를 재조사하여 줄 것과, 피내사자 및 ○○○ 검찰주사보의 비위사실 통보는 계획적으로 사건 조작하여 사법처리한 직권 남용임으로 이를 재조사를 요구

2 의결이유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없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함이 상당

3 의결결과

- 이의신청 기각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111호(2005. 9. 5.) 「검찰공무원 금품수수
비리 등」



분과2006-2호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6. 1. 16.)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인 바,
- ○○○ 유홍업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99년 현금 200만 원을 수수, 같은 해 8월 경 신고외 ○○○에게 60만 원 등 도합 금26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 피신고자가 ○○세무서 복귀 후 '05. 6.경에도 ○○○ 등 유홍업주로부터 세금조사 편의 대가로 향응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구체적인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해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국세청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전보조치 : 검찰청에서 150만원 수수 사실 확인,
국세청에 국가공무원법(청렴의무) 위반으로 통보되었으나, 징계시효(3년) 도과
※ 통보일자 : 2006. 4.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6-3호 공직유관단체 간부의 금품수수

제1분과위원회(2006. 1. 16.)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근무하는 자인 바,
 - 위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 9월 말경 (주)○○○의 신용보증 대출금 2억 4천5백6십5만 원에 대한 보증 만기기간을 1년 연장 해주면서 그 대가로 100만 원 상당의 성인병 건강약품 3박스를 받은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구체적인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해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신용보증기금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고 1명

※ 통보일자 : 2006. 3. 1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6-4호

구청보상금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 의혹 건의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분과위원회(2006. 1. 16.)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이의신청인은 분과2005-75호「보상금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 의혹」건의 신고자인 바,
 - 위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불이첩을 의결함
 - 이의신청 내용은 평가서에는 도로로 평가되었음에도 대지가격으로 지불한 점, ○○위원회에서 평가기관으로 평가 의뢰할 때 의뢰서 비고란에 도로가 아닌 경우 별도로 평가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어 사전에 ○○위원회와 평가기관이 도로를 대지로 보상하기 위하여 서로 공모한 의심이 있고, 시보와 관보에 이용 상황이 대지가 아닌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도 잡종지와 대지가격으로 보상함은 관계공무원들의 비리 의심이 다분히 있어 재의결을 요구함

2 의결이유

- 불이첩(종결)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등의 제시없이 재의결을 요구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함이 상당

3 의결결과

- 이의신청 기각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5-75호(2005. 12. 19.) 「보상금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 의혹」



분과2006-5호 국립대학교 교수의 비리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6. 1. 16.)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 ○○○학부 교수인 바,
 - 대학원생 및 대학생들의 프로그램 설계 등을 위해 ○○○ 계약에 의해 2003. 6. 경 ○○개발 장비들(시가 1,139만 원)을 납품받아 2006. 1.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면서,
 - 피신고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처리기술을 공동개발 한다는 명목하에 출납장부기록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2003. 8. 중순경 7일간, 2004. 11. 하순경 5일간, 2005. 7. 하순경 10일간, 기타 5회 3일간씩 도합 8회 37일 간 무단 반출하여 ○○○에게 장비 대여가격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진술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주의조치(장비관리 위반 혐의 인정)

- 관련자 ○○○장비 대부료 62,300원 회수

※ 통보일자 : 2006. 3.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6-6호 국립병원 납품 관련 비리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6. 1. 16.)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대표로 근무하는 자인 바,
 - 2004. 11. 경 국립병원에서 실시한 연구기기 13대의 구매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같은달 국립병원과 연구기기 13대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해 12. 경 위와 같은 물건 20대에 대하여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후 2005. 2. 경 13대, 같은해 4. 경 20대를 각각 납품하면서 입찰공고 규격 및 계약서 규격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부속품을 부착하지 않고 납품한 후 검수를 마쳐 도합 33,000,000원 상당의 공공 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정계 1명, 원상회복 조치(미부착 부속품33개 부착 완료)

※ 통보일자 : 2006. 3.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6-159호(2006. 11. 6.) 「국립병원 납품 관련 비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3분과위원회(2006. 2. 3.)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인 바,
- 2005. 5. 경 피신고자들과 ○○의료원 등 5개 병원에서는 과기부
에서 공모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선정 받기위해 장비보유
현황 서류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고 선정 받은 후, 1개 병원에
약 2,500만원씩 도합 1억2,500만 원 상당의 국고를 부당하게
지원받아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시키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 관계기관 제출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진료기관을 부당하게 선정하고 국고를 지원받아 사용한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과학기술부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보직해임 및 감봉2개월, 4,323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06. 5.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분과위원회(2006. 2. 6.)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1999. 2. 경부터 ○○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 직무와 관련하여 2001. 경부터 2006. 1. 경까지 사이에 ○○시 소재 안과 원장과 ○○시 의사회 총무에게 8회의 금품을 요구하였고 그 중 6회에 걸쳐 금1,130만 원 상당을 수수한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기소의견으로 송치(790만 원 수뢰)

- 전○○시장은 추가입건(피신고자로부터 500만 원 수뢰)
※ 통보일자 : 2006. 4.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3분과위원회(2006. 2. 16.)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사인 바,
 - 2005. 6. 경 ○○시 공동주택용지 중 ○필지에 대해 1순위자로 분양신청 후 당첨된 ○○(주)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회사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요건과 주택법상 시공능력자 요건 중 전문기술자를 기준 숫자만큼 보유하지 못하여 1순위자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1순위로 입찰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의 진술,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감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신고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전문기술자의 일시적 부족행위가 낙찰사유를 번복할 만한 중대사유가 아닌 것으로 결론

※ 통보일자 : 2006. 3. 21.

위원회 검토의견 – 감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1분과위원회(2006. 2. 20.)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공기관에서 공의요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었고, 현재는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 2005. 11. 경 공공기관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공고에 응시자격을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인 자'로 제한되어 있어 다른 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응시가 어렵게 되자 시험 공고일 이후 ○○시 ○○면사무소로 찾아가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시험 공고일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만들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후 전입일자가 허위로 작성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서류제출 후 시험에 응시를 하여 기능직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소속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 충청북도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1명 임용취소 · 불구속기소(벌금 70만 원), 1명 중징계

※ 통보일자 : 2006. 11.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1분과위원회(2006. 2. 20.)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경기연맹 전무이사 겸 사무국장인 바,
 - ○○시와 ○○공사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보관·집행하며 심판비, 강화훈련비, 훈련용품비, 대회경비 등을 부풀리거나 지출한 것처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후 23회에 걸쳐 54,894,860원을 임의 사용, 횡령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 제출서류 및 관련 증거서류 등을 비추어 보아 신고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1명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27,512,500원 횡령 혐의), 별금 300만 원

※ 통보일자 : 2006. 9.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6-24호

산업재해 장해보상연금 등 부당수령 의혹 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분과위원회(2006. 2. 20.)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이의신청인은 제2005-108호 「산업재해 장해보상연금 등 부당수령 의혹」건의 신고자인 바,
 - 위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 이의신청 내용은 조사기관에서 조사시 고려된 사실이며 조사에 따른 조치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협의가 없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

2 의결이유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협의가 없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함이 상당

3 의결결과

- 이의신청 기각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108호(2005. 8. 22.) 「산업재해 장해보상연금 등 부당 수령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6. 3. 20.)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 소재 ○○의료원 소속 원무과장 등으로 재직 하였던 자들인 바,
- 2003. 11. 경부터 2005. 6. 경까지 ○○지방 의료원 등 6개 의료원 담당자들과 함께 「지방의료원 단일공사화 추진기획단」에 근무하면서 국내 여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숙박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개인당 약 800 ~ 1,000만 원씩 도합 4,400만 원 상당의 출장비를 과다지급 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져 감독기관의 적절한 조치와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의 환수가 요구됨

3 의결결과

- 경기도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2명 징계(건책 1명, 훈계 1명), 4,495만 원 환수조치

※ 통보일자 : 2006. 6. 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3분과위원회(2006. 3. 20.)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농림과소속 지방농업주사보인 바,
 - 2004. 10.경 한달간 진행된 ○○시 농림과에서 운영 지원하는 인터넷직거래장터 플러스팜 축하이벤트인 인터넷주소 맞추기 퀴즈행사에 피신고자의 친 · 인척들을 당첨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시청에서 명절선물로 발송하는 명단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명단을 끼워 넣은 후 국고로 결재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액 8,181,350원 상당의 경품을 부당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공공기관의 재산을 낭비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수사 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5,817,500원 횡령 등)

※ 통보일자 : 2006. 11. 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분과위원회(2006. 4. 3.)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사와 부품 납품계약을 맺고 개폐기접속재 등 기자재를 매년 200억 원 상당을 납품하는 업체인 바,
 -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수입하기로 한 일부 품목을 국내에서 자체 제작하고, 변압기접속재의 경우 완제품을 수입한 후 납품 원가를 이중으로 계상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5년간 약 8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일부 인정되므로 감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사에 부당이득금 5억1,800만 원 환수조치 하도록 통보

※ 통보일자 : 2006. 12.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분과위원회(2006. 4. 7.)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전별금은 사적 유무를 떠나 지급할 수 없으나 지급한 구체적 내용이 있음에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함.

※ 신고사건 개요

- 피신고자는 ○○시내 소재 중학교 등 ○○개 국·공립중학교 교장으로서, 경조사비 및 전별금 등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직책업무 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3,807건 금 117,290,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 조사결과

- 피신고자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 대해 상기의 신고내용과 같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내용”, “재심의 청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했다고 할 수 없는 등으로 혐의없음

2 의결이유

-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조사를 요구하고자 함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조사 요구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1,280천 원 회수, 관련자 훈계처분
 ※ 통보일자 : 2006. 8. 3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관련의안 – 분과 2005-105호('05. 12. 19.) 「국·공립 중학교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제1분과위원회(2006. 4. 17.)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심사업무를 하던 자인 바,
 - ○○○ 업체가 국외 업체의 비디오물(DVD)을 수입 한 것처럼 판권소유 인증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등급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국내 판매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해주고 등급심의를 허가해주었으며
 - 관련 업체에게는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해 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액수미상의 금품을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증거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 등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및 관련업체 대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
(혐의인정)

※ 통보일자 : 2006. 9.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분과위원회(2006. 4 17.)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시민단체 회장인 바,
 - 피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처에 대하여 확인한 바, 피신고자와 알고 지내는 자에게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계좌이체를 한 이후 1,750만 원을 되돌려 받고, 봉사요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는 신고자의 처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여 봉사요원 활동비 1,440만 원을 횡령하는 등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31,123,000원 횡령), 동액 환수조치

※ 통보일자 : 2006. 11. 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1분과위원회(2006. 5. 1.)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건설산업(주)인 바,
- 지방산업단지 내 ○○교 등의 공사를 하며 설계도에는 합판거푸집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용이 저렴한 유로폼(철재 거푸집) 공법을 사용하고, ○○농공단지에 세륜기를 설치한 일이 없었음에도 설계도에 반영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감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신고사건 조사시 피신고자의 3,100만 원 자진감액 등으로 불문처리

※ 통보일자 : 2006. 11.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

5 비 고

분과2006-46호

배수펌프장 밸브설치 예산낭비 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분과위원회(2006. 5. 1.)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이의신청인은 제2005-53호 「배수펌프장 밸브설치 예산낭비」 건의 신고자인 바,
 - 위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 이의신청 내용은 조사기관에서 조사시 고려된 사실이며 조사에 따른 조치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없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

2 의결이유

- 재조사를 요구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없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상당

3 의결결과

- 이의신청 기각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53호 ('05. 5. 9.) 「배수펌프장 밸브설치 예산
낭비」



제2분과위원회(2006. 5. 1.)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1994년경부터 구립 어린이집 원장인 바,
 - 2001. 3. 경부터 2005. 11. 경 까지 총 57회에 걸쳐 행정실 근무요원을 보육교사로 속여 보육교사인건비 보조금 86,910,550원, 정상아동을 장애아로 속여 총 9회에 걸쳐 장애 아동 보육료 2,691,000원 등을 총 66회에 걸쳐 국고 보조금 89,601,550원 상당을 ○○구청에 허위로 청구하여 횡령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확보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부패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와 어린이집 운영주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국고 보조금 86,910,550원 상당을 인건비로 부정 수급, 관리감독 소홀)
※ 통보일자 : 2006. 6.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분과위원회(2006. 5. 1.)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소방서 방호예방과에 근무하는 소방·방화시설 완비 담당자인 바,
- 관내 다중이용업소 순회 준공검사를 할 당시 2002. 11. 초순경부터 2003. 2. 경까지 ○○동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소방점검을 하면서 사업주들로부터 합격판정 대가로 금500만 원과, 단란주점 16개 업소를 점검하면서 사업주들로부터 30만 원~ 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소속기관에 비위사실 통보(피신고자가 완공검사 대가로 300만원 아닌 30만원 수리 혐의 인정)

※ 통보일자 : 2006. 7. 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3분과위원회(2006. 5. 1.)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前 ○○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인 바,
- 개최하지도 않은 “2005학년도 1학기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임원단 MT 행사”에 기성회비 예산 중 4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정대학원에 제출하고, 2005. 2. 경 동 대학원 으로부터 피신고자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 받아 횡령한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행정대학원장 징계요구, 그 외 3명에 대해 경고
- 학생회비 예산집행 개선방안마련토록 통보
 - 부당지출 4,500,000원 회수토록 통보
- ※ 통보일자 : 2006. 6.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3분과위원회(2006. 5. 1.)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방송사 및 영화구입을 대행하는 ○○○(주)의 전현직 간부들인 바,
- 방송권료에 세금 등 비용이 포함된 영화구입계약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방송권료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1993.~2000.경 외국영화배급사들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영화를 구입하면서 원천징수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법인세를 대납한 뒤, 방송사에게 방송권료 이외에 아무런 청구권원도 없이 법인세 대납금을 청구·수령하여 방송사로 하여금 약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부패행위를 하였고,
- 또한 방송사에서 ○○○(주)를 통해서 국내 영화배급사들로부터 영화를 구입할 시, 한 편당 500만원에 불과한 영화를 7~8천만 원에 고가로 매입해 주는 수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 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처분(업무상 부주의로 외국영화배급사에 법인세를 과다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키 어려움, 금품수수사실은 증거가 불충분)

※ 통보일자 : 2006. 12.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위원회에서 신고내용을 이첩함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외국영화배급사에 대한 법인세 과다 지급 사례가 시정되는 효과를 거둠

5 비 고

제1분과위원회(2006. 5. 15.)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환경미화타운」의 위탁관리용역회사를 운영하는 자인 바,
- 2005. 1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환경미화타운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1억4,000만 원 상당의 용역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고,
- 매일 수거되는 폐지, 고철 등 재활용품의 판매 수입금을 허위로 낮추어 기록하고 빼돌리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하는 등
- 2005.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수회에 걸쳐 액수미상의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시킨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의 혐의가 일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2명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부당편취금 5억9,988원, 세금포탈 4억4,250만원의 혐의를 확인)

※통보일자 : 2006. 11.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분과위원회(2006. 5. 15.)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4. 4. 경부터 ○○도서관 관리과장인 바,
 - 2005. 1월부터 2006. 2월까지 총 104일(토, 일요일)에 해당하는 초과근무(휴일)수당 약 720여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신고내용 및 진술, 초과근무확인대장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부패 혐의가 인정되므로 감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1,729,797원 환수, 피신고자 경고 및 인사조치, 감독자 주의조치

※ 통보일자 : 2006. 8. 2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분과위원회(2006. 5. 15.)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3. 3월부터 2006. 3월까지 ○○협회 회장인 바,
 - 2005.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국고 4억8,000만 원을 지원 받아 지역 순회공연활동을 하면서 8,800만 원 상당을 회계처리 하지 않거나 업무 추진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 같은 기간 중에 재교육프로그램비용으로 지원받은 5억원의 국고 보조금 중 5,800만 원을 협회 운영비로 불법 전용하여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횡령하였으며
 - 이외에도 2005년도 협회운영을 하면서 약 2,500만 원의 협회 운영비를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수회에 걸쳐 국고 1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증거불충분)

※ 통보일자 : 2006. 10.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3분과위원회(2006. 5. 15.)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인 바,
 - 2000년 ○○○재단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대학교가 연구원에게 인건비로 입금한 378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참고인의 진술서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의 부폐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사기 건은 기소,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공소 시효 완성)

※ 통보일자 : 2006. 11.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3분과위원회(2006. 5. 18.)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이사장과 그 직원들인 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비자금 조성, 법인
카드의 목적외 사용, 각종 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수사결과 피신고자 구속, 관련자 3명 불구속 기소
- 편취금 약 9억원 중 8억9천만 원 환수 및 잔여금액 추징
예정

※통보일자 : 2006. 9. 29.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분과위원회(2006. 6. 5.)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도 ○○군수인 바,
 -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현금을 인출·사용한 후, 영수증·지급내역·사유 등 세부 집행내역을 첨부하지 않고,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해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 2005. 2~5. 사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모두 26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2005. 2. 경 ○○ 경기장 설치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군청을 방문한 ○○도청 체육청소년과 과장 등에게 위 경기장이 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하며 각각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함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군수는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하고, ○○군수로부터 현금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소속기관의 장 및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4 조치결과**조사기관**

- 피신고자 ○○군수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660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주의 처분
- 피신고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징계 조치
※ 통보일자 : 2006. 7. 24.

5 비 고

제3분과위원회(2006. 6. 5.)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광역시장인 바,
 - 피신고자의 부인이 2004. 6. 경부터 2006. 3. 경까지 시장 사택에 관용차량 1대를 배정(운전원 1명 배치)받아 공적 목적외에 유치원 행사,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 2004. 7. 경부터 시 소속 공무원 1명이 사택에 근무하면서 피신고자 본인의 행사 참석 및 일정관리 등의 업무지원을 받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함

2 의결이유

-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 시행 등 필요한 조치 요구

4 조치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에게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06. 7. 24.

5 비 고

분과2006-66호 복지시설 위탁운영자 선정비리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6. 6. 19.)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청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들인 바,
 - 2006. 2. 경 위 어린이집 위탁운영관리자 공모에 지원한 ○○○이 제출한 서류에서 경력사항을 임의로 높게 산정 해주고, 부부재산에 자녀의 재산을 임의로 포함시켜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여 다른 지원자들 보다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 되도록 하고, 이의 대가로 액수미상의 금품을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피신고자들의 사실 확인서, 기타 협의를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증거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충청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위탁자 계약해지, 관련자 문책 예정

※ 통보일자 : 2006. 7. 18.

위원회 검토의견 – 신고자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요구하였으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처리

5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6-85호(2006. 7. 24.)「복지시설 위탁운영자 선정비리 의혹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분과2006-67호 군청 공무원 등의 온천업체 비호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6. 6. 19.)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과 온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인 바,
- 피신고자는 2002. 11. 경 ○○군로부터 일시 이용허가를 받은 온천공에서 허가받은 온천수량보다 3배 정도인 1일 약 600~700 m³량을 채수하였고, 2002. 12. 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군소재 허가받지 않은 3개의 온천공에서 불법적으로 온천수를 채수 하여 온천영업을 함으로써 온천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 개발세(1m³당 100원)를 포탈하여 이익을 도모하였고
- 위 담당 공무원인 피신고자들은 위 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온천공에서 불법적으로 온천수를 채수하여 온천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고 온천공 검사기관과 피신고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전라북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담당공무원 1명 주의, 5명 훈계(성실의무 미준수)

※ 통보일자 : 2006. 8.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6-68호 국가기술자격검정 관련 감독비용 부당청구 등

제2분과위원회(2006. 6. 19.)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정보전산원 소속 기성회직으로서,
 -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고사장 관리를 담당해 오면서,
 - 2005. 1.부터 같은 해 12. 사이에 ○○에서 주관하고 동 대학교에서 실시된 시험장 감독관수를 부풀려 비용을 청구하여 감독관들에게 일부만 지급하고 횡령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 같은 기간 중에 실시된 상공회의소 주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총괄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액수미상의 공공기관 예산을 손실시킨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입증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의 부폐 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구속 의견으로 송치(1,916만 원 횡령혐의 등)

– 관련자 1명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업무방해 혐의)

※ 통보일자 : 2006. 9. 2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6-69호 청소년 수련단체의 보조금 등 횡령

제2분과위원회(2006. 6. 19.)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단법인인 청소년 수련단체의 부총재인 바,
 -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청소년 수련 관련 각종 보조금을 허위문서 작성, 영수증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를 하여 횡령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담당 부하직원에게 위법행위를 강요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의 부패 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구속기소, 관련자 1명 불구속기소, 1명 약식 기소(벌금 1백만원), 4억9천만원 추징예정
※ 통보일자 : 2006. 9. 20.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6-75호 시장 내 도로 불법 점용허가 등 관련 비리

제2분과위원회(2006. 7. 3.)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수, 경제관광 과장, 시장조합장들인 바,
- 피신고자 군수는 ○○중앙시장 내 노점상을 단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시장 내 도로에 5일장 노점상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불법으로 내 주었고 또한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3년간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음에도 허가취소 등 제재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 피신고자 경제관광 과장은 경비를 조합장이 부담하게 하여 해외 외유를 함으로써 금품 및 향응을 수수 하였으며
- 시장조합장은 5일장 노점상(200여명)으로부터 받은 자릿세(1일 3천 원~5천 원) 및 회비(한달 5천 원) 수천 만원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군청 관련 부서에 수시로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시장 내 도로점용 허가 조건 및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강원도청,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강원도 : 관련자 징계(훈계) 조치

- 경찰청 : 피신고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혐의없음)

※ 통보일자 : 강원도 2006. 8. 16., 경찰청 2006. 9. 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6-84호

부적격 혈액유통관련 부패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3분과위원회(2006. 7. 20.)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이의신청인은 분과2005-88호 「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패」건의 신고자인 바,
 - 위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는 감사원에서 신고내용에 대하여 모두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하였으나,
 - 최초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달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최초 신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

2 의결이유

- 재조사를 요구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상당

3 의결결과

- 이의신청 기각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5-88호 ('05. 11. 18.) 「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패」



분과2006-76호 인·허가 관련 향응 등 접대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6. 7. 24.)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건설산업진흥과 건설행정관련 주무계장과 건설행정담당자인 바,
 - 2005. 11.경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식당에서 음식과 룸싸롱에서 술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서 및 관련자료 등에 의해 신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피신고자 2명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뇌물수수 혐의)
 - 다른 피신고자 2명 입건(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
- ※ 통보일자 : 2006. 9. 2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6-79호 시 소속 태권도부 코치의 공금횡령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6. 7. 24.)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인은 2005. 1. 경부터 ○○시청 소속 태권도부 코치인 바,
 - 소속선수들의 영입계약, 훈련, 대회출전, 선수관리 등 태권도부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 2005. 1. 부터 2006. 5. 경 까지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지급된 1,073만 원과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체육회, 태권도협회의 지원비 135만 원 등 총 1,208만 원 상당의 공적 재산을 횡령하였고
 - 우수선수 영입시 선수에게 지급되는 계약금 3,000만 원, 스승의 날을 맞아 소속 선수들에게 자신의 양복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여 양복 구입비 명목으로 90만 원 등 총 3,090만 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관련 증거서류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횡령 등 혐의)

※ 통보일자 : 2006. 12.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6-85호

복지시설 위탁운영자선정 비리의혹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분과위원회(2006. 7. 24.)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이의신청인은 분과2006-66호 「복지시설 위탁운영자 선정비리 의혹」건의 신고자인 바,
 - 위 건에 대한 조사기관인 충청남도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사실이 없고 주 취지가 “피신고자들로 인해 억울하게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에서 탈락한 것이므로 자신을 재선정 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져 재조사를 요구할 만한 이유가 없어 기각

2 의결이유

- 재조사를 요구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상당

3 의결결과

- 이의신청 기각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6-66호(2006. 6. 19.)「복지시설 위탁운영자
선정비리 의혹」



분과2006-81호 보조금 부당 집행

제2분과위원회(2006. 7. 24.)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농정담당 공무원들인 바,
 - 자신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과정에 특정인이 허위서류를 작성, 회원이 없는 단체를 설립하여 사업허가 신청을 하였고, 개인용도 창고신축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 창고를 건축하여 개인용 창고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며, 피신고자들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등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담당 공무원 2명, 관련 민간인 1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6. 11. 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6-88호 국·공유지 관리 소홀

제2분과위원회(2006. 8. 21.)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인 바,
 - 군 소재 군유지인 산의 일부를 수십 년 전부터 다수의 개인들이 무단 점유하여 사용해오다 2003.11. 경 이후 타인에게 불법 전매하여 이 자가 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슴방목(임야 2,091m²), 건축자재 적치(임야 699m²), 밭 경작(1,120m²)을 하고 있는바,
 - 피신고자는 이 자들에게 변상금 3,502,090원(5년간)을 부과하여야 하나 951,320원만 부과하고 2,550,770원 상당을 미 부과하였고,
 - 같은 리 국유지 중 400여 평을 수십 년 전부터 이 마을 이장이 무단 점유하여 주택 및 축사로 사용해오고 있어 피신고자가 변상금 3,048,100원 상당(5년간)의 부과 및 기타 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 및 변상금 부과실태를 확인한 결과 변상금 부과실태 등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강원도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국·공유재산 관리 담당 문책 및 변상금 부과 후 일부지역 대부허가

※ 통보일자 : 2006. 10.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6-91호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6. 9. 4.)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 국가기관 사무관으로 관련 산하기관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인 바,
- 2002. 6. 경 산하기관에서는 수석급 전문연구직의 채용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직의 정원이 초과되어 인사규정상 수석급 전문연구직을 특별채용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 기관장, 기획관리본부장 등에게 피신고자를 수석급 전문연구직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하여,
- 위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인사규칙을 개정까지 하면서 피신고자를 수석급 전문연구직으로 특별채용 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 및 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징계시효 경과로 종결
※ 통보일자 : 2006. 10. 26.

위원회 검토의견 – 징계시효가 경과되지 않고 산하기관으로의 취업 형태 관련 직권 남용 및 전반적인 인사제도의 감사 필요성이 있어 재조사 요구함
※ 재조사 요구 : 2006. 11. 7.

5 비 고

관련의안 – 분과 2006-127호(2006. 11. 7.) 「공무원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의혹 재조사 요구」



분과2006-92호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6. 9. 4.)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인바,
 - 2005. 1. 경부터 2006. 4. 까지 실제로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매일 3~4시간씩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근거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각 팀별로 사전 또는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초과근무명령서'를 지원기획팀 소속 공익요원에게 건네주고, 이를 받은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초과근무명령서'의 근무자 성명, 근무 시간 등을 '초과근무확인대장'의 각종 기재사항란에 한꺼번에 연필로 옮겨 적어 정리하게 한 후, 이를 각각의 공무원들에게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하여 연필로 기재된 사항 위에 공무원들이 다시 볼펜 등으로 성명 등을 자필 기재한 후 흔적이 남지 않도록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관련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혐의가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서울특별시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1,613,810원 환수 조치, 3명 훈계조치, 11명 주의조치,
해당 기관에 기관경고 조치

※ 통보일자 : 2006. 11.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3분과위원회(2006. 9. 4.)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 ○○공사 건설본부 기계설비팀 부장으로 재직 하였던 자인 바,
 - 1998.~2001. 경 및 2005.경 입찰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입찰업무를 공정하게 할 임무에 위배하여 ○○공단, ○○공사가 발주한 승강설비 및 탑승교 제작·설치 사업, 유지 보수 용역사업의 입찰예상가격과 입찰방법 등 입찰정보를 모업체 등에게 제공하여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고, 위 회사들이 시공자로 선정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 위 회사들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무료인 하자보수공사를 유료 보수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단 등으로부터 추가공사 대금 또는 보수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공공 기관의 예산손실을 초래 및 그 대가로 위 회사들로부터 약 5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수수약속을 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관련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 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 처분(2001. 11. 경 신고자가 ○○지검에 위원회 신고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제보한 사안으로 기 수사종결 처리됨)

※ 통보일자 : 2006. 12.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6-96호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금 횡령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6. 9. 18.)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민간단체들의 사무처장 및 회장인 바,
 - 2004년 ○○시에서 위 민간단체에 지원한 수질보전활동 보조금 2,000만 원 중 2004. 3. 경 모 업체에 수질정화 기술시험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조, 횡령하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도합 1,22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횡령하여 공적재산에 손실을 끼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횡령 등 혐의)

※ 통보일자 : 2006. 9. 2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분과위원회(2006. 9. 18.)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광역시 소방본부장은
 - 직원의 승진 및 전보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고, 직무관련자인 의용소방대원으로부터 향응 수수, 접대성 경비의 산하 소방서 강제 분담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함.
- 전 소방방재청 ○○국장은 2004. 10. 경 「테러대비태세 특별 점검 계획」에 따라 ○○광역시 소방본부 방문 시 향응을 수수하여 행동 강령을 위반함
- 전 소방방재청 ○○팀장은 2006. 1. 경 ○○광역시 화재사건 조사를 위하여 ○○광역시 소방본부 방문 시 향응을 받아 행동강령을 위반함
- 2004. 2. 경부터 2006. 9. 경 까지 ○○광역시 소방본부소속 7개 소방서의 소방서장직을 맡았거나 소방서장으로 재직 중인 13인은
 - 만찬경비 분담금 및 소방본부의 접대성 경비 제공을 위하여 업무 추진비를 편법으로 집행하여 현금을 조성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신고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

3 의결결과

- 위반행위자의 소속기관의 장인 소방방재청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통보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의원면직 1명, 주의 3명, 경고 8명, 훈계 2명

※ 통보일자 : 2006. 10. 30.

5 비 고

분과2006-102호 경찰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및 직권남용 행위

제3분과위원회(2006. 9. 18.)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바,
- 피신고자 1은 폭행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2006. 1. 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피의자 측으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33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동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하여 행동강령을 위반함
- 피신고자 2는 전직 동료경찰이었던 폭행사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청탁수사를 한 의혹이 있어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추가 조사하도록 함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1은 신고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무원행동 강령 제 11조 및 제 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경찰청장에게 통보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은 “파면” 처분, 피신고자 2는 경징계 요구 중
※ 통보일자 : 2006. 11. 12.

5 비 고

2005年度

分科委員會 申告事件 追錄

2005년도 분과위원회 심의·의결례집 처리결과 추록 일람표

순번	의안번호	의 안 명	추록내용	4집 면수
1	분과2005-61호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비리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219
2	분과2005-67호	해양경찰관 등의 직무유기 의혹	"	224
3	분과2005-72호	국유지 매각 관련 금품수수	"	226
4	분과2005-74호	지방산업단지 공사 관련 비리	"	227
5	분과2005-76호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등	"	228
6	분과2005-77호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	229
7	분과2005-78호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지급	"	230
8	분과2005-79호	상이군경회 지회장의 횡령 의혹	"	231
9	분과2005-84호	초등학교의 보수공사 예산낭비 의혹 등	"	236
10	분과2005-86호	경찰공무원 금품수수 등 비리 의혹	"	237
11	분과2005-88호	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패	"	238
12	분과2005-89호	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 의혹	"	239

순번	의안번호	의 안 명	추록내용	4집 면수
13	분과2005-87호	신기술에 의한수의계약으로 국고순실 의혹 등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241
14	분과2005-91호	정부지원 연구용역비 횡령 의혹	"	242
15	분과2005-92호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	243
16	분과2005-93호	국가위탁사업 관련 국고금 부당 청구 등	"	244
17	분과2005-94호	철도고압선 주변 전화잡음방지 대책비 과다청구	"	245
18	분과2005-95호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비리	"	246
19	분과2005-99호	공립대학 교수의 성적조작 등 직권남용 비리	"	249
20	분과2005-100호	국립대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청구	"	250
21	분과2005-101호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	251
22	분과2005-102호	농협조합장 등의 면세유 횡령 의혹	"	252
23	분과2005-104호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	254
24	분과2005-105호	국·공립 중학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	255



분과2005-61호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비리

제3분과위원회(2005. 10. 6.)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인 바,
 -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던 특정사업과 관련 자신의 연구사업에 참여한 교수나 대학원생들의 통장을 피신고자가 관리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교수 등의 인건비로 입금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횡령하는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혐의없음(횡령을 인정할 증거 없음)

– 참여교수 입건유예

※ 통보일자 : 2006. 1. 2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67호 해양경찰관 등의 직무유기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5. 10. 17.)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국가정보원 직원인 바,
 - 위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A가 업무방해, 공갈 등을 이유로 B를 동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B와의 친분 등으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여 B로 하여금 A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게 하고 그 대가로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으며,
 - 국가정보원 직원은 B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B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철저한 수사 등이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국가정보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해양경찰청 : 총경 등 5명 보직해임 조치

- 검찰청 : 국가정보원 3명 혐의 없음 처분(증거없음)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3명의 수뢰(부적절한 행위), 전보조치 후 엄중 계도조치
- 피신고자 6명 기소(혐의 인정)

※ 통보일자 : 2006. 5. 2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72호 국유지 매각 관련 금품수수

제3분과위원회(2005. 10. 17.)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유지 매각승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바,
- ○○시 소재 국유지 매각승인과 관련하여 매각요구자인 매각
대상지의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약 15백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
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증거 발견 할 수 없음)

※ 통보일자 : 2006. 9.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74호 지방산업단지 공사 관련 비리

제1분과위원회(2005. 11. 7.)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에서 빌주한 ○○산업단지 시공업체 대표 및 ○○시 공사담당 공무원인 바,
- 위 시공업체는 ○○산업단지 공사와 관련하여 터파기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약 3억9천여만 원을 부당 청구하여 공공기관 예산에 손실을 가하고,
- 공사담당 공무원들은 시공사로 하여금 실제 시공하지도 아니한 도로공사에 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마치 공사를 한 것 같이 인정하여 약 2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도합 약 6억3 천여만 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혐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 부족)

※ 통보일자 : 2006. 3. 2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76호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등

제1분과위원회(2005. 11. 7.)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바,
- 2003. 5. 경 운수회사인 ○○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 부당 청구와 불법사용 등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관련서류 일체를 위 회사에 되돌려 준 후 나머지 수사서류만 위 회사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이송시켜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토록 하였고,
- 위 수사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 등의 명목으로 위 운수회사의 간부로부터 약 3억 원의 금품을 받는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혐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 부족)

※ 통보일자 : 2006. 1. 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77호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5. 11. 7.)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바,
- 신고자의 절도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신고자의 의뢰인인 변호사
로부터 사건선처 부탁과 함께 금 3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부폐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 없음(혐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신고자가 진정을 취하)

※ 통보일자 : 2006. 9.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78호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지급

제1분과위원회(2005. 11. 7.)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태풍피해 복구비를 교부받은 ○○시와 ○○군에 소재한 수산업자들인 바,
 -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 시설물 피해복구비 및 양식전복 폐사로 인한 피해를 허위로 신고하여 태풍피해 복구 보조금을 과다하게 교부받아 합계 2억2백여만 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에 손실을 가하는 내용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들 중 3명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입건조치 (부당하게 보조받은 금액 2억 6,299만원 확인), 4명 무혐의

※ 통보일자 : 2006. 2. 2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79호 상이군경회 지회장의 횡령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5. 11. 7.)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상이군경회의 ○○구 지회장인 바,
 - 장기간 ○○시 ○○구의 상이군경회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에서 지원되는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안보사업비 등 각종 운영비 및 보조금 약 19백여만 원을 유용 및 횡령하는 등의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서울특별시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에서 해당구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토록 하고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을 경고조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통보일자 : 2006. 3.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84호 초등학교의 보수공사 예산낭비 의혹 등

제2분과위원회(2005. 11. 7.)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장인 바,
 - 직위를 이용하여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무허가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사원이 계산시 원가를 의도적으로 높게 산정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계약업체가 불법하도록 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가 하면,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형으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징수하여 무단사용하는 등의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충청남도교육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실시공된 부분은 재시공하도록 처분하고 과다 계상된 공사비 7,884,100원 회수조치
- 학교장 및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 ※ 통보일자 : 2006. 1.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86호 경찰공무원 금품수수 등 비리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5. 11. 7.)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공무원들인 바,
 - ○○업체에서 추진중인 ○○지구 주택조합 사업의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업체대표 등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과 수천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 물품 및 향응과 고스톱 도박 접대를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통보일자 : 2006. 12. 2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88호 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파

제2분과위원회(2005. 11. 18.)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혈액유통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인 바,
 -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현혈을 받음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전염병 환자 등으로부터 채혈된 혈액 등 부적격 혈액을 채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4. 경 26만여 명으로 부터 부적격 혈액을 채혈하였다가 무용하게 폐기함으써 그 채혈 및 폐기비용에 상당하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내용의 부패행위를 하였다는 것임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 혈액 유통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감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16명 경징계(경고조치)

위원회 검토의견 – 신고자가 조사결과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처리

5 비 고

관련의안 – 분과2006-84호(2006. 7. 20.) 「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패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분과2005-89호 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5. 11. 18.)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바,
–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 등 약 수천만 원 이상의 연구비를 편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구속기소(3억3,951만원 상당 편취 혐의)

※ 통보일자 : 2006. 2.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87호 신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국고 손실 의혹 등

제1분과위원회(2005. 11. 21.)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상수도관 공사 업체의 대표인 바,
 - ○○공법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은 후, 동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를 ○○시에서 4건 약 14억여 원, ○○시에서 5건 17억여 원 및 ○○시 사업소에서 4억여 원 등 총 10건의 노후 상수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국고를 손실시키는 부패행위를 함
- ※ 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뮡인 또는 금품수수 등의 의혹도 함께 조사할 필요성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감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8명의 혐의가 확인되어 소속 기관에 징계 처분요구

※ 통보일자 : 2006. 6.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91호 정부지원 연구용역비 횡령 의혹

제3분과위원회(2005. 11. 21.)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 대표인 바,
– 2003. 11. 경부터 2005. 11. 경까지 정부기관과 ○○○시스템
개발 등 ○건의 개발계약을 맺은 후 동 과제를 수행하면서 일부
직원을 위장 취업시켜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통장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12백여만 원을 횡령하고, 혜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출장여비를 지급받아 횡령하고,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혜위 영수증을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지원금
약 14백여만 원을 횡령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기소의견으로 송치(총 22회, 16,667,110원
횡령 사실 확인)

※ 통보일자 : 2006. 2.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92호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제3분과위원회(2005. 11. 21.)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인 바,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연구원의 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할 약 4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는 부패행위를 함
 - ※ 이외에도 여비, 활동비 등으로 지출된 부분도 유사한 내용의 혐의가 있어 조사 필요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6. 2. 24.

- 재조사요구결과 : 혐의 없음(무혐의처분 변경할 혐의 사실 발견되지 않음)

※ 통보일자 : 2006. 7. 18.

위원회 검토의견 – 재조사 요구(2006. 3. 6.)

- 재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관련의안 – 제2006-38호 ('06. 3. 6.)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재조사 요구」

분과2005-93호 국가위탁사업 관련 국고금 부당 청구 등

제3분과위원회(2005. 11. 21.)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부 산하 ○○협회의 자회사인 바,
 - 국가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시행하는 각종 전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중 2000. 8. 경 ○○기관의 위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부풀리거나 영수증을 허위로 만드는 방법 등으로 국고 약 12백여만 원을 과다청구하고, 같은 해 11. 경 ○○기관이 주관한 행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약 65백여만 원을, 2001. 7. 경 ○○기관이 주관한 행사에서도 약 5천여만 원을 과다청구하는 등 약 1억3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이득을 취하고 국고를 손실시키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협의사실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2명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국고금 10억 4,376만원 횡령 혐의)

※ 통보일자 : 2006. 11. 1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94호 철도고압선 주변 전화잡음방지 대책비 과다청구

제3분과위원회(2005. 11. 21.)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단과 ○○통신인 바,
 - 철도 건설 과정에서 열차운행시 철도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력으로 인해 주변에 설치된 전화선에 잡음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통신은 이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 수립비를 ○○공단에 과다하게 요구하였고, 동 공단에서는 ○○통신에서 요구한 금액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지급하여 수백억원이 과다지급되었고,
 - 지급된 금액중 일부는 본 대책과 관련없이 ○○통신의 고유사업인 노후케이블 교체, 기지국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등에 불법으로 전용되는 등으로 인해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감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현행 기준대로 공사시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공사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반영되도록 조치 통보하고 관련자 주의를 촉구하도록 시정조치 요구

※ 통보일자 : 2006. 6.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본 사건은 종결하고 신고자가 재신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신고 할 경우 신고내용을 검토 후 이첩 여부 등을 결정

5 비 고

분과2005-95호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비리

제3분과위원회(2005. 12. 1.)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청에서 근무하였던 전직 공무원인 바,
 - 사회복지법인의 고장나거나 노후한 의료기기를 거액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가구 구입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약 1억1천여 만 원을 횡령하고,
 - 같은 법인의 직원 채용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횡령사실의 증거 없음)

※ 통보일자 : 2006. 9.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분과위원회(2005. 12. 19.)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립대학인 ○○대학의 교수인 바,
- 교수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시간강사 및 타 교수에게 장기결석 등 학업수행이 극히 부진한 ○○○ 등 일부 학생에게 최고학점을 주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시간강사에게 “다음학기에 강사직 채용 추천을 해줄 수 없다”고 협박한 바가 있으며,
- 피신고자가 교수로 채용될 당시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정하게 채용된 의혹이 있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징계조치, 해당학교는 재발방지를 서약함

※ 통보일자 : 2006. 3. 13.

위원회 검토의견 – 신고자의 신고 취하의사 및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분과위원회(2005. 12. 19.)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들인 바,
-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실제 근무를 하고 비치된 초과 근무확인대장에 자필로 근무시간과 서명을 하여야 하나, 2004. 1. 경~ 2005. 9. 경 위 교직원들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사전 또는 사후에 서명을 하거나 숙직자들이 퇴근시간을 대신 적어주는 방법 등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약 7천여만 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청구하여 수령하는 등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당 지급된 수당 2,524,430원 회수(초과근무관련 문서에 허위 기재 사실 확인)
- 피신고자 5명 경고 및 주의 조치
- ※ 통보일자 : 2006. 3.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분과위원회(2005. 12. 19.)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립대학교 공학부 교수인 바,
 - 2002. 부터 2003. 사이에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을 다시 반환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관련 계좌추적을 통하여서도 피신고자에게 금품 전달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음)

※ 통보일자 : 2006. 4.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102호 농협조합장 등의 면세유 횡령 의혹

제3분과위원회(2005. 12. 19.)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도 소재 ○○농협조합의 조합장 및 동 조합에서 운영하는 농협주유소 소장인 바,
 - 2003. 1. 경 ~ 2005. 4. 경 농협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면세 유류를 관리하면서 조합원 10여 명에게 면세유 한도량을 초과 하여 9만여 리터 상당의 면세유 구매권을 부당하게 발급하고, 조합원 30여 명에게 마치 면세유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16만여 리터의 면세유 구매권을 발급 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3명 불구속 송치(조합에 41,640,000원 상당의 손실을 가하는 등 혐의 확인)

※ 통보일자 : 2006. 2.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104호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제3분과위원회(2005. 12. 19.)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사의 간부직원인 바,
 -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지원 ·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기업의 공적자금 불법사용 등에 대한 조사 관련 업무를 하면서 위 기업의 고위관계자로부터 공적자금 조사시 편의제공 명목으로 미화 3천 불을 수수하고, 조사가 끝난 후 수십억 원의 사례비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 없음(참고인 진술과 계좌추적 결과 등으로 피신고자 금품수수 사실이 발견되지 않음)

※ 통보일자 : 2006. 5.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의 일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요구

5 비 고



제3분과위원회(2005. 12. 19.)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도 소재 ○○중학교 등 ○○개 국·공립중학교 교장들인 바,
-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업무 추진비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경조사비나 전별금 등은 일반업무 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고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3천8백여 건, 약 1억1천여만 원을 일반업무추진비로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06. 3. 29.

위원회 검토의견 – 재조사 요구(2006. 4. 7.)

5 비 고

관련의안 – 분과2006-38호(‘06. 4. 7.)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



II. 申告者 保護

분과2006-14호

『지방공기업 직원의 주차장 이용대금 횡령』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16)처리기간 연장

제1분과위원회(2006. 2. 6.)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제2002-56호 「지방공기업 직원의 주차장 이용대금 횡령」 건 관련 요구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함

※ 사건 개요

- 요구자는 ○○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의 공용 주차장 이용대금 횡령 혐의에 대하여 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정년퇴직할 때 공단이 요구자를 촉탁근무자로 지정하여 주지 않은 것이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의 내용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2-56호 ('02. 5. 20.) 「지방공기업 직원의 주차장 이용대금 횡령」



분과2006-15호

『○○여자고등학교장의 횡령 등 부패행위』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18) 처리기간 연장

제1분과위원회(2006. 2. 6.)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여자고등학교장의 횡령 등 부패행위」건에 관련된 요구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함

※ 사건 개요

- 요구자는 ○○여자고등학교장의 비리행위를 ○○○국회의원실에 제보하고 그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조력하였으며, ○○도 교육청 감사 시에도 학교장의 비리행위를 감사직원에게 제보한 이후, 소속 사학재단으로부터 해임된 것이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2 심의내용

- 요구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의 내용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분과2006-23호

『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패』건 관련
신분보장 조치요구(2005-19) 처리기간 연장

제1분과위원회(2006. 2. 20.)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분과2005-88호 「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패」 건 관련 요구자의 신분보장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함.

※ 사건 개요

- 요구자가 ○○○이 바이러스 감염 의심이 높은 부적격 혈액을 병원, 제약사 등에 공급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정직1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2 심의내용

- 요구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의 내용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5-88호 ('05. 11. 18.) 「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패」



분과2006-40호

「○○여자고등학교장의 횡령 등 부패행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5-18)

제1분과위원회(2006. 4. 17.)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여자고등학교장의 횡령 등 부패행위」건 관련 요구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한 인용여부를 심의함

※ 사건 개요

- 요구자가 ○○여자고등학교장의 비리행위를 ○○○국회의원실에 제보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조력하였으며, ○○도 교육청 감사시에도 학교장의 비리행위를 감사직원에게 제보한 이후 소속 사학재단으로부터 해임된 것이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요구하였고 이후 추가 조사의 필요에 의해 처리기간을 60일 연장하였음(1차)

2 심의내용

- 요구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의 내용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6-15호 ('06. 2. 6.) 「○○여자고등학교장의 횡령 등 부패행위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18) 처리기간 연장」



분과2006-52호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9,10,11) 처리기간 연장

제1분과위원회(2006. 5. 15.)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감독기관에 접수된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건에 관련 요구자들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함

※ 사건 개요

- 요구자는 ○○시 교육청의 감사과정과 ○○시 교육청의 ○○학원 이사장에 대한 수사과정에 조력한 이후 ○○학원 측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이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이후 추가 조사의 필요에 의해 처리 기간(60일)을 3차례 걸쳐 연장하였음

2 심의내용

- 요구자들의 조력내용이 부패행위의 신고와 관련되어 「부패방지 법」제34조(협조자 보호) 규정에 따른 신분보장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학원 측의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가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협조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며, 요구자들에 대한 징계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원의 고소건과 관련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이에 대한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6-32호 ('06. 3. 6.)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신고 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



분과2006-58호

『○○시 사회복지과 관련자의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3) 처리기간 연장

제1분과위원회(2006. 6. 5.)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시 사회복지과 관련자의 부패행위 신고」 건 관련 요구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함

※ 사건 개요

- 요구자가 “자활후견기관의 예산 집행 문제”라는 제목으로 자활후견 기관의 집수리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최저생계비 삭감, 아동중식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2 심의내용

- 요구자가 신고한 내용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신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분과2006-77호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9,10,11) 처리기간 연장

제1분과위원회(2006. 7. 24.)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감독기관에 접수된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 건에 관련된 요구자들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함

※ 사건 개요

- 요구자가 ○○시 교육청의 감사과정과 ○○시 교육청의 ○○학원 이사장등에 대한 수사과정에 조력한 이후 ○○학원 측으로부터 과면처분된 것이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2 심의내용

- 요구자들의 조력내용이 「부패방지법」 제34조(협조자 보호) 규정의 신분보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 측의 요구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직위해제 및 과면처분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협조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6-52호(‘06. 5. 15.)「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신고 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분과2006-86호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5) 처리기간 연장

제2분과위원회(2006. 8. 21.)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분과2006-57호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요구자에 조력한 협조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함

※ 사건 개요

- 요구자가 소속회사 관련자의 부패행위에 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소속회사 이사장으로부터 해고예고 및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받은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자, 이는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2 심의내용

- 소속회사 측의 당초 사직권고 및 징계의결 요구 등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는 취소된 상황이나, 소속회사 측이 부패행위 신고에 조력한 요구자의 행위를 인지한 이후 요구자에게 사무실 열쇠를 주지 않는 등 요구자에 대해 근무조건상 차별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6-57호 ('06. 5. 18.)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



분과2006-87호

『철도고압선 주변 전화잡음 방지 대책비 과다청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6) 처리기간 연장

제2분과위원회(2006. 8. 21.)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분과2005-94호 「철도고압선 주변 전화잡음 방지 대책비 과다 청구」 건 관련 요구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함

※ 사건 개요

- 요구자는 (주)○○가 「고속철도 주변 통신헤선의 잡음방지를 위한 전력 유도대책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예산을 낭비하였음을 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소속 회사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였고 이후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후 다시 과면처분을 당한 것은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 변경을 요구함

2 심의내용

- 요구자가 위원회 신고 이후 특별감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 측의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였을 경우 요구자에 대한 징계가 과중한지 여부와 과면처분 과정에서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보호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5-94호 ('05. 11. 21.) 「철도고압선 주변 전화 잡음 방지 대책비 과다청구」



분과2006-93호

『군장병 인사청탁 등 신고 건』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7) 처리기간 연장

제2분과위원회(2006. 9. 4.)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군장병 인사청탁 등 신고」 건 관련 요구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함

※ 사건 개요

- 요구자는 위원회, 국방부 등에 ‘부패예방관련 건의서’라는 문서를 제출한 이후 자신이 지휘하는 소속부대에 대한 감찰조사 및 특별 감찰을 받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근신 7일의 징계처분 및 신고 취하를 종용받은 것이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2 심의내용

- 요구자의 징계처분 과정 및 이유 등에 대해 요구자와 소속기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신고내용 중 부패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인사 청탁의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요구자의 신고취하 강요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분과2006-118호

『철도고압선 주변 전화잡음 방지 대책비 과다청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6) 처리기간 연장

제1분과위원회(2006. 11. 6.)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분과2005-94호 「철도고압선 주변 전화잡음 방지 대책비 과다 청구」 건과 관련 요구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함

※ 사건 개요

- 요구자는 (주)○○의 예산낭비를 신고한 후 직위해제를 받은 것이 부패 행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후 다시 과면처분을 당하여 신분보장조치를 변경 요구함

2 심의내용

- 요구자의 신분상 불이익에 관한 양측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사의 부당성 및 경영진에 대한 비방 내용을 공개한 것이 과면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요구자의 또 다른 관련 신고사항이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처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 관련 의안 – 분과2005-94호 ('05. 11. 21.)「철도고압선 주변 전화 잡음 방지 대책비 과다청구」
- 분과2005-875호 ('06. 8. 21.)「철도고압선 주변 전화 잡음 방지 대책비 과다청구 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6) 처리기간 연장」

報告目錄

報 告 目 錄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	-----	-----	------	----

제90차

제2006-2호	'06.1.16.	위원회 의결사항 등 추진상황 보고 (‘05년도 4/4분기)	법무관리실	
제2006-3호	'06.1.16.	제1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제1분과위원회	
제2006-4호	'06.1.16.	제2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5호	'06.1.16.	2006년 중점분야 제도개선 추진계획	제도개선심의관실	
제2006-6호	'06.1.16.	「국립○○○○원 국유재산 불법유출」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17) 취하	신고심사국	
제2006-7호	'06.1.16.	「○○디지털콘텐츠진흥원 관계자의 부패 혐의신고」건 관련 신분보장 조치요구(2005-15) 종결처리	신고심사국	
제2006-8호	'06.1.16.	고발·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6-9호	'06.1.16.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91차

제2006-15호	'06. 2. 6.	제1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제1분과위원회	
제2006-16호	'06. 2. 6.	제2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17호	'06. 2. 6.	제3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18호	'06. 2. 6.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6-19호	'06. 2. 6.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	-----	-----	------	----

제92차

제2006-23호	'06.2.20.	제1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1분과위원회	
제2006-24호	'06.2.20.	제2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25호	'06.2.20.	제3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26호	'06.2.20.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27호	'06.2.20.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93차

제2006-36호	'06.3.6.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37호	'06.3.6.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94차

제2006-39호	'06.3.20.	제1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1분과위원회	
제2006-40호	'06.3.20.	제3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41호	'06.3.20.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95차

제2006-48호	'06. 4. 3.	제2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1분과위원회	
제2006-49호	'06. 4. 3.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50호	'06. 4. 3.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2006-51호	'06. 4. 3.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관련 세부기준	심사본부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	-----	-----	------	----

제96차

제2006-61호	'06. 4.17.	제1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1분과위원회	
제2006-62호	'06. 4.17.	제2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63호	'06. 4.17.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64호	'06. 4.17.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2006-65호	'06. 4.17.	'06년 1/4분기 위원회 의결사항 등 추진상황 보고	운영지원팀	

제97차

제2006-68호	'06. 5. 1.	제1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1분과위원회	
제2006-69호	'06. 5. 1.	제2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70호	'06. 5. 1.	제3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71호	'06. 5. 1.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72호	'06. 5. 1.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98차

제2006-74호	'06. 5.15.	제1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1분과위원회	
제2006-75호	'06. 5.15.	제2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76호	'06. 5.15.	제3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77호	'06. 5.15.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78호	'06. 5.15.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2006-79호	'06. 5.15.	보호사건 처리내용 보고	심사본부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	-----	-----	------	----

제99차

제2006-81호	'06. 6. 5.	국무총리 및 교육부차관 골프관련 행동강령위반 신고	심사본부	
제2006-82호	'06. 6. 5.	서울시장 테니스관련 행동강령위반 신고	심사본부	
제2006-83호	'06. 6. 5.	대통령 정무특보 횟집개업 관련 행동강령위반 신고	심사본부	
제2006-87호	'06. 6. 5.	청와대비서관 행동강령 위반 신고	심사본부	
제2006-88호	'06. 6. 5.	제1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1분과위원회	
제2006-89호	'06. 6. 5.	제2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90호	'06. 6. 5.	제3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91호	'06. 6. 5.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92호	'06. 6. 5.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100차

제2006-99호	'06. 6.19.	제1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1분과위원회	
제2006-100호	'06. 6.19.	제2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101호	'06. 6.19.	제3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102호	'06. 6.19.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103호	'06. 6.19.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2006-104호	'06. 6.19.	퇴직자에 대한 행동강령 신고사건 처리방안	심사본부	
제2006-105호	'06. 6.19.	주요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의 조사결과 공개에 관한 검토	심사본부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	-----	-----	------	----

제101차

제2006-109호	'06. 7. 3.	제2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110호	'06. 7. 3.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111호	'06. 7. 3.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102차

제2006-116호	'06. 7.24.	제1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1분과위원회	
제2006-117호	'06. 7.24.	제2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118호	'06. 7.24.	제3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119호	'06. 7.24.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120호	'06. 7.24.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2006-121호	'06. 7.24.	「○○시 사회복지관 관련자의 부패행위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건 종결	심사본부	
제2006-122호	'06. 7.24.	'06년 2/4분기 위원회 의결사항 등 추진상황	운영지원팀	
제2006-123호	'06. 7.24.	부패방지법 개정 추진 관련 보고	정책기획실	

제103차

제2006-125호	'06. 8.21.	제2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126호	'06. 8.21.	제3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127호	'06. 8.21.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	-----	-----	------	----

제104차

제2006-128호	'06. 9. 4.	제2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129호	'06. 9. 4.	제3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130호	'06. 9. 4.	BSC 지표 및 모델(안) 개발결과 보고	정책기획실	
제2006-131호	'06. 9. 4.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132호	'06. 9. 4.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105차

제2006-133호	'06. 9.18.	제2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134호	'06. 9.18.	제3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135호	'06. 9.18.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136호	'06. 9.18.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106차

제2006-145호	'06.10.16.	제2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146호	'06.10.16.	제3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147호	'06.10.16.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148호	'06.10.16.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2006-149호	'06.10.16.	「주민등록신고 등 청와대 진정」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종결 보고	심사본부	
제2006-150호	'06.10.16.	「불법비자금 조성보고 관련 비리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종결보고	심사본부	
제2006-151호	'06.10.16.	‘06년 3/4분기 위원회 의결사항 등 추진상황	운영지원팀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	-----	-----	------	----

제107차

제2006-164호	'06.11. 6.	제1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1분과위원회	
제2006-165호	'06.11. 6.	제2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166호	'06.11. 6.	제3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167호	'06.11. 6.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2006-168호	'06.10.16.	「○○시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관련 신고」건 관련 신변보호조치요구 조치결과 보고	보호보상단	

제108차

제2006-171호	'06.11.20.	제1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1분과위원회	
제2006-172호	'06.11.20.	제2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173호	'06.11.20.	제3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174호	'06.11.20.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175호	'06.11.20.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	-----	-----	------	----

제109차

제2006-178호	'06.11.20.	반부패규범 종합개선 계획	정책기획실	
제2006-179호	'06.11.20.	제2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180호	'06.11.20.	제3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181호	'06.11.20.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182호	'06.11.20.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제110차

제2006-193호	'06.12.18.	200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	정책기획실	
제2006-194호	'06.12.18.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결과 보고	심사본부	
제2006-195호	'06.12.18.	제1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제1분과위원회	
제2006-196호	'06.12.18.	제2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제2분과위원회	
제2006-197호	'06.12.18.	제3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제3분과위원회	
제2006-198호	'06.12.18.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심사본부	
제2006-199호	'06.12.18.	신고사항 처리개요	심사본부	



附 錄

1. 부패방지법
2. 부패방지법 시행령
3. 공무원 행동강령
4. 전원회의·분과회의 개최현황
5.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명단
6.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第2章

報告事項

報告目錄

1. 부패방지법

제정 2001. 7. 24. 법률 제6494호

개정 2004. 3. 11.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2005. 7. 21. 법률 제761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말한다.
 -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 재판소규칙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 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가청렴위원회

제10조 (설치) 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 · 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평가
3. 부패방지 교육 · 홍보계획의 수립 · 시행
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5.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7.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8. 법령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9.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분석
10.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
11.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부패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5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 (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 (제도개선의 권고)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법령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등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 제1항 각호의 조치는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부폐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

제25조 (부폐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폐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 (공직자의 부폐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폐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폐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28조 (신고의 방법) 부폐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과 부폐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신고의 처리) ①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④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폐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폐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將官級) 장교
6. 국회의원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 · 수사 또는 조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정신청) ①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와 제355조 내지 제357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에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및 제261조 · 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접수된 때에는 그 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 · 단체 · 기업 등으로부터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 전직 ·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 · 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호의 요구 · 조회 ·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 · 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⑨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 · 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 (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3조 (신변보호 등) ①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책임의 감면 등) ①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 (소속기관 등에 대한 신고자의 보호)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포상 및 보상)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7 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 (보상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
위원회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위원회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
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국민감사청구

제40조 (감사청구권) 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보안관찰처분, 보호처분, 보호관찰처분, 보호감호처분, 치료감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2조 (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보칙

제45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①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 (국회 등의 특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8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별 칙

제49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 <삭 제>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51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의2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의2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하되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2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를 삭제한다.

부 칙<2004. 3. 11. 법 718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2005. 7. 21. 법 7612>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제도개선 권고의 재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위원회의 권고부터 적용한다.
- ③(비밀준수의무 위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 ④(포상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 ⑤(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패방지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 당시 부패방지위원회의 소관사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승계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정 2001. 11. 29 대통령령 제17420호

개정 2005. 7. 26 대통령령 제18965호(국가청렴위원회 직제)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직자 행동강령<개정 2005. 12. 30.>)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제3조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 평가) 법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 · 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과정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의2(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 · 시행하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 ·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2. 30.]

제5조의3(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2. 30.]

제6조 (위원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기준”이라 함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12. 30., 2006. 6. 12.>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부패문제에 관한 연구실적 또는 경력 등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 호주 및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증언 · 감정 ·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 ·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 조정, 조사 · 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사무처 직원의 선발 등) ① 위원회는 부패방지업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청렴성 · 도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 · 운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 관계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윤리규정 등) ① 위원회는 위원·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부패방지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③ 위원회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30.>

제13조의2(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공고와 조례 · 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 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 가. 국민 · 기업 · 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 · 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 나. 준비사항 · 처리절차 ·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 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 행정규제기본법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 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 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정 ·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또는 부령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자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2. 30.]

제13조의3(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 ·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 12. 30.]

제14조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 · 일시 · 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제16조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위원,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 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부폐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19조 (대표자의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폐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 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 고소 · 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
-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 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 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2. 30.]

제24조 (조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처리<개정 2005. 12. 30.>) ① 조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30.>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제25조 (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법 제3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 · 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개정 2005. 12. 30.>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②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의신청)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8조 (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제29조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제30조 (불이익 치분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 (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개정 2005. 12. 30.>)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등의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30.>

제32조 (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 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③ 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30.>

제33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30.>

제34조 (신변보호)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 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③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④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⑤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부폐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개정 2005. 12. 30.>

제35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 기소유예 ·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 ④ 제40조제2항,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 12. 30.]

제35조의2(보상금의 지급사유)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12. 30.>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 · 과료 ·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개정 2005. 12. 30>
③ 법 제3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 · 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30.>

제36조 (대표자의 선정) 위원회는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당연직 위원 4인 및 위촉직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한다. <개정 2005. 7. 26., 2005. 12. 30.>
③ 재정경제부 · 법무부 · 기획예산처 및 위원회 소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 · 회계전문가 ·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 (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보상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 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 (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은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보상위원회 위원 등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0조 (보상금의 결정) ①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12. 30. >

제41조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 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30. >

제42조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개정 2005.12.30>) ①위원회는 보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30.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 (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5. 12. 30.>

제44조 (보상금의 지급시기 등)<개정 2005. 12. 30.> ①보상금은 제35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05. 12. 30.> ②제1항의 규정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05. 12. 30.>

제45조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개정 2005. 12. 30.>)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 12. 30.>

제46조 (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5장 국민감사청구

제47조 (감사청구인)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라 함은 300인을 말한다.

제48조 (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 ·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 알선 ·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제49조 (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중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51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 · 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 · 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 · 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 · 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5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과태료의 부과)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 12. 30.>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
장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부패방지위원회 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패방지위원회

부 칙 <2005. 7. 26. 대령 18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 ④ 생략

부 칙 <2005. 12. 30. 대령 1923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 6. 12. 대령 1951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108>생략

<109>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10> 내지 <241> 생략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40조제1항관련) <개정 2005.12.30>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4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 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원회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금액
파면 및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000만원
직위해제 · 강등 · 승진의 제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700만원
전보 · 전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500만원
임금의 차별지급, 집단따돌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개정 2005. 12. 30>	300만원

3.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3. 2. 18. 대통령령 제17906호

개정 2005. 7. 26 대통령령 제18965호(국가청렴위원회 직제)

2005. 12. 9. 대통령령 제19165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2. 9.>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 · 감사 · 감독 · 검사 · 단속 ·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 · 결정 · 검정 · 감정 · 시험 · 사정 · 조정 · 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정집 · 소집 ·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 · 예산 · 감사 ·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 ·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 · 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 · 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 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9.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 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 ·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 12. 9. >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돋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 · 선박 · 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부동산 ·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돋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
 하는 금품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2. 9.>>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9.>>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6., 2005. 12.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9.>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6. 1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 12. 9.>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 12. 9.>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가청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6., 2005. 12. 9.>

③ 국가청렴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6., 2005. 12. 9.>

④ 국가청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6., 2005. 12. 9.>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12. 9. 대령 19165>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 6. 12. 대령 19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16>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7>내지<241>생략



4. 전원회의 ·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전원회의 개최현황

- 회의개최 : 21회, 심의 · 의결 : 총 200건

합계	의결사항					보고사항
	소계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부패영향평가	예규·훈령기타	
200건 - <100%>	89건 (100%) <45%>	2건 (2%) -	44건 (49%) -	14건 (15%) -	29건 (33%) -	111건 - <55%>

■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회의개최 : 66회, 심의 · 의결 : 총 146건

합계	개최	처리	의결사항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	예규·훈령기타
계	66회	146건 (100%)	96건 (66%)	30건 (20%)	14건 (10%)	6건 (4%)
제1분과위원회	19회	55건	24건	25건	2건	4건
제2분과위원회	27회	55건	43건	5건	5건	2건
제3분과위원회	20회	36건	29건	-	7건	-

■ 의결사항 현황

- 신고사항 처리현황

합계	조사기관별 처리건수						행동강령 처리건수	불이첩
	소계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89건 <100%>	80건 <89.9%>	20건 (22.5%)	37건 (41.5%)	7건 (7.9%)	7건 (7.9%)	9건 (10.1%)	9건 (10.1%)	0건 <0%>

■ 제도개선·부패영향평가 권고 목록

제 목	권고기관	권고일자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교육부	'06. 3. 6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산자부, 노동부, 정통부, 해수부, 농림부, 문광부, 환경부, 건교부, 과기부, 복지부, 여성부, 중기청, 특허청	'06. 2. 28.
계약·납품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복지부, 건교부, 산자부	'06. 4. 13.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개선 권고안	행자부	'06. 4. 11
초·중등 교원 인사분야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교육부	'06. 4. 26.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문광부, 영등위	'06. 5. 4.
게임물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개선 권고안	문광부	'06. 10. 19
각종 심의·의결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행자부 등 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06. 11. 30.
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건교부	'06. 11. 17.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령개선 권고안	해수부	'06. 11. 13.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복지부, 여성부	'06. 12. 11.
주택 재개발 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건교부, 광역자치단체	'06. 12. 29.
도로점용 연결허가에 관한 법령부패 영향평가결과 개선 권고안	건교부	'06. 12. 26.

5.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정성진 (鄭城鎮)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검찰청 총무부장 대구지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대학교 총장, 한국법학원 원장 	위원장
위 원	장태평 (張太平)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위 원	성해용 (成海鏞)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신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원 독일 뮌헨베르크 주교회 목사 반부패국민연대, 서울시민감사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상임위원
위 원	정덕홍 (鄭德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 경찰위원회 위원[現]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추천
위 원	소순무 (蘇淳茂)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現]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現]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추천
위 원	박선영 (朴宣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現]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現]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정위원[現]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現] 	대법원장추천
위 원	김거성 (金巨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부패국민연대 부회장[現] 국제투명성기구 이사[現]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운영위원[現] 민주시대포럼 사무처장 	국회 추천
위 원	박인제 (朴仁濟)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여성평화를 위한변호사모임 운영위원장[現] 	국회 추천
위 원	신광영 (申光榮)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現] 한림대 사회과학대 교수, 사회조사연구소 소장 한국사회학회 국제담당 운영위원 	국회 추천

6.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장태평 (張太平)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위 원	강계斗 (姜啓斗)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위 재정협력과장, 기획예산처 총무과장 KDI 과장,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당연직 (재정경제부)
위 원	박민표 (朴珉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파견근무 법무부 송무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당연직 (법무부)
위 원	공석		당연직 (기획예산처)
위 원	채형규 (蔡亨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교통부 독일 연방건설부 파견근무, 토지이용 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정보화담당관 부패방지위원회 제도2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국가청렴위원회 혁신인사기획관 국가청렴위원회 보호보상단장 	당연직 (국가청렴위원회)
위 원	이선숙 (李宣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뉴욕대 대학원 법학 석사(LLM)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현) 	위촉직 (법률전문가)
위 원	이기화 (李起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회계사 재경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 다산회계법인 대표이사(현) 	위촉직 (회계전문가)
위 원	김범斗 (金範斗)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경영지원부장, 수원지점장 광주지점장 한국감정원 상무이사 	위촉직 (감정평가전문가)
위 원	권해수 (權海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위촉직 (비영리민간단체)

2006년도
국가청렴위원회 심의·의결례집

<제5집>

발일일 : 2007년 1월

발행처 : 국가청렴위원회 운영지원팀

TEL : 02) 2126-0116

FAX : 02) 2126-0119

인쇄처 : 태영특수프린테크

TEL : 02) 2266.5011

FAX : 02) 2277.3353



www.kicac.go.kr

운영 지원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 02.2126.0116 전송 : 02.2126.0119